발 간 등 록 번 호
11-2900000-000001-01

YESFEZ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2008~2014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9996

황해경제자유구역청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발 간 등 록 번 호
11-2900000-000001-01

YESFEZ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2008~2014

황해경제자유구역청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발간사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의 지정부터 해산까지의 모든 것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를 위해 힘써 오신 모든 분들과 자료 정리와 백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8월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가 지정해제되었습니다. 2005년 충남도와 경기도 간 상생발전협약을 계기로 2008년부터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 · 인주지구 사업이 적절한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특별법에 따라서 자동해제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에 대해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주민 여러분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해당 시와 협력해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충청남도의 경제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YESFEZ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官) 일방주도 개발방식의 한계, 중앙과 지방의 연계의 중요성, 지역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의 필요성 등 이번 사례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은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경제산업발전전략을 꾀하는 값진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백서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초기 태동단계부터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지구해제와 청산에 이르기까지 본 사업의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값진 교훈은 실패를 뛰어넘어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소중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백서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민 · 관 · 기관단체에 반면교사로 삼을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백서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자문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백서 구성
목차

서 문

황해경제자유구역 CI 및 해설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개발계획(최초)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개발계획(최종)

제1부 지구지정

제1장 지정배경 및 과정 02
제2장 지구지정 내역 11
1. 송악지구 11
2. 인주지구 13
3. 지곡지구 15

제2부 개청

제1장 기관일반현황 18
1. 기본개요 18
2. 추진체계 및 조직 19
3. 재정현황 22
제2장 조합현황 23
1. 임무 및 역할 23
2. 구성 24

제3부 개발계획

제1장 개 황 26
1. 사업개요 26
2. 기본방향 27
3. 도입기능 및 시설 27
제2장 지구별 개발계획 29
1. 송악지구 29
2. 인주지구 34
3. 지곡지구 39

YESFEZ

제 4 부 추진공과

제1장 개발분야 추진 44
1. 송악지구 44
2. 인주지구 53
3. 지곡지구 61
제2장 투자유치 활동 67
1. 개 요 67
2. 분야별 투자유치 활동 72
제3장 민원행정 분야 88
1. 민원사무 인수 88
2. 민원사무 처리 행정시스템 구축 88
3. 민원행정 추진 실적 93
4. 민원 행정의 성과 및 한계 95
제4장 조직 및 조합회의 운영 98
1. 조직운영 98
2. 재정운영 100
3. 조합회의 운영 101
제5장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111
1. 대내외 협력(개발분야) 111
2. 대내외 협력(투자유치분야) 113
3. 홍보활동 121

제 5 부 해제 및 청산

제1장 지구해제 134
1. 지구해제 결정 과정 134
2. 지구해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135
제2장 민원사무 인계인수 137
제3장 조합해산 154
제4장 청산절차 이행 156

제 6 부 총평

제6부 총평 162

부 록

부 록 174

황해경제자유구역 CI 및 해설

【앰블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중심에서
전체적으로 지구촌을 감싸고

휘돌아 도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을 표현하였으며

감성과 이성을 조화시킨 모습에서
세계인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려는
강력하고도 활력이 넘치는 진취적 의지를 강조

【로고타입-한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로고타입-영어】

YESFEZ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황해" 명칭유래

경기도에서 2002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하여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명칭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2005년 1월 27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경기 · 충남 경제자유구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상징성이 강하고 어필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 ·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연구원에서 200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명칭을 공모하여 6건으로 명칭(亞利市, 서해안, High Techno Belt, HIBOS, 누리가온, 한나루)을 압축하였으나 상징성이 없어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06년 2월 20일 경기도와 충청남도 관계관 및 산업연구원 연석 실무위원회에서 「황해」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양도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황해(YELLOW SEA) 유래 등을 살펴보면 "황해" 는 황토가 녹아 있는 강물이 유입되어 바다 색깔이 누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며, 공식적인 황해 지명은 1961년 4월 22일 국무원 고시 제16호(표준지명에 관한 고시)에 의거 124,000여개의 지명과 함께 일괄고시 하였다.

이후에도 황해와 서해가 혼용 사용됨에 따라 1965년 외무부, 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황해표기로 결정, 초 · 중 · 고 모든 교과서에 "황해" 로 표기하고 있으며, 국제 표기는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행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책자에 황해(YELLOW SEA)로 등재되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개발계획(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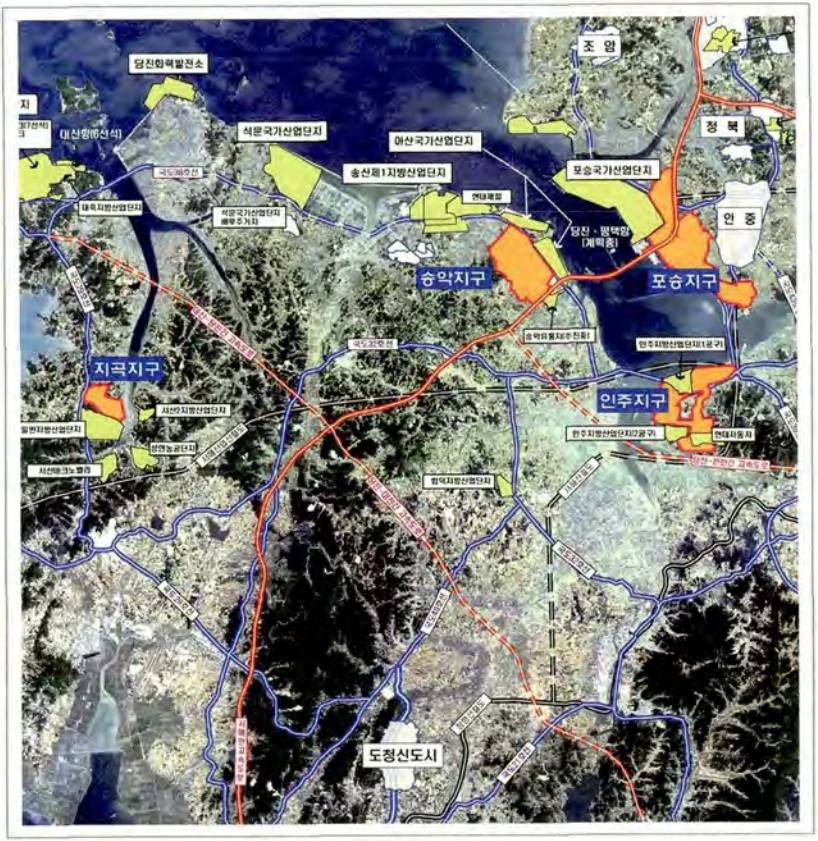

▣ 사업규모 : 3개 지구 / 29.597㎢ (895만평)

- 송악지구 : 충남도 당진시 송악읍 A= 13.029㎢ (394만평)
- 인주지구 : 충남도 아산시 인주면 A= 13.025㎢ (394만평)
- 지곡지구 : 충남도 서산시 지곡면 A= 3.543㎢ (107만평)

▣ 사업기간 : 2008 ~ 2025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개발계획(최종)



▣ 사업규모 : 2개 지구 / 9.45㎢ (286만평)

- 송악지구 : 충남도 당진시 송악읍 A= 6.02㎢ (182만평)
- 인주지구 : 충남도 아산시 인주면 A= 3.43㎢ (104만평)

▣ 사업기간 : 2008 ~ 2020년

송악지구

▣ 개발방향

○ 동북아지역의 첨단산업 및 경제의 중심기능 수행

○ 첨단산업, 국제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 기능수행

▣ 사업개요

구 분	최 초	최 종
위 치	충남 당진시 송악면 부곡리 일원	좌 동
면 적	13.03㎢	6.02㎢
사 업 비	1조 4,647억원	1조 8,993억원
사업기간	2008년~2025년	2008년~2020년
계획인구	70,670명	28,224명
개발사업시행자	당진TP	-
주요개발 계획현황	첨단산업, 국제물류, 교육, 주거, 국제업무	철강화학, 기계장비, 국제업무
지 정	2008. 5. 6.	2012. 8. 13.

※ 2014. 8. 5. 전면해제

▣ 토지이용 계획

(단위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최 초		최 종	
합 계	13.029	(100)	6.016	(100)
주택건설	2.184	(16.8)	1.111	(18.5)
산업물류	3.094	(23.7)	2.262	(37.6)
상업시설	0.898	(6.9)	0.243	(4.0)
관광시설	-	-	-	-
공공시설	5.915	(45.4)	2.400	(39.9)
유 보 지	0.938	(7.2)	-	

▣ 송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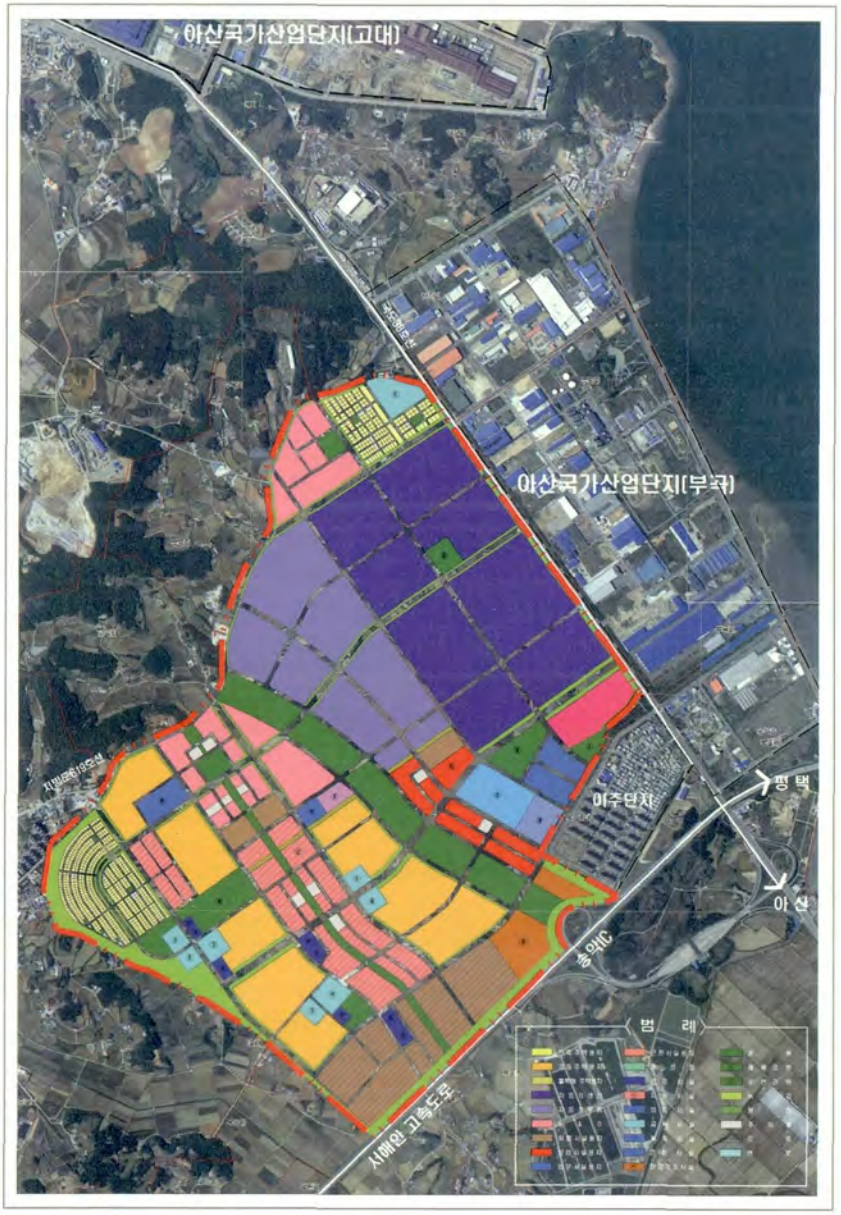

인주지구

▣ 개발방향

○ 서해안권의 첨단 전자정보의 메카
–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도지식산업 집적화
○ 국제업무 및 관광 · 레저(골프장)의 복합도시

▣ 사업개요

구 분	최 초	최 종
위 치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일원	좌 동
면 적	13.03㎢	3.43㎢
사 업 비	1조 3,395억원	7,024억원
사업기간	2008년~2025년	2008년~2020년
계획인구	42,520명	4,020명
개발사업시행자	토지공사	–
주요개발 계획현황	첨단산업, 교육, 주거, 국제업무, 관광, 위락	자동차생산 · 부품, R&D, 유통 · 물류
지 정	2008. 5. 6.	2013. 2. 13.

※ 2014. 8. 5. 전면해제

▣ 토지이용 계획

(단위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최 초		최 종	
합 계	13.025	(100)	3.431	(100)
주택건설	1.856	(14.3)	0.273	(7.9)
산업물류	2.217	(17.0)	1.938	(56.5)
상업시설	0.677	(5.2)	0.057	(1.7)
관광시설	2.166	(16.6)	0.041	(1.2)
공공시설	6.109	(46.9)	1.081	(31.5)
유 보 지	–	–	0.041	(1.2)

▣ 인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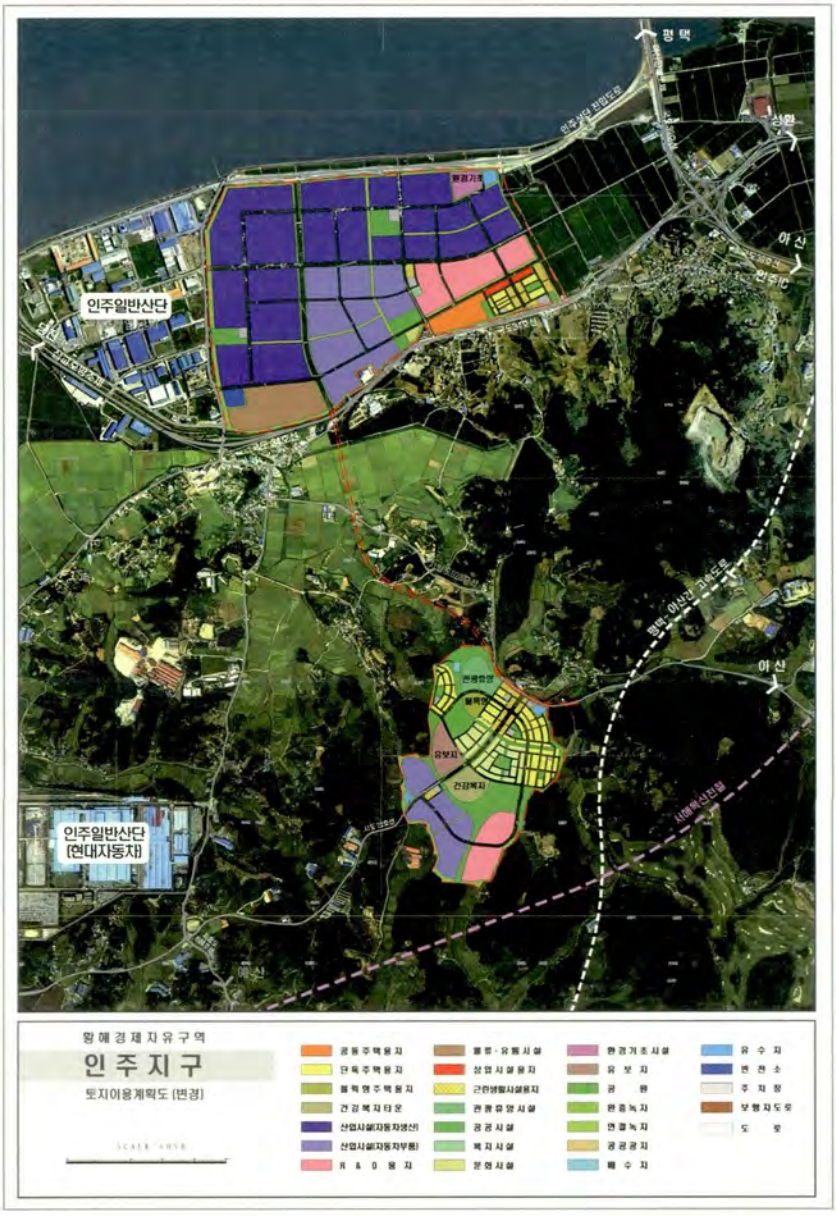

왕해경제자유구역

인 주 지 구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지곡지구

▣ 개발방향

○ 동북아지역의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구축

○ 기 조성된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자동차 부품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

○ 면　적 : 3.543㎢

○ 사업비 : 3,037억원(국비 475억원, 지방비 253억원, 민 · 외자 2,309억원)

○ 기　간 : 2008년 ~ 2025년 까지

○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첨단모듈부품 등

※ 2011. 12. 8. 전면해제

▣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합　계	3.543	100
주택건설	–	–
산업유통	1.697	47.9
상업업무	0.036	1.0
관광시설	–	–
공공시설	1.810	51.1
유 보 지	–	–

▣ 지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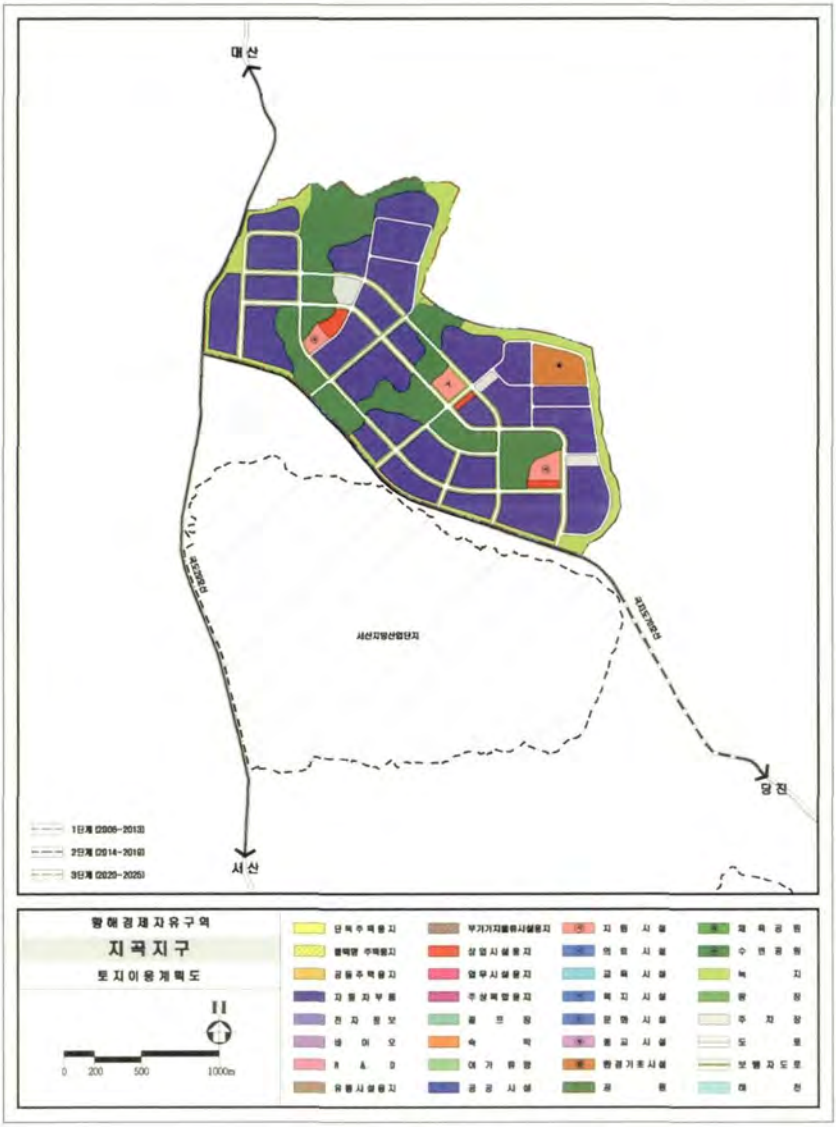



제1부

지구지정

제 1 장 지정배경 및 과정

제 2 장 지구지정 내역

백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제1부 지구지정

제1장. 지정배경 및 과정

가. 지정배경

정부는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고, 2002년 4월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003년 8월 6일 제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목표로 인천시 송도 · 영종 ·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년 10월 27일 제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세계 물류 · 비즈니스 중심의 부산 · 진해 구역과 첨단물류 · 산업도시로의 개발을 목표로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최초지정 3개 경제자유구역 개요 】

구 분	인 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지정일	2003년 8월 6일	2003년 10월 27일	2003년 10월 27일
면 적	209㎢	104㎢	90.38㎢
추 진 사 업	· 송도(국제업무,첨단산업) · 청라(국제업무,레저) · 영종(항공물류,관광)	· 부산항 신항(해운물류) · 과학산단	· 광양항(해운물류) · 율촌산단(소재산업) · 화양지구(해양레저)

이에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환경 및 경제의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5년 1월 충남 · 경기 간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평택 · 당진항을 중심으로 양 도의 인접지역인 아산만권의 평택 · 화성, 아산 · 서산 · 당진 등 총 68.13㎢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타당성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성장, 역량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회부여, 기존 · 신규 경제자유구역 간 유기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강원, 충남 · 경기, 대구 · 경북, 전남, 전북 등 총 5개 지역에서 추가지정을 신청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충남 · 경기, 대구 · 경북, 전북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추가지정 3개 경제자유구역 개요 】

구 분	충남 · 경기	대구 · 경북	전북
면 적	55.051㎢	39.546㎢	66.986㎢
추 진 사 업	· 송악(국제업무,첨단산업) · 인주(전자정보,레저) · 지곡(자동차부품) · 포승(첨단산업,물류) · 향남(바이오산업)	· 수성의료 · 경산학원연구 · 대구혁신도시(학술) · 국제패션 · 구미디지털산업 등	· 새만금(미래형신산업) · 고군산(국제해양관광) · 새만금관광단지 · 옥산 배후주거 단지

1) 국가차원의 지정배경 및 필요성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대외적 측면을 보면,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이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2003년 미국경제의 1/8에 불과하던 중국

경제는 2025년경 1/3수준을 넘어서고, 2020년경에 중국 경제규모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중국과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거대 경제블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잠재력 약화로 동아시아 경제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또한,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개발하여 왔으며 상하이·베이징·선전 등 중국 첨단산업의 3대 중심축 가운데 2개가 경제특구일 정도로 경제특구는 중국경제의 부상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산업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투자도 자본·기술집약적 업종 중심으로 변화하고 수출구도도 전자·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도화 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경제특구개발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로 유입되는 FDI의 50%를 흡수하고 있어 세계FDI의 블랙홀로 평가되고 있었다.

대내적 측면으로는 소비부진 등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고임금·고지가·과도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생산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생산설비를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것인데, 최초 지정 3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진하였다. 이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과 더불어 투자여건이 미흡하고 과다한 규제, 원스톱서비스 부재, 경쟁국과 비교하여 불리한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급가능 용지 부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들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첨단 지식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부진하였다. 이는 사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의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독립된 소수 거점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대 경제자유구역을 견지하고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거점 간 연계기능의 부재로 시너지효과 창출이 미흡하여 국가경제발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메커니즘을 통해 육성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가능성 있는 다수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상호 허브-스포크 네트워크형 구조로 연계하는 방향이 모색되었다. 허브는 국가적 핵심거점으로 여타의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스포크는 지역적 핵심거점이면서 특성화 분야의 국가적 거점을 담당하여 허브와의 상호보완 및 효율적 연계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IT, 자동차, BT산업으로 특화 할 수 있고, 중국의 앞마당에 위치하여 중국 교역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가 용이한 중간적 위치에 있어 향후 한국경제의 허브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2) 지역차원의 지정 배경 및 필요성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지역은 동북아경제권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드나드는 앞마당에 위치(대련항 537km, 청도항 630km, 천진항 870km)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경제교류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강점이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평택·당진·천안·아산지역이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형 도시를 형성할 경우 세계 대도시와 경쟁·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 교류·협력의 허브지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충청권, 특히 충남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었고, 2004년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북부지역은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충남은 유리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건실한 잠재적 혁신역량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반면 산업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임계규모 미달에 따른 혁신인프라가 취약했었다. 즉 지역소재 개별 대학의 혁신역량 미흡,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축 미흡,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 간 경쟁 심화, 기술변화의 가속으로 산업발전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이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동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허브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가교역할, 충남의 발전 잠재력 극대화와 제약요인의 효율적 보완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였다.

나. 지정과정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맺은 상생발전 협약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1월 2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심대평 충남도지사 및 양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협약을 살펴보면 ▲경기남부(평택·화성·안성·오산)와 충남북부지역(천안·아산·서산·당진)을 자동차 및 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접도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며 ▲평택·당진항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의 핵심은 바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이었다.

양도 간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도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제반 후속절차를 이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는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이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양도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2005년 2월 1일 중지시켰으며(2005. 7. 15재개), 충남도에서는 단독으로 2005년 5월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9월 16일 완료하였다. 또한 이미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한 산업연구원에 8억 1백만원의 용역비로 2005년 10월 20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계획 통합용역을 의뢰 하였다. 충남도가 용역업체로 산업연구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얻게 된 기초자료 등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용역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용역연구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된 조건과 목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당시 재정경제부)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연말까지 1차적으로 용역결과를 제출하고 최종결과 제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날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다. 2005년 11월 30일 충남 당진군청(現 당진시청)에서 중간보고회와 2005년 12월 27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되었는데,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황해라는 경제자유구역 명칭과 관련해서는 양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이후 충남 · 경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였다. 명칭선정위원회에서 6건의 명칭(亞利市, 서해안, High Techno Belt, HIBOS, 누리가온, 한나루)으로 압축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며, 2006년 2월 20일 양도 관계관 및 산업연구원 연석 실무위원회에서 「황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도와 충남도에서는 준비를 거쳐 2006년 4월 20일 정식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동 신청하여 2006년 6월 7일에 개최하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상정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는 기존 3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지정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 내지 검토조차 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6월 29일 추진 중인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 시켰다. 2006년 7월 7일 충남도지사 주재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2006년 7월 27일에는 재경부 및 건교부를 방문하여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구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06년 8월 8일과 8월 11일에는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유사제도와 필요성, 기대효과, 개발과 재원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하여 중앙부처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충청남도지사 명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건의하는 지휘보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7년 8월 8일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주관으로 추가지정 타당성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추가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에서도 2007년 8월 17일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8월 25일 주요 평가지표를 각 시도에 통보하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충남도는 잠정 중단되었던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재개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2007년 10월31일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재신청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을 재신청한 며칠 후인 11월 11일 양도지사는 서울 대외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외부평가위원 회의(15명)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부평가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어 11월 18일 재정경제부 외부평가단은 당진군의 송악단지와 경기도 평택항 및 포승지구를 현장답사하였다. 설명회를 통한 개발계획서 설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였다. 1차로 평택항 홍보관에서 전체적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설명하였고, 당진 현대제철에서 충남권역의 경제자유구역 설명 후 당진 송악단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현장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노력과 절차로 2007년 12월 21일 경기도 2개 지구(포승, 향남), 충청남도 3개 지구(송악, 인주, 지곡)로 총 5개 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관계부처 간 쟁점사항 협의조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8년 3월 28일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송악지구는 최초 송악·석문지구로 개발계획을 했는데 송악지구에 포함된 석문지구는 서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수도권 공장 이전 수용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인근의 아산산업단지(부곡산업단지)·현대제철·송산산업지방단지·대산·대죽공업단지 등과 함께 임해산업단지벨트형성과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지대 구축으로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화가 가능하였으며, 석문국가산업단지와 기 조성된 석문농공단지를 상호 연계함과 동시에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첨단산업기능과 석문항 배후에 물류기능을 도입하도록 개발구상 하였다. 그러나 간척농지인 석문지구는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임대농업인 민원, 농지관리기금(2,834억원) 환수문제 등을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제척요구에 따라 최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석문지구는 제외되고 송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2008년 4월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경기 2, 충남3)지구가 확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로 2008년 5월 6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협약으로부터 시작 되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3년 4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지정과정 】

구 분	주 요 내 용
2002. 4.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 확정
12.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3. 8. ~ 10.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5. 1. 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1. 27.	충남·경기 간 상생발전협약 체결
10. 26.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산업연구원)
2006. 4. 20.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충남+경기)
2007. 8. 17.	FEZ추가지정계획 발표(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 분	주 요 내 용
2007. 11. 11.	외부평가단 대상, 개발계획 설명(도지사)
11. 18.	외부평가단 현지실사(평택 포승, 당진 송악)
12.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차 개정
12. 2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지역으로 선정(예비지정)
2008. 1. 9.	황해FEZ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남 · 경기 협약체결
1. 21.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 출범(1단, 5명)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제2장. 지구지정 내역

1. 송악지구

송악지구는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황해를 사이에 둔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서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기대되었다. 평택 · 당진항과 인접지역으로 서해안 ·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 · 중부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였고, 주변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등이 입지하여 철강산업 연계가 유리한 지역이었다. 평택 · 당진항은 개발기초단계로 인프라 및 항만물동량 수준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추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항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유리하였다.

송악지구의 개발구상은 북측에 첨단산업기능을 입지시켜 기 조성된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부곡지구)와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송산산업단지 내의 철강 관련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자동차 부품업종 중심의 산업기능을 육성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제업무 · 상업 기능을 배치하여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도록 구상하였으며, 개발면적은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일원 13.029㎢(개발면적 12.091㎢ / 유보지 0.938㎢)으로 동북아 지역의 첨단산업 및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첨단산업 · 국제업무 · 상업 · 주거 등을 갖춘 복합 자족도시를 건설하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는 2013년까지로 택지개발 · 자동차부품단지 · 전자정보 · 유통물류 · R&D단지 · 상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9.31㎢(77%)이고, 2단계는 2019년까지로 택지개발 · 상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1.66㎢(13.7%)이고, 3단계는 2025년까지로 자동차부품단지 · 전자정보 · 상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1.12㎢(9.3%)

이었다. 사업비는 지자체 14억 원, 민·외자 1조 4,633억 원 등 1조 4,647억 원이며,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R&D, 유통물류 등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하고 수용인구 70,670명, 주택공급 26,174세대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 송악지구 위치 및 개발구상도 】



【 송악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

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 ('25년까지)
· 택지개발(1.56㎢) · 자동차부품단지(0.98㎢) · 전자정보(0.27㎢) · 유통물류(0.54㎢) · R&D단지(0.57㎢) · 상업업무(0.79㎢) · 공공시설(4.60㎢)	· 택지개발(0.62㎢) · 상업업무(0.06㎢) · 공공시설(0.98㎢)	· 자동차부품단지(0.56㎢) · 전자정보(0.17㎢) · 상업업무(0.05㎢) · 공공시설(0.34㎢)
9.31㎢ (77.0%)	1.66㎢ (13.7%)	1.12㎢ (9.3%)

2. 인주지구

인주지구 개발면적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일원 13.025㎢로 전자정보 산업의 메카 및 레저 · 휴양도시를 건설하고, 디스플레이 · 반도체 등 고도지식기반산업을 집적 단지화하며, 서해안권의 레저 · 관광지(골프장) 육성 및 삽교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인주지구는 아산만지역을 동북아 물류거점 및 중국을 겨냥한 거점지역으로 발전추진이 가능하며, 서해안 경제의 거점 뿐 아니라 관광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변 지역에 현대자동차, S-LCD,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 입지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특화산업인 전자정보 ·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입지로 최적지이며, 경기도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경기도와의 공동추진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인주지구는 첨단산업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 법률, 경영, 세금 등의 국제업무 기능을 대상지 중심지역에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 업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첨단산업의 메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구상되었다.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자동차부품기능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육성하며, 국제업무 및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를 배정하고 각각 공영개발, 민자 · 외자유치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구상되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1단계는 2013년까지 택지개발 · 자동차부품단지 · 전자정보 · R&D단지 · 상업업무 · 관광시설 · 공공시설 등 총 6.18㎢(47.4%)이고, 2단계는 2019년까지 택지개발 · 상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1.17㎢(9%)이고, 3단계는 2025년까지 택지개발 · 자동차부품단지 · 전자정보 · 유통시설 · 상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5.68㎢(43.6%)이었다. 사업비는 지자체 1,838억 원, 민 · 외자 1조 1,557억 원 등 총 1조 3,395억 원으로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관광 · 위락(골프장)시설 등을 주요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수용인구 42,520명, 주택공급 15,746세대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 인주지구 위치 및 개발구상도 】



【 인주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

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 ('25년까지)
· 택지개발(0.41㎢) · 자동차부품단지(0.25㎢) · 전자정보(0.35㎢) · R&D단지(0.15㎢) · 상업업무(0.22㎢) · 관광시설(2.17㎢) · 공공시설(2.63㎢)	· 택지개발(0.56㎢) · 상업업무(0.05㎢) · 공공시설(0.56㎢)	· 택지개발(0.89㎢) · 자동차부품단지(0.62㎢) · 전자정보(0.68㎢) · 유통시설(0.17㎢) · 상업업무(0.40㎢) · 공공시설(2.92㎢)
6.18㎢ (47.4%)	1.17㎢ (9.0%)	5.68㎢ (43.6%)

3. 지곡지구

지곡지구 개발면적은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 3.543㎢의 면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및 서산지방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서산테크노벨리 등과 연계하여 자동차부품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곡지구는 석유화학 및 첨단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신산업도시이며, 대산항 건설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지방도 70호선 개설 등에 따라 수도권 및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생산제품 등에 대한 물류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지곡지구는 기 조성된 서산지방산업단지 및 성연농공단지와 조성예정인 서산제2지방산업단지 및 명천자동차전문단지를 중심으로 함께 개발하여 자동차 부품 중심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사업대상지 남측에 주거, 업무, 생산, 휴식이 이루어지고 도시 기능이 완비된 첨단 복합단지인 서산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또한 지곡지구와 서해선 산업철도(계획)를 연계할 수 있는 역 신설과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구 내 발생교통량의 효과적 분산처리와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태안~당진간 고속도로(계획)상 지곡지구 인근에 인터체인지(I.C) 신설과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산I.C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국도29호선 및 지방도를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구 내에는 독자적인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구상되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1단계는 없었고, 2단계는 2019년까지로 자동차부품단지 · 사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2.07㎢(58.5%), 3단계는 2025년까지로 자동차부품단지 · 상업업무 · 공공시설 등 총 1.47㎢(41.5%)이었다. 사업비는 국비 475억 원,

지자체 253억 원, 민 · 외자 2,309억 원 등 3,037억 원의 사업비와 자동차부품 및 첨단모듈부품 등을 주요유치업종으로 추진하였다.

【 지곡지구 위치 및 개발구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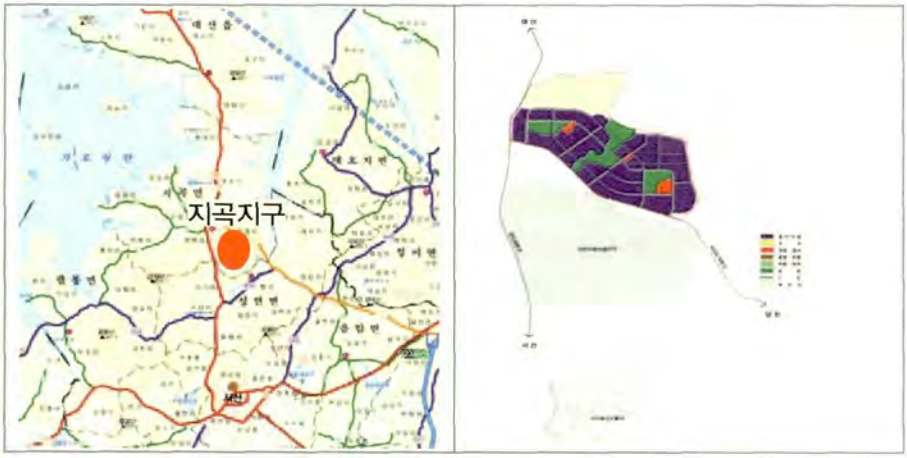

【 지곡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

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 ('25년까지)
–	· 자동차부품단지(0.97㎢) · 상업업무(0.02㎢) · 공공시설(1.08㎢)	· 자동차부품단지(0.72㎢) · 상업업무(0.02㎢) · 공공시설(0.73㎢)
–	2.07㎢ (58.5%)	1.47㎢ (41.5%)



제2부

개 청

제 1 장 기관일반현황

제 2 장 조합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백서

제2부 개 청

제1장 기관 일반현황

1. 기본개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양도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양도가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을 작성하여 경기도는 2008년 5월 16일, 충청남도는 2008년 5월 17일에 각각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08년 6월 10일자로 승인받았다.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경우 조합규약(안)중 조합위원의 수가 경기도는 8명, 충청남도는 9명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양도간 협의를 거쳐 그 수를 각각 9명씩 두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양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개 청 : 2008. 7. 22.
○ 위 치 : 당진읍 원당리 원당드림타워 (3층, 4층일부, 8 · 9 · 10층)
※ 충남도지사와 당진군수 협의에 의거 당진군에서 임차지원
○ 청사관련 양도협약(2008. 1. 9)
- 初代청장은 경기도 추천, 廳舍는 충남에서 추천한 지역에 입지

– 임시청사 마련과 본 청사 부지는 청사가 입지할 지역에서 마련하고 본 청사 건축 등 제반비용은 兩道가 분담.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절차 】

① 조합(구역청) 규약(안) 작성		경기 – 충남
⇩		
② 규약(안) 사전검토		행정안전부
⇩		
③ 규약(안) 도의회 의결	⇄	도 의회
⇩		
④ 규약(안) 승인(경기 · 충남→ 행안부)	⇄	행정안전부 승인(6. 10)
⇩ (직제 · 정원 승인)		
⑤ 경제자유구역청(조합) 개청		'08. 7. 22.

2. 추진체계 및 조직

황해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2007년 12월 21일)이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는 행정기구의 적정규모를 논의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비교분석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적정 기구 및 인력을 산출하였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과 달리 직제를 본부 – 과 – 팀 (기존청 : 본부 – 부 – 과 – 담당)으로 1단계를 줄임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팀제를 운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정보소통의 원활화 및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이렇게 하여 당초에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를 비교하여 1청장, 1차장, 3본부, 9과, 25팀 · 1관 · 1옴부즈만, 1지소 185명의 기구 · 정원안으로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내용과 기구 · 정원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수정안은 1청장, 2본부, 7과, 18팀 · 1관 · 1옴부즈만, 1지소 149명으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 보다 적은 인력으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기구 · 정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새 정부의 조직 감축 기조를 감안하여 2008년 6월 3일자로 1청장, 2본부, 6과, 17팀 · 1관 · 1옴부즈만, 1지소, 129명으로 기구 · 정원안으로 승인하였다. 2008년 1월 9일 체결한 양도의 협약에 따라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여 2008년 7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2008년 7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와 공동으로 임용하였다.

양도간의 정원은 경기도가 초대 청장을 포함하여 65명, 충청남도가 64명으로 배분하였고, 청장은 매 3년마다 경기도 · 충청남도 순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되 추천하는 기관에서 선발절차를 거쳐 양도지사가 협의한 후 공동임명 토록 하였다. 5급 이상(6급 직렬 중 정원이 1명인 직렬도 포함한다.)의 정원은 구역청의 출범 일부터 매 3년 주기로 상호 교체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16일자로 양도간 정원배분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정원배분 협약내용 】

1. 경 기 도(65명)	**개방형1급** 1, **개방형3급** 1, 행정4급 1, 기술4급 1, **개방형4급** 1, 행정5급 5, 시설5급 1, 시설 · 환경5급 1, 행정 · 공업5급 1, 계약직가급 2, 6급이하 50
2. 충청남도(64명)	부이사관 1, 행정4급 1, 기술4급 1, **개방형4급** 1, 행정5급 4, 시설5급 2, 행정 · 시설5급 1, 계약직가급 3, 6급이하 50

양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조기정착과 성공적 모델을 추진하고자 우수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근무희망자를 공모한 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조직운영을 위한 근무평정 단위 독립권 부여, 특수업무수당 지급근거 마련, 통근버스 운행 등 복리후생 대책을 마련하였고 경기도는 2008년 7월 11일자로, 충청남도는 2008년 7월 17일자로 총 98명의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여 2008년 7월 22일 개청과 동시에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 개청당시 조직도(2008. 7. 22. ~ 2012. 4. 26.) 】

○ 기 구 : 2본부/ 6과·1옴부즈만, 1관/ 1지소 / 17팀
○ 정 원 : 129명(일반직 105명, 개방·계약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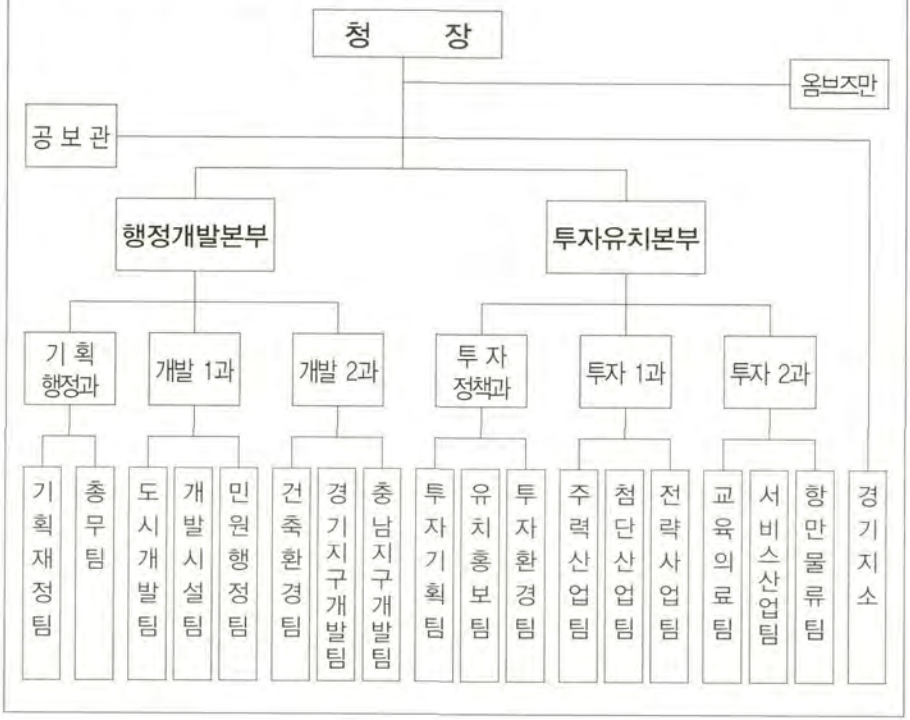

3. 재정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2008년 5월 6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8년 7월 22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한 준비를 마쳤어야 하나, 2008년도 본예산에 개청을 위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여 반영할 수 없었다. 경기도, 충청남도 추진기획단은 개청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경비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가 우선임을 판단하고 양 도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청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2008년 제1회 추경 및 예비비를 활용, 확보하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2008년 7월 22일 개청 이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7월 18일 개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결 · 확보하였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충청남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여 반영하였다.

제2장 조합현황

2008년 6월 10일자로 조합규약이 승인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9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제분야 민간전문가 5명과 도의회 의원 4명,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명 등 총10명을 각계의 추천을 받아 2008년 6월 30일 최종 확정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1. 임무 및 역할

조합의 주요임무는 청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이었으며, 2008년 7월 18일 제1회에 조합회의 집행부를 구성한 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고, 기본운영규정 등 내부규정 36개를 심의·의결하여 청을 출범시켰었다.

【 조합의 임무 및 역할 】

- ○ 조합규약의 개정안 심의 의결
- ○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예산의 심의·확정과 견산의 승인
- ○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 ○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 ○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 ○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2. 구 성

조합회의 위원은 총 19명으로 당연직 9명은 경기도와 충남도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담당 실국장 각2명씩 총 4명, 관련시군 부시장 총 5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촉직 10명은 경기도와 충남도 의회 의원 총 4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제도개선분야 · 물류분야 · 금융분야 · 투자유치분야 · 도시계획분야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원은 다음 표와 같다.

【 초대조합회의 구성 현황 】

구 분	경 기 도	충 청 남 도
당연직 (9명)	· 경제투자관리실장 · 도시주택실장 · 평택부시장 · 화성부시장	· 경제통상실장 · 건설교통국장 · 아산부시장 · 서산부시장 · 당진부군수
위촉직 (10명)	· 도의원 2명 · 민간전문가 3명	· 도의원 2명 · 민간전문가 2명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물류지원팀장	



제3부

개발계획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지구별 개발계획

백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제3부 개발계획

제1장. 개 황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최초 지정 시에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지구, 아산시 인주지구, 서산시 지곡지구 총 3개 지구로 나누어 2025년까지 총 3조1,079억원을 투입하여 29.6㎢(송악 13.03 인주 13.03 지곡 3.54)를 개발 계획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8일 지곡지구는 전면해제하고 개발면적을 조정한 2개 지구는 2020년까지 총 2조6,017억원 투입 9.45㎢(송악 6.02 인주 3.43)로 변경하여 거점중심 · 첨단산업 · 철강화학 · 자동차생산 · 부품 국제부가가치물류 · 국제업무 등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개발 계획하였다.

1. 사업개요

구 분		송악지구		인주지구		지곡지구	
		최 초	최 종	최 초	최 종	최 초	최 종
위 치		당진 송악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아산 인주	서산 지곡	–
기본사항	면 적	13.03㎢	6.02㎢	13.03㎢	3.43㎢	3.54㎢	–
	사 업 비	1조 4,647억원	1조8,993억원	1조 3,395억원	7,024억원	3,037억원	–
	사업기간	2008~2025	2008~2020	2008~2025	2008~2020	2014~2025	–
	계획인구	70,670명	28,224명	42,520명	3,330명	–	–
개발사업 시행자		당진TP	–	토지공사	–	–	–
주요개발 계획현황		첨단산업, 국제물류, 교육, 주거 국제업무	철강화학, 기계장비, 국제업무	첨단산업, 교육, 주거 국제업무, 관광, 위락	자동차 생산 · 부품, R&D, 유통 · 물류	첨단산업	–
지 정		2008.5.6.	2012.8.13.	2008.5.6.	2013.2.13.	2008.5.6.	

※ 해제 : 송악 · 인주 2014. 8. 5., 지곡 2011.12.8.

2. 기본방향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개발목표(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에 부합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생산+연구개발) 기능과 동북아 중추지역 항만으로서의 국제물류(부가가치물류) 기능을 중점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충남이 첨단산업의 동북아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첨단생산·연구개발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업무·상업, 관광위락, 교육·주거 등의 기능을 적정규모로 개발 할 계획이었다. 또한, 편안한 생활, 안전보장, 다양한 문화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인들이 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개발 할 계획이었다. 더불어, 기타 동북아 첨단산업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적으로 개발하며, 국가전략목표인 녹색성장 및 삶의 질과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도시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었다.

3. 도입기능 및 시설

충남의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Hub) 지구로 설정하여 철강산업 관련 클러스터, R&D, 물류·유통, 경제의 중심지로 계획하였으며, 동 지구에 국제업무타운을 조성하여 국제적 수준의 성장기반을 확보하며,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 및 부가가치물류단지 등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었다. 또한, 충남의 인주·지곡지구에는 지원거점으로서 핵심거점(송악)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및 관련 지원 기능을 중점 배치 계획하였다.

※ 국제업무센터, 컨벤션센터·전시장, 업무지원시설, 기업지원종합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대형쇼핑몰, 오피스텔, 문화시설, 컨테이너 및 국제물류유통단지 등

첨단산업기능은 지곡 · 송악을 연결하는 축으로 철강화학클러스터를 인주지구에 자동차 관련 생산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관광위락기능은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필수적인 시설을 도입, 국내 · 외국인 거주민의 여가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되 자동차축, 전자정보축, 부가가치물류축과의 기능적 연계성 제고 및 평택호와 연계하여 호텔, 카지노, 이벤트홀, E-sports(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 등 복합적인 엔터테이먼트로 배치하여 외국인을 위한 위락 · 레저기능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와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관광위락기능 개발을 위한 초광역적으로 충남의 대규모 관광단지(충남 :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등)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로 개발 계획하였다.

※ 해양위락시설, 골프장, 호텔, 카지노, E-sports, 이벤트홀, 회의실 등

주거기능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상업, 행정, 문화, 치안, 교육, 의료기관 등을 배치 각 주요 기능 종사자들이 가능한 직주근접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지역에 배치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입주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형태 및 환경 제공을 위해 블럭형 주거단지와 비즈니스 빌딩을 배치 할 계획이었다.

※ 외국의료시설, 첨단주거단지, 레저 · 스포츠센터 등

교육기능 또한 각 주요 기능 종사자들을 위해 적정 지역에 배치하며 국제교류에 필요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국제비즈니스와 첨단산업에 대한 교육시설로 외국 유수대학(원)의 분교 설치 혹은 세계적 수준의 MBA Course(경영전문대학원 과정) 유치 외국인의 타국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학교 설치를 계획하였다.

제2장. 지구별 개발계획

1 송악지구

최 초 (2008. 5. 6.지정)

- 개발사업자 : (주)당진테크노폴리스
- 위 치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일원
- 면 적 : 13.029㎢[개발면적 13.091㎢, 유보지 0.938㎢]
- 사업기간 : 2013년~2025년(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25년까지)
- 총사업비 : 1조 4,647억원[지자체 14억원, 민 · 외자 1조 4,633억원]
- 사업내용 : 전자부품[지능형자동차관련부품 등], 친환경자동차부품, 첨단모듈부품 등 첨단산업 및 경제의 중심기능 수행

최 종 (2012. 8. 13.지정)

- 개발사업자 : 미선정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면 부곡리 일원
- 면 적 : 6.017㎢
- 사업기간 : 2008 ~ 2020년
- 총사업비 : 1조8,993억원[국비 1,200억원, 지방비 320억원, 민자 1조7,473억원]
- 사업내용 : 철강 · 화학, 기계장비, 철강부산물활용 Down Stream 등

1) 기본방향

송악지구는 상업 · 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로서의 개발을 목표로 국토성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장거점으로 추진하고,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 부곡)와 연계한 철강화학클러스터, 중부권의 관문으로서 국제업무

타운을 조성하여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또한, 단순 물류유통기능뿐만 아니라 조립·가공 수출이 가능한 부가가치 물류 중심기능을 도입하여 평택·당진항의 배후지원과 동시에 복합도시로서의 자족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2) 개발계획

최초 계획한 중점산업 전자정보 및 자동차부품산업 개발면적 1,979,950㎡을 변경 지정 시 제외하여 철강화학 및 기계장비산업 개발면적 1,603,974㎡로 변경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시설을 303,158㎡(당초 573,880㎡) 배치하였다.

물류용지는 유통시설용지와 조립·가공 수출이 가능한 부가가치물류로 세분하여 배치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고급인력양성과 타 지역과의 첨단지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시설을 연계하여 산업대학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또한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상업·업무의 중심지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 부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양식을 수반한 고층·고밀화를 유도하고, 공원을 개발면적 439,063㎡(당초 2,145,630㎡)로 계획하였고,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상복합용지 79,323㎡(당초 98,280㎡)을 개발하며, 공동·단독주택용지 839,491㎡(당초 1,661,620㎡), 근린생활시설 271,368㎡을 배치하여 단지 내 유발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용지를 조정 계획했었다.

아울러 2,400,809㎡(당초 5,914,930㎡)를 공공시설용지로 확보,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도시로 개발하며, 기능상 상충이 발생하는 지역에 공원 및 녹지대를 계획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및 송악지구 전략수립연구용역을 토대로 전체 개발 면적을 최초 13,029,280㎡에서 6,016,650㎡로 변경 지정하여 7,012,630㎡를 축소하였다.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전	변경후
합계		13,029,280	6,016,650	△7,012,630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184,200	1,110,859	△1,073,341	16.8	18.5
	공동주택용지	1,522,250	649,515	△872,735	11.7	10.8
	단독주택용지	139,370	189,976	50,606	1.07	3.2
	블럭형주택용지	522,580	–	△522,580	4.0	–
	근린생활시설	–	271,368	271,368	–	4.5
산업유통시설용지	소 계	3,093,820	2,262,409	△831,411	23.7	37.6
	자동차부품	1,537,360	–	△1,537,360	11.8	–
	전자정보	442,590	–	△442,590	3.4	–
	철강화학	–	1,027,697	1,027,697	–	17.1
	기계장비	–	576,277	576,277	–	9.6
	R & D	573,880	303,158	△270,722	4.4	5.0
	유통시설용지	222,680	53,865	△168,815	1.7	0.9
	부가가치물류시설용지	317,310	301,412	△15,898	2.4	5.0
상업업무시설용지	소 계	897,700	242,573	△655,127	6.9	4.0
	상업시설용지	450,350	110,803	△339,547	3.5	1.8
	업무시설용지	349,070	52,447	△296,623	2.7	0.9
	주상복합용지	98,280	79,323	△18,957	0.8	1.3
공공시설용지	소 계	5,914,930	2,400,809	△3,514,121	45.4	39.9
	공공시설	66,840	40,269	△26,571	0.5	0.7
	지원시설	91,680	–	△91,680	0.7	–
	의료시설	14,650	66,903	52,253	0.1	1.1
	대학용지	–	32,286	32,286	–	0.5
	교육시설	274,530	118,184	△156,346	2.1	2.0
	복지시설	16,140	11,743	△4,397	0.1	0.2
	문화시설	15,310	29,157	13,847	0.1	0.5
	종교시설	12,590	14,351	1,761	0.1	0.2
	환경기초시설	88,890	81,401	△7,489	0.7	1.4
	공 원	2,145,630	439,063	△1,706,567	16.5	7.3
	체육공원	106,310	96,335	△9,975	0.8	1.6
	수변공원	–	19,613	19,613	–	0.3
	녹 지	1,221,410	425,920	△795,490	9.4	7.1
	광 장	48,810	–	△48,810	0.4	–
	주 차 장	136,630	35,801	△100,829	1.1	0.6
	보행자도로	24,190	18,732	△5,458	0.2	0.3
	도 로	1,651,320	971,051	△680,269	12.7	16.1
유 보 지		938,630	–	△938,630	7.2	–

【 송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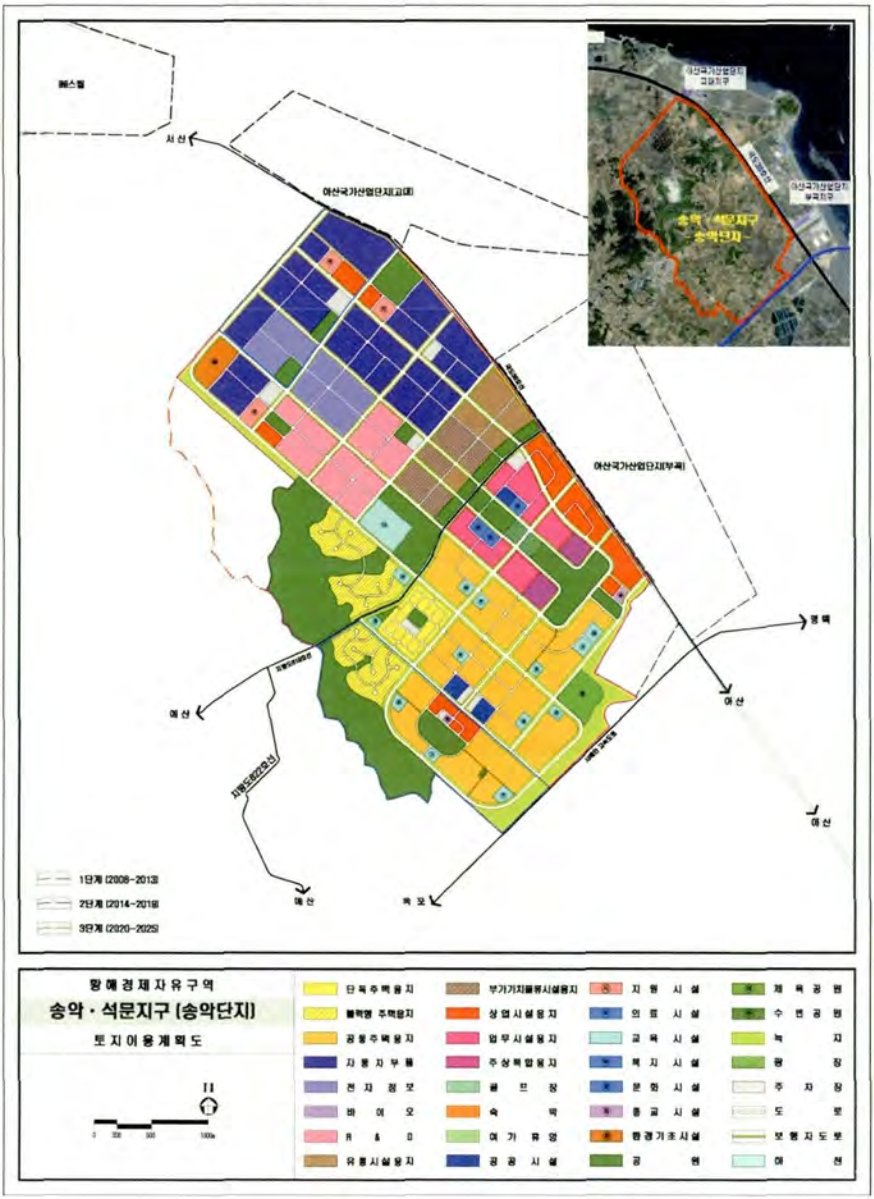

【 송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후 】



2 인주지구

최 초 (2008. 5. 6.지정)

- 개발사업자 : 한국토지공사
- 위 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 면 적 : 13.025㎢
- 사업기간 : 2013년~2025년(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 '25년까지)
- 총사업비 : 1조3,395억원[지자체 1,838억원, 민 · 외자 1조1,557억원]
- 사업내용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도지식산업 집적화

최 종 (2013. 2. 13.지정)

- 개발사업자 : 미선정
- 위 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 냉정리 일원
- 면 적 : 3.43㎢(1지구 : 2.49㎢, 2지구 : 0.94㎢)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 총사업비 : 7,024억원[국비 600억원, 지자체 600억원, 민 · 외자 5,824억원]
- 사업내용 : 자동차생산 · 부품, R&D, 유통 · 물류시설, 주거시설 등

1) 기본방향

인주지구는 미래형 자동차 생산 및 부품산업, 물류 · 유통, R&D 등 글로벌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항만 배후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사업의 충청권 거점단지 조성 등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해상, 육상 교통인프라를 통한 물류거점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또한 전원형 명품주거단지를 계획하여 외국인의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었다.

2) 개발계획

인주지구는 고도지식기반산업의 단지 집적화를 목적으로 최초 개발면적 13,025,160㎡를 지정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면적 축소가 불가피하여 3,431,458㎡(73%축소)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 조성된 인주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계획되었던 자동차생산 · 부품과 물류 · 유통시설을 포함한 산업물류시설용지 비율을 확대하여 개발면적의 56.5%인 1,937,950㎡(당초 17.0%)로 변경 배치하였다.

아울러,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계획했던 27홀 규모의 골프장(2,166,100㎡) 건설은 개발계획 변경 시 취소하고, 아산만의 문방지구 및 공세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 및 관광단지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의 개발면적을 31.5%인 1,081,405㎡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3,025,160	3,431,458	△9,593,702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855,650	273,226	△1,582,424	14.3	7.9
	공동 주택	1,228,010	48,834	△1,179,176	9.4	1.4
	단독 주택	177,600	169,019	△8,581	1.4	4.9
	블럭형주택	450,040	17,121	△432,919	3.5	0.5
	건강복지타운	–	38,252	38,252	–	1.1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2,217,550	1,937,950	△279,600	17.0	56.5
	자동차생산	–	1,083,380	1,083,380	–	31.6
	자동차부품	870,330	496,508	△373,822	6.7	14.5
	전자 정보	1,031,590	–	△1,031,590	7.9	–
	R & D	145,400	229,311	83,911	1.1	6.7
	물류 · 유통시설	170,230	128,751	△41,479	1.3	3.7

구 분		면 적(㎡)			구성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전	변경후
상업시설용지	소 계	676,660	57,381	△619,279	5.2	1.7
	상업시설용지	343,240	12,622	△330,618	2.6	0.4
	업무시설용지	264,410	–	△264,410	2.0	–
	주상복합용지	69,010	–	△69,010	0.6	–
	근린생활시설	–	44,759	44,759	–	1.3
관광용지	소 계	2,166,100	40,877	△2,125,223	16.6	1.2
	골 프 장	2,166,100	–	△2,166,100	16.6	–
	관광휴양시설	–	40,877	40,877	–	1.2
공공시설용지	소 계	6,109,200	1,081,405	△5,027,795	46.9	31.5
	공공시설	13,570	3,960	△9,610	0.1	0.1
	지원시설	124,610	–	△124,610	1.0	–
	의료시설	4,480	–	△4,480	0.03	–
	교육시설	188,760	–	△188,760	1.4	–
	복지 · 문화시설	31,570	8,400	△23,170	0.2	0.3
	환경기초시설	96,890	25,940	△70,950	0.7	0.8
	공 원	1,957,080	272,967	△1,684,113	15.0	7.9
	체육 · 수변공원	190,060	–	△190,060	1.5	–
	완충녹지	1,778,100	232,609	△1,545,491	13.7	6.8
	공공공지	–	4,968	4,968	–	0.1
	배 수 지	–	2,439	2,439	–	0.1
	유 수 지	–	13,674	13,674	–	0.4
	광 장	23,830	–	△23,830	0.2	–
	하 천	101,370	–	△101,370	0.8	–
	변 전 소	–	13,580	13,580	–	0.4
	주 차 장	153,480	25,026	△128,454	1.17	0.7
	보행자도로	59,450	–	△59,450	0.5	–
	도 로	1,385,950	477,842	△908,108	10.6	13.9
유 보 지		–	40,619	40,619	–	1.2

【 인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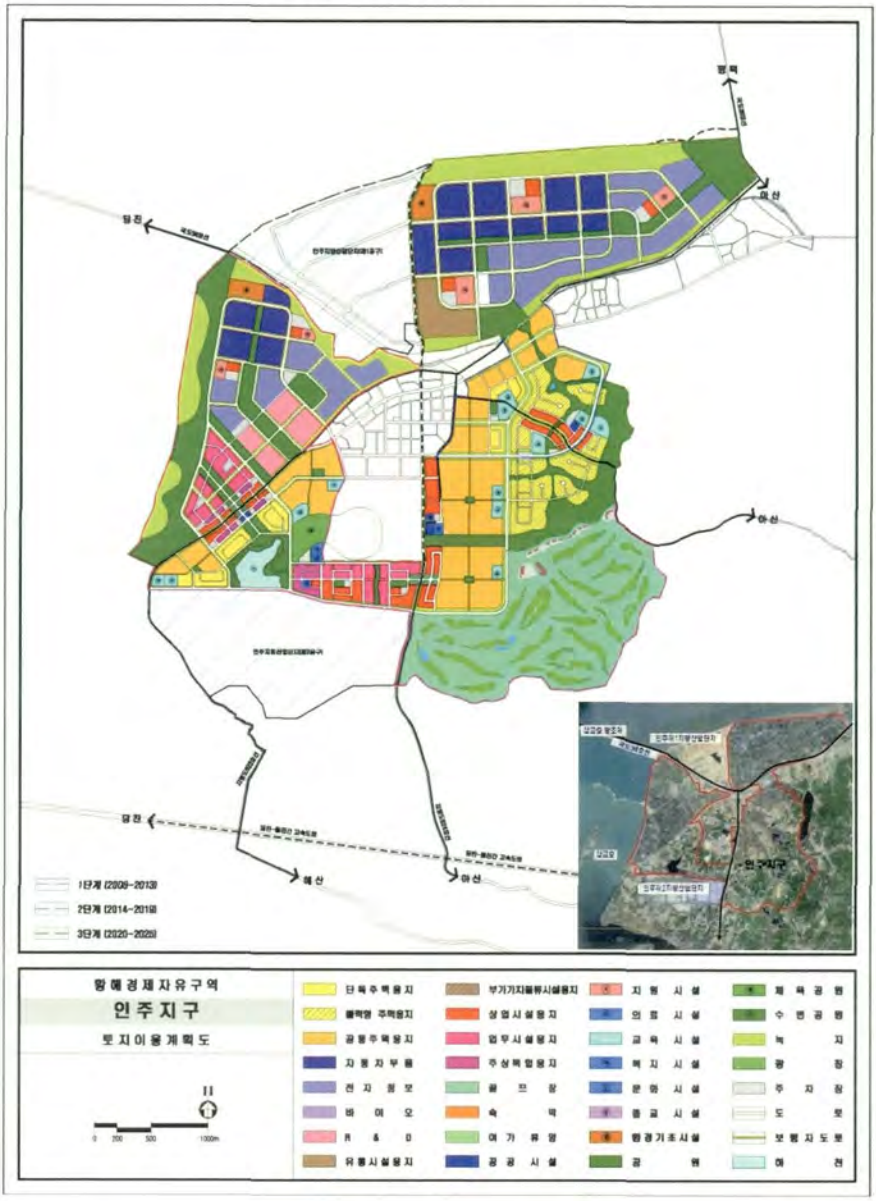

【 인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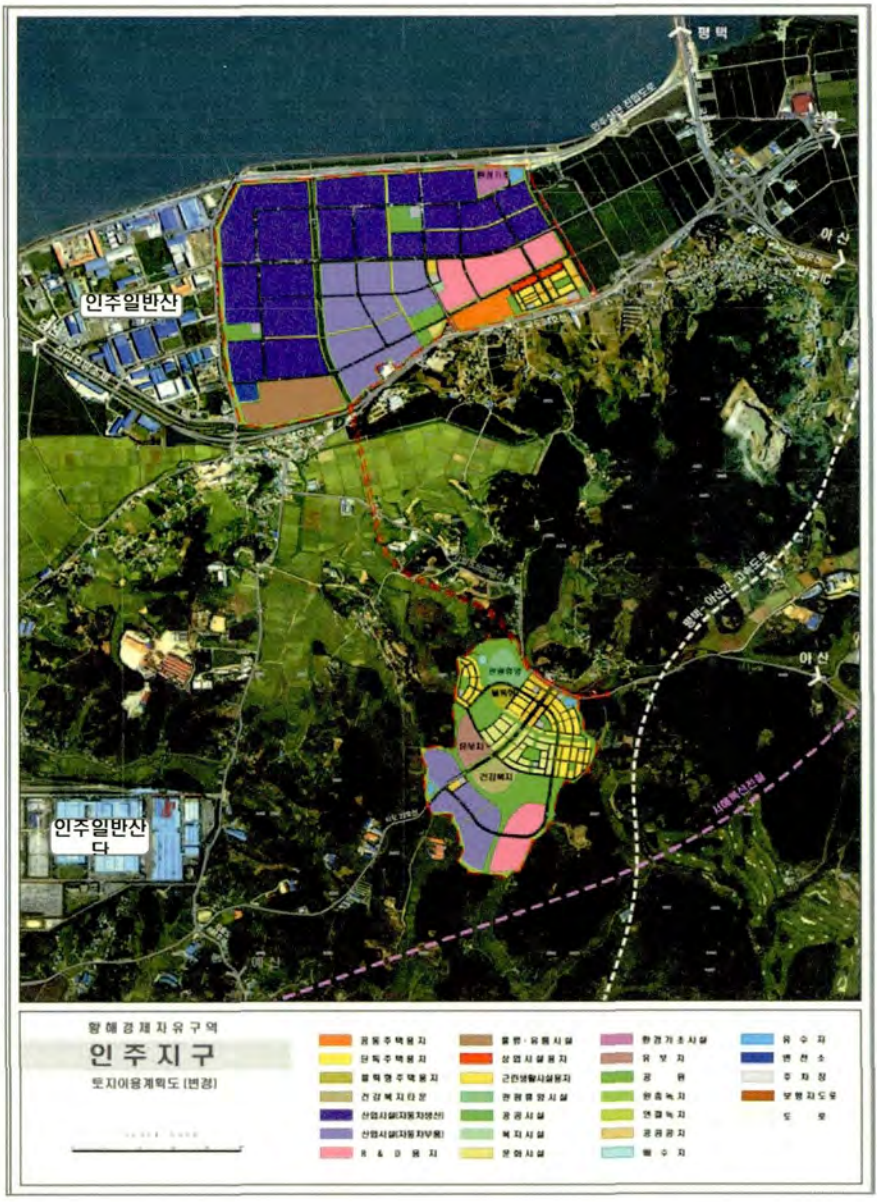

3 지곡지구

- 개발사업자 : 미 선정
- 위　　치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
- 면　　적 : 3.543㎢
- 사업기간 : 2008년 ~ 2025년
- 총사업비 : 3,037억원[국비 475억원, 지자체 253억원, 민 · 외자 2,309억원]
-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 친환경자동차 부품, 첨단모듈부품 등 첨단자동차클로스터 구축

1) 기본방향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 산업도시로서의 개발을 목표로 동북아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주변 산업단지 및 계획 중인 서산테크노폴리스와의 연계를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와 기능연계를 위해 교통,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원 · 녹지공간을 조성 개발할 계획이었다.

2) 개발계획

기 조성된 서산지방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서산 테크노밸리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관련 첨단산업용지를 개발면적의 47.9%인 1,696,570㎡를 개발하여, 자동차부품의 단일 기능도입을 통한 산업집적화를 유도하고, 상업시설은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면적의 1.0%인 36,190㎡ 규모로 최소화하여 공원과 연접하여 분산 배치할 계획이었다.

또한, 지원시설, 환경기초시설,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는 개발면적의 51.1%인 1,809,790㎡ 규모로 개발하여, 별도의 주거용지를 계획하지 않고, 지구 남측에 계획 중인 서산 테크노밸리의 주거용지 내에서 일부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지구 중앙에 남북방향 및 동서방향으로 자연지형을 살린 공원·녹지축을 계획하며, 지원시설 및 상업시설과 연접하여 공원을 배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542,550	100.0	
개발용지	산업유통시설용지	소 계	1,696,570	47.9	
		자동차부품	1,696,570	47.9	
	상업업무시설용지	소 계	36,190	1.0	
		상업시설용지	36,190	1.0	
	공공시설용지	소 계	1,809,790	51.1	
		지원시설	76,050	2.1	
		환경기초시설	74,730	2.1	
		공 원	752,900	21.3	
		녹 지	486,510	13.7	
		주 차 장	51,930	1.5	
		도 로	367,670	10.4	

【 토지이용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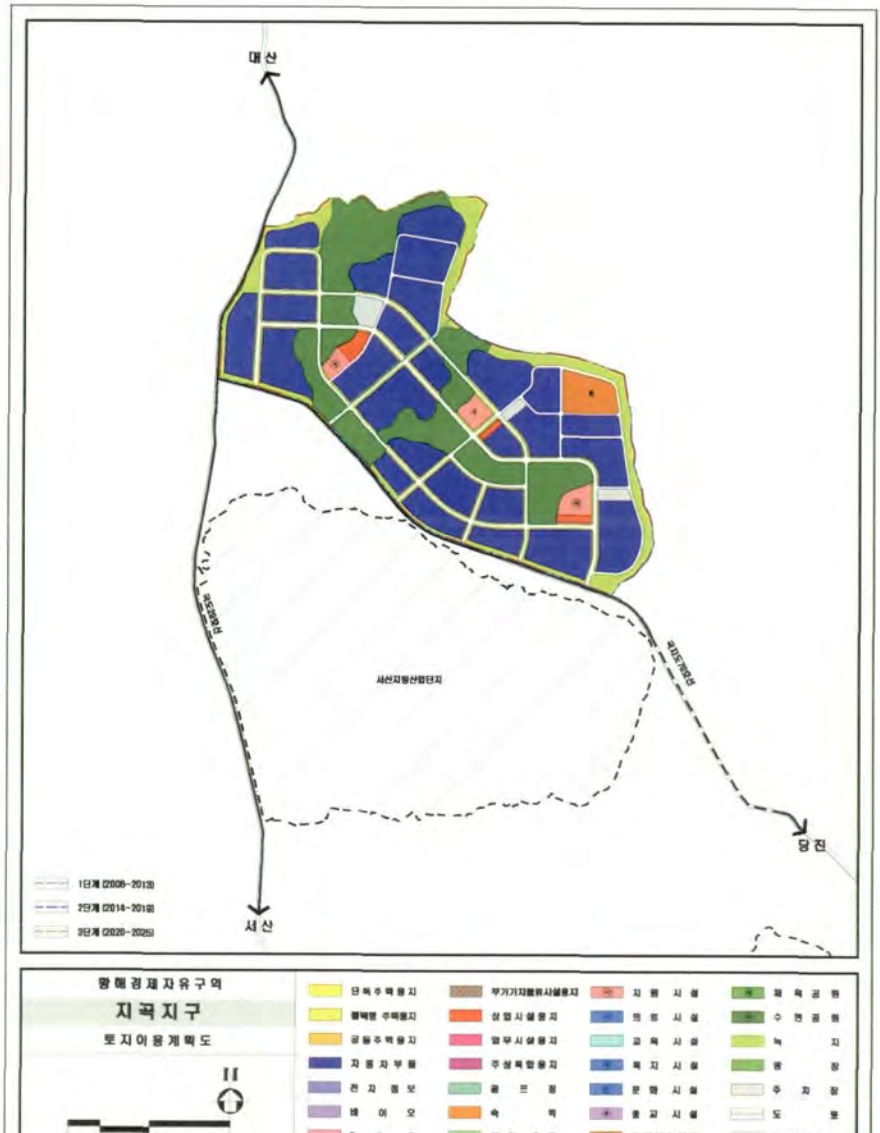
대산
서산
당진
서산지방산업단지
1단계 (2008-2013)
2단계 (2014-2019)
3단계 (2020-2025)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0 200 500 1000m
단독주택용지
블랙웬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바이오
R&D
유통시설용지
부가기자원유사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골프장
숙박
여가유양
공공시설
지원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환경기초시설
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도로
보행자도로
예전



제4부

추진공과

제 1 장 개발분야 추진

제 2 장 투자 유치활동

제 3 장 민원행정 추진

제 4 장 조직 및 조합회의 운영

제 5 장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제4부 추진공과

제1장. 개발분야 추진

1. 송악지구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Hub) 지구로 설정하고 철강화학 클러스터,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했었다.

【 송악지구 조감도 】



송악지구는 2006년부터 당진군(現당진시)과 H업체에서 지구 내 부지에 기술과 산업이 복합된 도시(당진테크노밸리)를 건설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초 계획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당진테크노폴리스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였다. 2008년 12월 29일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중 가장 먼저 H업체, 당진군, S은행의 민관합동법인 ㈜당진테크노폴리스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민간주도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송악지구는 개발사업 지구내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인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의 장기침체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최초 송악지구 개발계획은 총 1,303만㎡(394만평)으로 1단계(13년) 282만평, 2단계('19년) 50만평, 3단계('25년) 62만평 계획이었으나, ㈜당진테크노폴리스는 공시지가 상승 등 사업환경 변화로 총 394만평 중 100만평 실시계획 수립 후 단계적 개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역주민들의 일괄보상 요구로 2009년 9월 9일 1단계(282만평) 실시계획을 착수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권 PF(Project Financing) 경색으로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상황에서 S은행의 H업체 도시개발사업 PF자금 불가로 사업구역 축소 및 5단계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282만평의 사업과 보상추진을 주민과 약속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사업면적 축소·개발에 따른 대책 및 방안을 구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당진테크노폴리스는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여건 경색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여건 개선 시 사업 재추진 의사를 표명하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 송악지구 최초 토지이용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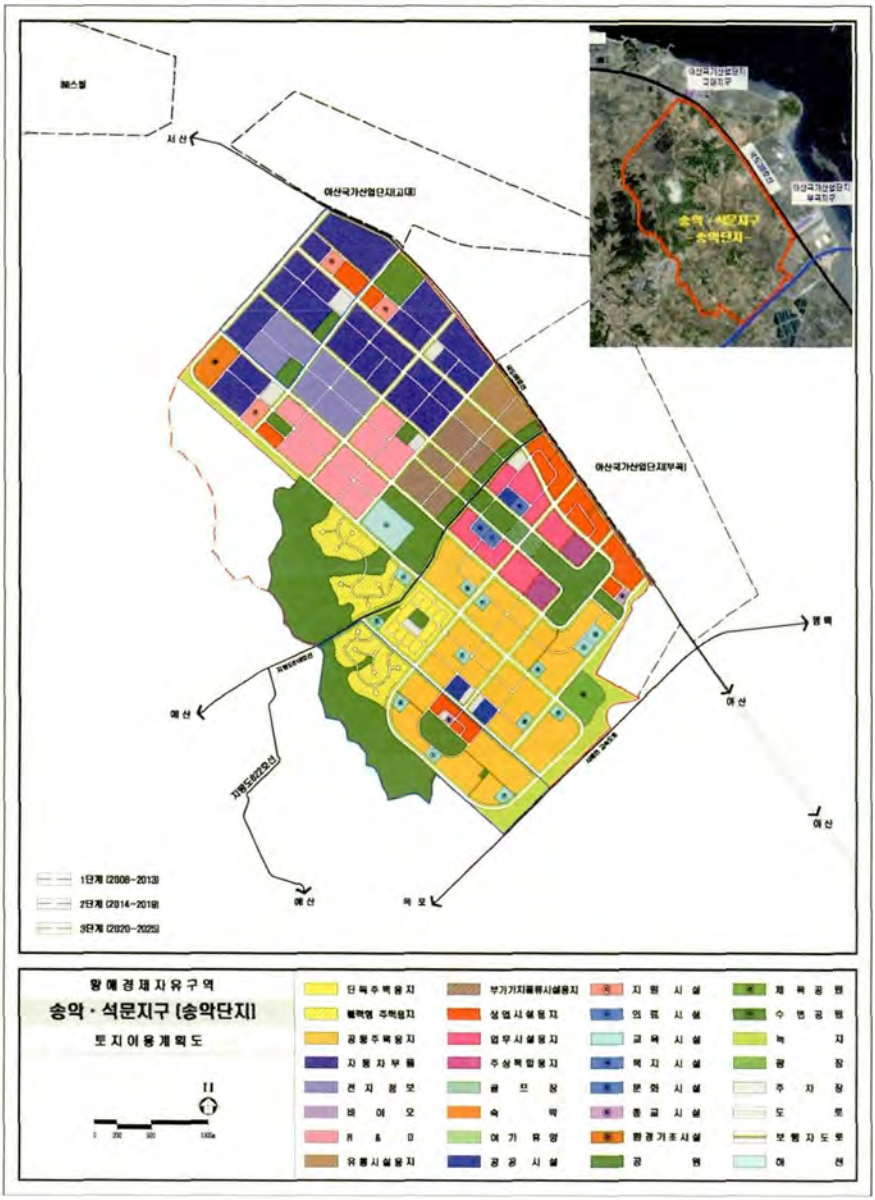

지역주민들은 행위제한, 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구지정 존속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지구지정 해제로 인한 공익적 가치 손실을 비교해 볼 때 지구지정을 존속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황해청에서는 송악지구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적합한 사업추진 전략을 모색코자, 2010년 11월 30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 진행한 송악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연구용역을 토대로 면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하여 2011년 12월 8일 송악지구 개발계획을 당초 1,303만㎡에서 변경 602만㎡ 축소지정 하고, 2012년 8월 13일 축소된 면적에 맞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였다.

【 송악지구 구역 변경(축소) 현황 】



㈜당진테크노폴리스는 사업성 불투명을 사유로 사실상 사업 착수를 포기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시행자 대두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 27일 S법인으로부터 당진테크노폴리스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의 사업제안서를 황해청에 제출하였다. S법인에서는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국내금융사 및 중국투자자의 투자의향서를 첨부하여 2013년 7월 15일 황해청에 사업시행자 최다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진테크노폴리스의 양도, 양수(출자자변경)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서」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최다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2013년 7월 19일 충청남도는 최다출자자의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변경 조건은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수, 초기자본금 160억원 이상 확보 및 자금 조달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은 할 수 없음을 S법인에 통보하였다. 그 후 S법인에서는 2013년 9월 24일 중국투자단이 송악현장을 방문하는 등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위승계를 받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자 지정 전망을 밝게 했었다. 그러나 S법인에서는 자본금 160억원 증자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건이행 기간을 연장하였고 황해청에 제출한 중국투자자와의 투자확약서가 위조임이 밝혀지며 2014년 3월 31일 S법인은 사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이 취소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4개반 9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13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 충청남도는 TF운영 총괄 및 앵커기업 참여방안을 강구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LH 등 대체 사업자 선정방안과 지구별 단계별 개발 및

부분개발방안을, 충남개발공사는 공영개발방안, 당진시는 지역단위의 사업성 제고방안 등을 모색 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송악지구에 중국투자가 현장방문을 하였고, 2013년 9월 26일 송악FEZ와 송악지구 개발사업 투자확약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자선정은 어려웠다.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해지자 송악지구의 주민들은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현황과 주민요구사항을 충청남도에 요구하고 법적 일몰기한인 2014년 8월 4일까지 사업자선정을 기다려보겠지만 해제 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황해청에서는 S법인의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후 Y업체를 접촉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국내 건설사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를 권유 했었지만 사업규모가 커 사업성이 없고 국내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투자가들은 사업성 보전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미분양 토지에 대한 공공기관 매입요구, 사업비 손실에 따른 투자금액 보전 등 현 법률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불가한 사항을 제안 할 뿐이었다.

2014년 7월 사업추진에 적극적이던 Y업체마저 자금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추진 불가를 표명하였으며,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법적 일몰기한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2014년 8월 5일 사업지구가 자동해제 되었다.

송악지구의 실패요인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불황 여파, 장기적인 국내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투자기피 현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특히, 금융권에서 부동산개발 대출 시 기업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측에서는 지급보증을 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부채가 상승되어 기업신용등급 저하 등으로 회사운영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송악지구 지정 후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업성이 악화된 것도 실패요인이 되었다. 공시지가

상승은 사업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세와 의료보험료 증가로 지역민들의 고통도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당진테크노폴리스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대내외적으로 송악지구의 이미지가 흐려졌고, 국내 유수기업의 분석결과 3,000억원 수준의 손실 전망 정보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당진테크노폴리스에서 사업면적을 축소·개발하자는 제안을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적기에 수용하지 못 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로 인한 개발 성공 가능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 송악지구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 】

면적	지목		평균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당)							증가율 {('07-'13)/'07} ×100
	지목	비율	'07	'08	'09	'10	'11	'12	'13	
6㎢	임	43	30,941	49,313	52,147	55,824	75,349	87,329	82,585	166.91
	답	35	24,757	39,605	47,100	52,169	59,584	70,352	71,557	189.03
	전	9	42,546	70,777	84,412	94,153	109,070	129,583	131,230	208.44
	대	3	63,705	102,774	130,389	146,891	170,146	202,388	199,472	213.12
	잡	1	67,453	112,884	133,931	145,474	174,083	202,441	198,231	193.88
	기타	9	13,040	18,074	26,333	29,379	35,084	41,750	59,627	357.26
사업지구 평균 공시지가			29,327	46,882	53,673	58,741	72,483	84,999	85,143	190.32
당진시 평균 공시지가			21,327	25,294	26,065	27,015	29,737	33,953	34,366	61.14
사유지 비율 및 보상 시 예상금액			83.6% 3,382억원	83.6% 6,205억원	83.6% 7,104억원	83.6% 7,775억원	83.6% 9,594억원	83.6% 1조1,251억원	83.6% 1조1,270억원	190.32

황해청에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송악지구의 면적을 대폭 축소하였고, 2012년 9월 2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공모 후 유자격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권유하였지만 거절만 받을 뿐이었다. 충남도와 황해청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기한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사업시행자를 찾았으나 끝내 법적 일몰에 이르렀다.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원혜택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현행 경자구역과 같이 선 지정 후 개발이 아닌 확실한 사업자 및 사업비를 확보한 후 지구 지정 및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붙 임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추진 현황

일 자	내 용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
12. 29.	사업시행자 지정(당진TP) 및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 체결
2009. 1. 8.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주)당진테크노폴리스
9. 9.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0. 7. 5.	당진TP 사업추진 잠정 중단 통보
11. 30. ~ 2011. 4. 28.	송악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 연구 용역 추진
2011. 10. 19.	구역조정(축소) 신청(안) 제출(충남도 → 지식경제부)
12. 8.	개발계획 축소 변경(1,303만㎡→602만㎡)
2012. 6. 28.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모집공고
8. 13.	개발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고시
9. 27.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S법인)
2013. 7. 15.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신청(S법인→황해청→충청남도)
7. 19.	최다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충청남도)
8. 7.	조건부 중 대주주 변경 완료(당진TP→S법인)
9. 24.	중국투자단 현장 방문
12. 5.	지역 국회의원 면담(충남지구 현황설명 및 대안 모색)
12. 24.	주민의견 수렴결과(사업자 선정추진여부) 대부분 사업추진 희망
2014. 3. 7.	S법인 최다출자자 변경 조건부 최종 불이행
3. 12.	S법인 최다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
3. 31.	S법인 최다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 취소
2014. 3 ~ 7말	국내 대기업 등 방문 사업참여 권유
8. 5.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해제고시

2. 인주지구

인주지구는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개발면적 1,303만㎡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3조 2,45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비지니스, 상업, 주거, 산업, 관광 등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 거점을 조성하여 R&D,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등 세계유수의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 인주지구 조감도 】



대규모 장기간 개발하는 민간 투자사업임을 감안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하기 위하여 제한적 공모방식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방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민간 대기업 등 59개 기관 ·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5개 기업 · 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7개 분야(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교통물류, 투자재무,

회계금융) 113명의 민간전문가를 「평가기준위원회 및 평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9년 1월 13일 평가기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지침 및 평가기준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6일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당초 참여의사를 밝혀왔던 민간기업은 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 불참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사업제안서는 법률자문 및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2009년 5월 12일 평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능력,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 시행경험」 등 주요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자로 자격을 갖춘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확정하여 인주지구개발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 인주지구 최초 토지이용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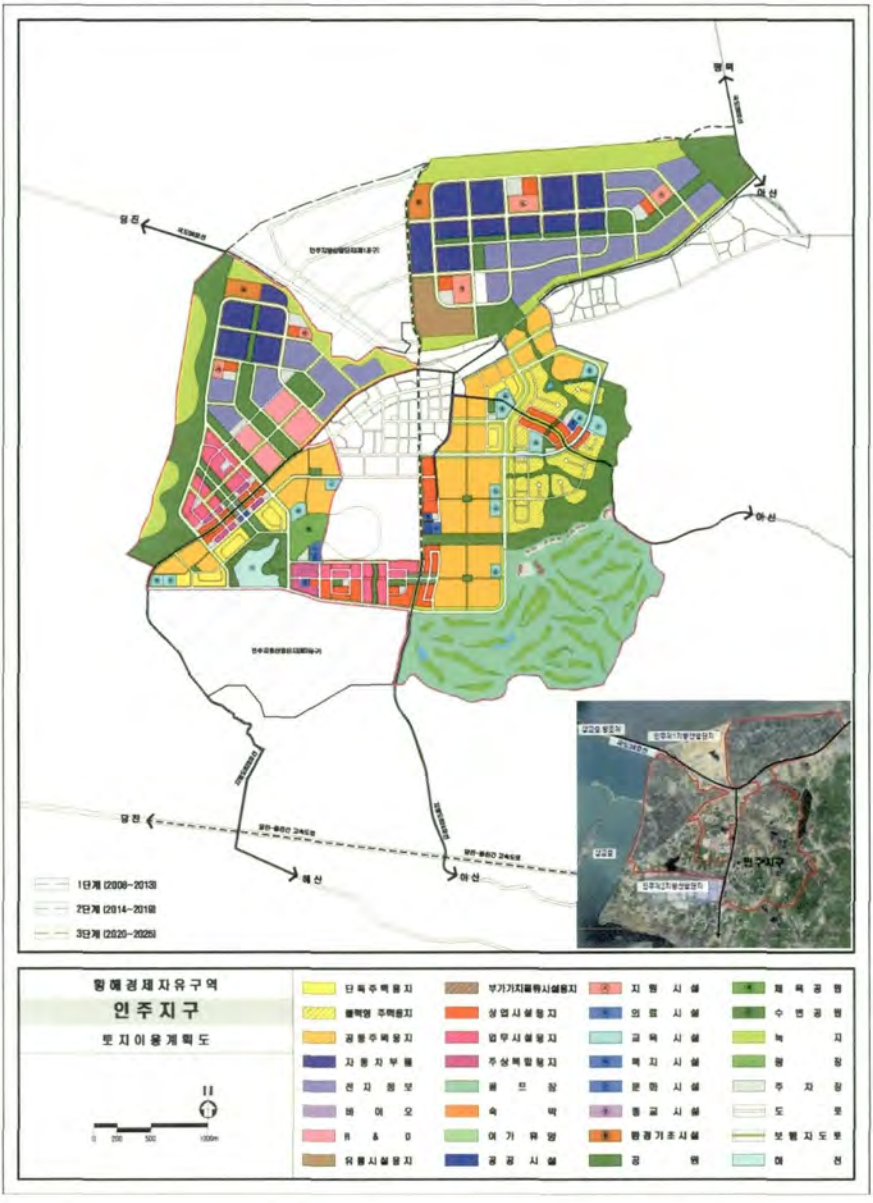

그러나, 2010년부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의 통합 후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토지가 수조원 이상 적체된 상태로 신규 개발사업에 난색을 표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자체적으로 인주지구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황해FEZ포승 · 인주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연구용역"을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규모를 절반이상 축소하고 사업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황해청에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 변경내지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1년 4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반 사업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사유로 사업포기를 황해청에 통보 해왔다. 그 후, 황해청과 지식경제부는 "황해FEZ포승 · 인주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경자법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여 구역변경 및 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인주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구역조정안으로 2011년 12월 8일 개발면적을 13,025,160㎡에서 8,972,622㎡를 감하여 4,052,538㎡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13일 농림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편입비율에 대한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면적은 3,431,458㎡로 최종 변경하게 되었다.

【 인주지구 구역 변경(축소) 현황 】



※ 최초 : 1,303만㎡, 구조조정 : 405만㎡, 최종 : 343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변경된 인주지구는 새로운 개발계획에 맞춰 2012년 2월 13일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모집공고를 실시하였다. 경자법 상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사업시행자로 제안 할 수 있어 2012년 4개 업체, 2013년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중 2012년에 제안한 4개 업체 모두는 경자법 상 자격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 되었으며, 2013년에 제안한 2개 업체는 자격요건 충족으로 2단계 제안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중 한 개 업체인 K건설회사는 아산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단계 제안을 포기하였고 외투기업인 D사만 2단계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D사의 사업제안서는 법률 및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2013년 8월 29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자금조달 계획 등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탈락하게 되었다. 이후 D사는 자금조달계획 등을 보완하여 2013년 11월 29일 제출하지만 전문가 자문결과 개선된 사항이 없어 재차 탈락하게 되었다. 그 후 도내 업체인 A사는 자신이 D사의 국내출자자로 직접 참여하고 자본금 증자 후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였지만, 막상 보완 제출된 제안서는 자본금 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자법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종 반려하게 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4개반 9명의 TF팀을 구성하여 2013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충청남도가 TF운영 총괄 및 앵커기업 참여방안을 강구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LH 등 대체 사업자 선정방안, 지구별 단계별 개발 및 부분 개발방안을, 충남개발공사는 공영개발방안, 아산시는 지역단위의 사업성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게 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3차례에 걸쳐 LH 재참여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개발구역 축소, 입주기업 선 투자유치, 충남개발공사 참여 검토 등 인주지구 사업성 개선에 대한 황해청과 충청남도의 자구노력을 펼쳤었다. 그러나 LH는 부채규모가 140조원과 인주지구를 석문 국가산단과 동일권역으로 판단하여 미분양 우려로 사업성이 낮게 분석되어 신규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그 외에도 황해청에서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2013년 10월에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황해청이 공조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참여를 설득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내부사정과 과다부채 등으로 사업 재참여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자동 해제 전 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참여를 제안하였으나 가격경쟁력 미흡, 민간사업자 부담가중, 주변지역 미분양 물량 대기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 참여를 기피하였고 인주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하여 2014년 8월 5일 경자법에 의해 자동해제 되었다.

인주지구는 기 조성된 인주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국제업무 및 고도지식 기반사업 단지의 집적화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개발 초기 엄격한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으로 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 수도권규제완화 ·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부동산개발 PF사업 추진 시 기업의 지급보증 의무화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다른 사업에 대한 이자부담 가중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망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혜택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이미 고부가가치 기업에 대해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세금을 20년간 면제하는 등 혜택이 있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국책사업, 글로벌기업의 거점투자 등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적 메리트가 사전에 조성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투자자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 · 중기 · 장기 사업 추진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성과를 연계시키는 등 추진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을 포기 하거나 전면 해제 할 경우 행위제한과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붙 임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추진 현황

일 자		내 용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지정
	9. 29.~ 10. 22.	국내 59개 기관기업 투자의향사 조사 - 투자의향사 : LH공사, 충남개발공사, 아산시, 건설회사 2개업체
2009.	4. 6.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제안서 단독제출
	5.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12. 31.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체결, 사업시행자 확정
2010.	6. 28.~ 2011.3.27.	YESFEZ 포승 · 인주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연구용역 추진(LH공사)
2011.	4. 18.	LH공사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통보
	4. 26.	도지사, 주민대책위간 면담실시
	6. 29.	도지사 주재 주민간담회 개최 - 구역조정안 : 당초 1,303만㎡ → 변경 622만㎡
	10. 19.	구역조정 신청(안) 제출(충남도 → 지식경제부)
	12. 8.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면적(당초 1,303만㎡ → 변경 405만㎡) - 승인조건 : 농업진흥지역 편입비율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2011.	11. 10.~ 2012.4.18.	농림수산식품부와 편입비율 조정협의
2012.	2. 13.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제안 모집공고('12.7.4, 9.26, '13.2.22변경공모) - 4개 업체 제안참여(3개 업체 자격미달, 1개 업체미흡)
	2. 28.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황해청→지식경제부)
	5. 18.	충남개발공사 사업참여방안 실무협의
	10. 23.	인주지구 개발계획변경(2차) 승인신청(지식경제부)
	11.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 심의
	11~12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9개부처 · 청)
	12. 6.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3.	2. 13.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승인 고시 - 고시면적(당초 405만㎡ → 변경 343만㎡)
	3. 29.	외투기업 D업체에서 사업 제안
	8. 29.	D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탈락)
	11. 29.	D업체 개발사업 再제안
	12. 24.	D업체 탈락처리 통보(관련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일 자		내 용
2014.	1. 14.	도내업체인 A업체 사업시행자 참여요청 접수 – D업체의 국내출자자 변경(S업체⇒A업체) 및 자본금 증자(70억) 후 再제안('14.3.31한)
	3. 21.	D업체 사업시행 제안서 제출
	4. 4.	D업체 사업시행 제안서 반려통보 – 경자법 상 자격요건(외국인투자금액 비율이 50%이상) 부적합 ※ 자본금 30억원 중 1.5억원(5%)만 외국투자가의 지분임
	3.~7월	국내대기업 등 방문 사업참여 권유
	8. 5.	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지정해제

3. 지곡지구

지곡지구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교통, 환경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입지 및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린 풍부한 공원,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 지곡지구 조감도 】



대규모 장기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우수하고 건실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한적 공모방식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방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민간 대기업 59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0월 19일까지 투자의향 조사를 한 결과 4개 기관·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2008년 11월에 실시하였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대학 및 관련학회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7개 분야(도시계획, 토목·건축, 환경, 교통, 물류, 투자재무, 회계금융) 113명의 대학교수 및 민간 전문가를 「평가기준위원회 및 평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1월 13일 평가기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지침 및 평가기준안을 확정하고 2009년 4월 6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민간기업은 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 불참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제안서는 황해청의 법률자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제안내용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2009년 5월 12일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능력,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 시행경험」 등 주요항목을 평가한 결과, 2016년 보상계획으로 제안되어 조기개발 의지 미흡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다.

【 지곡지구 최초 토지이용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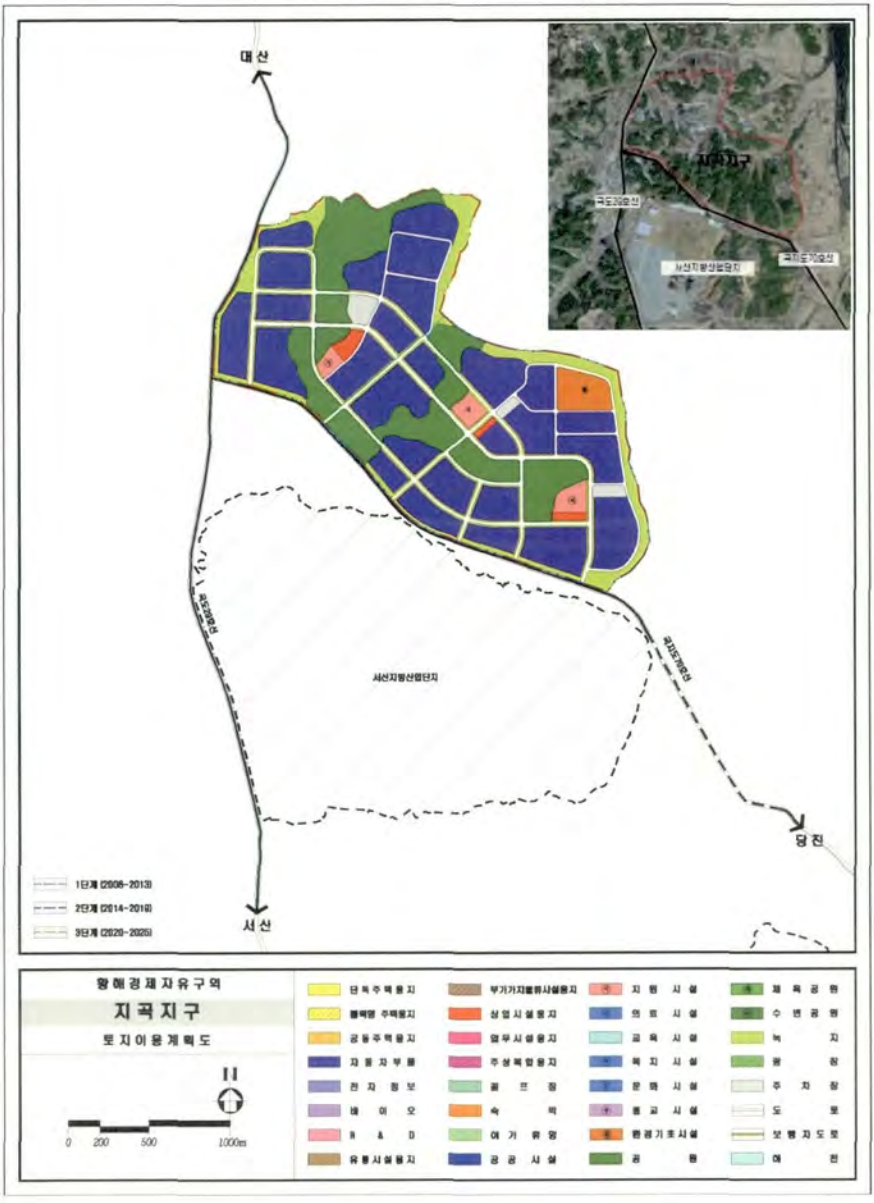

그 후 황해청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개발공사, 국내 도급순위 상위 50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 투자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사업성 결여, 산업용지 과잉공급 등을 사유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황해청에서는 지곡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0년 3월 개발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용역추진 절차 이행 중 2010년 6월 8일 경자구역 단위지구 조정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다. 황해청은 충남도 및 서산시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 의견으로 지경부에 제출하고 단위지구 조정에 대한 지경부의 최종안이 결정되게 되면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사업성 있는 개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계획과 사업시행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곡지구 구조조정은 보류하게 되었다. 그 후 황해청은 2011년 3월 9일 지곡지구 사업성 개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수행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불가의사를 표명하였고, 충남발전연구원을 차안으로 협의하였으나 역시 내부사정으로 불가의사를 표명하여 용역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는 실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 보완요구를 해왔다. 황해청에서는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주재하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민 대다수는 2014년까지 기다리다가 주민에게 피해를 더 주고 자동해제 되는 것 보다는 현 시점에서 지구지정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다. 그 후 황해청에서는 주민의견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12월 8일 최종 해제하게 되었다.

지곡지구를 개발하여 동북아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꿈꿔왔던 기대와는 달리 개발초기부터 경자법 상의 엄격한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등으로 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토지공사만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그마저도 사업계획이 부적합하여 탈락하게 되면서 지곡지구 사업추진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수도권규제완화, 사업성 결여, 산업용지 과잉공급 등의 사유로 공기업은 물론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민간기업에서도 사업참여를 기피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목적인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이 입주할 경우 각종세금 감면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이 허용되고, 개발사업자에게는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등 토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혜택 면에서 해외 경제특구 및 국내 유사특구 대비 규제완화 및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이런 여건들을 볼 때 지곡지구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곡지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조기해제를 결정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 붙 임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추진 현황

일 자	내 용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지정
9.29 ~ 10.22.	개발사업 투자의향 조사 – 투자의향사 : LH공사, 충남개발공사, 서산시, 건설회사 1개업체
11. 28.	투자의향 기관 ·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009. 1. 13.	사업제안서 및 평가기준안 심의 확정
4. 6.	사업제안서 접수(한국토지공사 단독 제출)
5. 12.	사업제안서 평가(평가선정위원회) – 조기개발의지 미흡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탈락
7월~09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검토(산업연구원 등)
10월 ~'10.3월	사업시행자 조기선정을 위한 유치활동 – 전문가 자문 및 50대 대기업, LH공사 등
2010. 3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발표로 인한 용역추진 보류
6월~12.28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지식경제부) – 수요부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워 현시점 해제 권고
12. 30.	구조조정 대상 보류 통보(지식경제부→황해청) –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역계획 수립지구 및 사업자 선정 중인 지구
2011. 3월~5월	사업성 개선용역 수행자 선정 추진 – 용역 수행예정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수행불가 의사 표명
6. 15.	구조조정 보완통보(지식경제부) –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 구조조정 수립 제출
6. 30.	지구해제 결정(주민간담회 개최결과 반영)
12. 8.	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지정해제

제2장. 투자유치 활동

1. 개 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자치단체 조합으로 출범하여 수도권의 풍부한 굴지기업과 충남의 개발자원이 결합하면서, 국제적 자본이 유입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입지적 평가를 받으며 출범하였다. 기존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구 등 개별적 개발형태에서 벗어나 산업 · 물류 · 정주 · 상업 · 국제시설 등을 포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사업으로 기존의 산업지구와는 차별화 되어 주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남 송악지구는 출범과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로 당진테크노폴리스(한화그룹)가 선정되어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다.

각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전략으로 송악지구는 수도권과 충청 · 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 내륙으로 연결되는 대전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임해산업단지가 입지하여 광역적 산업 · 물류 · 교통의 신성장지역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소재산업 기반인 현대제철과 부곡 · 고대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금속 ·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 개발 중인 석문국가공단 및 송산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지역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중국의 성장과 함께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망 구축과 평택 · 당진항을 통한 국제적 교류 및 무역 전진기지로 동북아 교역의 중심으로 발전할 전망이었다.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2009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물류산업 투자유치 기본전략 및 비즈니스 기본모델 제시의 내용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물류산업 투자유치 전략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 수도권 및 내륙권 시장인접, 내륙교통망체계 구축과 미주 및 유럽노선 취항(평택 · 당진항),

중국시장의 성장으로 동북아 역내물류 급증, 평택 · 당진항 물동량 증가, 지식기반 제조업의 성장 가능성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제철산업과 철강 · 화학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물류 · R&D · 교육 등 기능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인주지구는 수도권전철 · 경부고속철도 · 장항선 등 철도가 경유하고, 국도와 지방도로 천안과 수도권이 연결되는 지역이며 2012년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함으로 수도권 특히 인천지역 물류에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당진-천안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교통인프라 여건이 좋아 장래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등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과 동시에 컨벤션센터, 전시장을 포함하는 국제비즈니스 센터 조성 그리고 국제업무의 거점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2009년에 아산만, 평택호를 중심으로 「Lakeside 관광레저단지 개발」 용역결과 인주지구 전체의 가치창출 및 정주여건의 조성을 위한 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리라 여겼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개발 관련 사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 시 필요한 개발계획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두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 및 외국투자업체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인주지구 인근에 기 조성된 인주 지방산업단지가 있어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등 제조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인주지구 주변에는 삼성SDS가 위치해 있고, 아산테크노벨리 및 삼성전자가 조성한 탕정LCD단지가 있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해청에서는 2010년 ㈜디스플레이뱅크 업체를 통해 「디스플레이 · LED 부품소재 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디스플레이, LED 산업분야 분석상정 및 투자유치 타깃 기업의 유치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YESFEZ내 디스플레이 · LED

부품소재, 장비 전용단지 마스터플랜을 도출하여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대중국 연계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는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현황 전망과 중국 투자기업의 유형화에 따라 투자유치 타켓을 도출하여 대중국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주지구는 현대, 기아, 쌍용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품공장을 연계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 수소연료 등 미래형 자동차 생산 관련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장점으로 중부권 물류기지를 조성하여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지곡지구는 대산항과 근거리(19㎞)에 위치하고 국도29호를 통한 물류 수송기능이 양호하며 서산IC에서 국지도 70호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광역적 입지 여건이 좋다. 여기에 당진-대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은 더욱 양호해질 전망이며 인근에 서산일반산업단지와 대산 · 대죽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고 지곡 · 성연에는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생산 공장이 입주하여 첨단 자동차 산업도시를 조성하는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동북아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투자유치 방향을 잡았으며 지곡지구 인근의 석유화학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대상 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업종을 집적한 차별화 · 특성화된 산업인프라를 형성하고자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국 리먼사태에서 출발한 글로벌 자본시장 위축은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에는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투자유치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인천 · 부산 · 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출범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이 침체되어 국내기관 간에 경쟁하는 과열양상이 연출되었다.

출범 초기 투자유치 방향은 지구별 기본계획과 제도적 · 입지적 환경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으나, 개발 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유치 마케팅은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개발 사업의 첫 삽을 뜨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 부지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은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였으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전문직의 경우 유치실적을 위해 실질 투자와 연결되기 전 단계인 MOU를 기업에 부탁하여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한 · EU FTA, 한 · 인도 CEFA, 중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송악지구 인근의 자동차, 철강 선도기업의 입지로 인한 클러스터 형성에 유리한 여건이 되면서 철강소재 산업과 연계한 차체 · 변속기 등 고부가 부품기업과 철강 수요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고 평택 · 당진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對중국 교역을 겨냥하는 부가가치물류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인근에 위치한 인주지구와 지곡지구는 차세대 그린카 분야 부품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미국, 독일 등 자동차생산 업체를 방문하여 대용량 배터리, 고성능 모터, 급속 충전기 등 IT융합과 연계한 JV(Joint Venture)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의 CO2 감축노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두각을 보이며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송악지구에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센터 및 관련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 태양광 발전관련 설비업체 및 R&D센터 유치, 미래형 자동차 중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산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주지구는 주변지역에 삼성LCD, 삼성반도체, 삼성 부품 및 협력업체 등 IT관련 업체들이 입지하고 있고, 축적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융합산업 수요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S/W,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산업 중심의 IT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산업기술 분석을 통하여 투자유치 타켓을 설정,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 분야별 앵커기업 유치와 R&D기반 확충 및 임대단지 확보 등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글로벌기업의 거점투자 등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사업적 메리트를 사전에 조성되어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최대 장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중국 수출입 입지를 이용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였으나 이미 중국에서는 고부가가치 기업에 대해 토지 무상공급과 20년간 세금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눈길을 돌려놓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지구별 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정이 늦어지면서 투자유치관련 조직의 역량을 개발사업 투자유치로 전환하여 단계별로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배치된 인력의 전문성이 다르고, 시행계획(협상 · 보상 · 수익구조 등) 업무분야가 상이하여 통합적 운영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구조로 결합된 외국자본의 투입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투자결정권이 있는 자본그룹 리더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인적자원의 역량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경기도와 충남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투자유치 집중도가 분산되는 단점도 나타났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개발 지구에

유치하려는 경향과 지구별 홍보에도 유기적 협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이견도 나타났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의 대규모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면,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글로벌 투자환경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적 ·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입지적 특성 그리고 초기투자자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조직과 인력은 사업의 진행과정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배치운영은 물론 외국자본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금융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관리기관에서는 우량기업 중심의 타깃 유치에 전념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 창출을 위한 유치활동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센티브와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동의 불일치로 인한 투자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공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분야별 투자유치 활동

가. 제조업 분야

제조업 투자분야는 투자유치본부장을 중심으로 외국어가 능숙하고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고용해 분야별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 연구용역 추진, 국내외 제조업 관련 박람회 참여, 관련기업 1:1 면담 등 활발하게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

【 지구별 투자유치분야 】

지구명	면적	투자유치분야	투자유치 포인트
계	24.3㎢		
포승지구	5.5㎢	대중국 수출 물류 전진기지	평택항과 연계한 물류 편의 및 대중국 지리적 장점
송악지구	6.0㎢	철강 및 기계장비	철강 클러스터(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연계
인주지구	4.0㎢	차동차부품, 첨단산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연계
지곡지구	3.5㎢	자동차부품 위주 산업물류 시설	
향남지구	5.3㎢	BIO, 의료기기 산업	주변지역 의료기기산업 연계

송악지구는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철강소재 산업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차체, 변속기 등 고부가가치의 부품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였고, 국내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맞춘 태양광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관련 설비업체, R&D센터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인주지구는 현대자동차 공장과 부품업체 및 협력업체가 주변에 입지하여 이들 업체와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업체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 고성능 모터, 급속 충전기 등 자동차 산업과 IT기술을 집적시킴으로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기지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소재 기업 및 인근지역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큰 분야의 업체를 중점으로 유치하여 IT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지곡지구는 주변 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이미 입지하고 있어, 완성차 공장 또는 자동차 부품기업 단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많아지자 기업들은 기업이전 대상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포승지역(경기)과 송악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송악지구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포승지역은 평택항 인근에 이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로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이들과 연계가 있는 기업들과 평택항을 수출입기지로 활용코자 하는 기업들이 포승지구 입주를 희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향남지역(경기)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이전지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 반면 인주와 지곡지구는 기업들에게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기 어려웠고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투자유치 과정을 살펴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 주가폭락은 물론 실물경기가 침체되었고, 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시기였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5개지구 중 4개지구의 개발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고 유일한 개발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투자를 꺼려 송악지구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활동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유럽과 중국, 일본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라는 입지 전략에 따라 한국의 내수시장 또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유럽기업들, 특히 독일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박람회(2010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에 독립부스로 참가하여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독일 IR 개최 (2011년 독일 프라이부르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미FTA, 한·EU FTA체결에 따라 한국을 우회 수출기지로 삼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성과를 토대로 현지 박람회 참가(2010년 상하이자동차부품박람회)는 물론 산동성, 베이징시 관련부서를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벌인 바 있었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본업계의 사정에 밝은 일본

기업가를 투자유치매니저로 위촉하고 일본의 대형 산업전시회에 독립부스를 마련하여 참가함과 동시에 일본 현지에서 미리 통보해 온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투자수요 파악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외국에 나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따른 비용부담과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의 신규 부지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수도권에 입지한 외국계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방문 등 밀착형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중점 유치업종에 관해서는, 개발지구의 개발사업 초기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기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만 아산만 인근의 산업구조와 미래지향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디스플레이 소재 등 주력산업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핵심 투자유치업종으로 설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 제조분야 유치 실적 〉

구분	사업자	투자국	사업내용	일자	투자규모 (백만불)	수요면적 (천㎡/천평)
계		10건			242.5	535(162)
MOU	금강오토텍	한국	제조	12.02.15	7	16.5(5)
	정우프라스틱	한국	제조	12.02.16	15	33(10)
	부공산업(주)	한국	차부품(특수강)	12.03.09	12.5	66(20)
	(주) 서영	한국	차부품 포장	12.03.16	25	66(20)
	대경에너텍	한국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12.04.05	50	13.2(4)
	K社	한국	철강제품제조	12.04.13	80	198.3(60)
	선화케미칼	한국	이중벽관	13.05.21	3	10(3)
	KUPP	한국	특수관	13.05.21	20	66(20)
	소계	8건			212.5	469(142)
LOI	에버솔라에너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11.11.16	10	33.0(10)
	Quitetside社	미국	냉반방 제조	12.11.30	20	33.0(10)
	소계	2건			30	66(20)

충남지구 인근에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투자유치활동을 자동차 산업, 철강산업 관련 업체를 타깃으로 전개하여 자동차 관련부품업체, 신재생에너지 업체 등 10개 업체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투자의향을 보인 이들 기업은 주변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 향후 토지 가치 증대는 물론 대중국 수출 인프라 여건이 잘 갖춰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투자의 최적지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대경에너텍은 프랑스의 글로벌에너지 회사인 A사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 연구개발(R&D)센터 건립 및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인주지구)에 투자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차례 본사를 방문하여 결국 2012년 4월 외국투자비율 30%로 5천만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투자유치로 인해 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향후 미국, 일본, 유럽의 그린에너지시장 확대에 대비하는 국내기업들의 외국자본과의 공동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웠으며, 확정된 사업부지 없이 막연한 계획서만으로 기업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투자유치 타깃 면담 시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잠재투자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지비용 제시도 불가능한 상태로 이러한 점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기업들에게 보여줄 개발 현장이 없는 상황에서 항구 시설만을 보여주는 일도 있었고, 개발사업의 정체로 인한 투자유치활동 제약이 심각했었다. 또한 투자유치의 전략적인 문제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투자지역과 차별성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나라인 싱가폴, 중국 등과 비교해 보면 투자요인이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성화된 많은 내부 토론과 연구용역을 추진해 투자유치 전략을 만들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으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과 중국과 가까운 평택항, 당진항의 편리성만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 투자유치 타깃선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역내에 입지한 대기업과의 공급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은 기업의 내부 경영상 비밀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매우 어려웠었다. 역내 기업들과의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기위해 각종 용역에 투자유치 타깃 정보를 요구하였고 각종 박람회에 참여 기업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대할 만한 기업의 투자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점은 향후 산업단지 개발이나 투자유치활동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투자유치활동이 지역의 다양한 협력 역량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체계적이지 못했고 투자유치 전문직원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도 부지가 마련되지 못한 근본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나. 교육 · 의료분야

교육분야는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국내 대학교육의 구제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20~30조의 막대한 사교육비 증가와 해외유학생 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유학수지 적자를 보이는 등 국내 교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최고의 국제적 교육벨트 조성 및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 최첨단 의료시설 조성을 목표로 주변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외국교육기관인 K-12, 외국대학 분교, 연구소 등 주변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한 민간의 교육시설 투자유치에 노력하였다.

교육 · 의료기관 투자유치 방향은 개발초기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기보다 우선

타 경제청의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명품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외국교육·의료기관 투자유치 시 업무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전문컨설팅 업체나 국내대학, 국내병원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교육·의료기관 투자유치 시 업무추진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인 현대제철과 연계해 특목고 설립으로 황해주변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교육시설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유수 외국교육기관(단과대, 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미국, 유럽대학을 집중 Target으로 설정하고 국내대학 연계 EU-ASIA University 유치[EU-ASIA University의 ECIU 대학원 (경영학, 물류학, 리더쉽과정 등)], 미국 주립대 및 사립대 유치[미국 주립대 : Califo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dino, Califonia State University Chico, Southern Utah University, Pinnsylvania State University, 미국 사립대 : Faireigh Dickinson University] 영·미계 등 Boarding School의 International Campus 유치[영국국제학교 : Harrow International School, Bromsgrove International School, 인도국제학교 : The International School Banagalore, Pathways World School]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해외 유수병원(건강검진센터, 부설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미국, 싱가폴 병원을 집중 Target으로 설정하고 국내 대학병원 등 전문병원과 연계한 외국계 전문 메디컬 센터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국내병원과 협진·원격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였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각종 지원제도가 타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아시아경제구역 경쟁국간 제도 비교 시 우리나라가 각종지원에서 불리한 상황을 보였었다.

【 아시아경제구역 경쟁국간 제도 비교 】

구 분	싱가포르	중국	두바이	한국
과실송금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영리학교 법인설립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세 금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부과
기타혜택	■ 부지 무상제공 ■ 연구비 50% 지원 ■ 정부가 비용차입 보증 등 행정적 편의제공	■ 부지 무상제공 ■ 건설비용 제공 ■ 민간기업과의 합작설립 허용	■ 부지 무상제공 ■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영	■ 지자체가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 설립비용 부분지원 가능
성 과	■ 스탠퍼드, MIT, 존스 홉킨스 등 35개 대학 유치	■ 스탠퍼드, 노팅엄 등 100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 · 교류	■ 미시간, 호주공대 등 20개 대학 유치 ■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입 ('07년 1만명)	■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 분교 설립

또한 경자법에 초기투자비율과 자본금의 규모 등 설립요건만 있을 뿐 외국의료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도미비로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 국가별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 및 도입비율 현황 】

구 분	미 국	싱가폴	독 일	프랑스	한 국
영리법인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
영리법인 도입비율(%)	12	0	14	19	0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 의료기관의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 내 국공유지가 없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므로 구체적인 교육 · 의료기관 부지 확보방안 부재도 투자유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초기 투자비용 】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 국제학교 설립 : 800억원(부지, 건축비) (2만평, 2,000명 이내) ■ 인천송도 국제학교 : 1,500억원(추정) (2만평, 2,100명)	■ 외촉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의 초기 투자비율 50/100 ■ 경자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의 자본금 규모 50억원 이상

앞으로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 완화 및 잉여금의 송금허용 등 경제선진국 수준에 맞는 전폭적 규제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용한 영리목적의 외국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규정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여건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다. 호텔 · 골프장 등 서비스 분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의 공업지대로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숙박, 여가, 상업 등의 시설로 구분하여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체인의 숙박시설과 골프장, 그리고 상업시설을 유치목표로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에 각각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계획하였고, 골프장은 인주지구 체육시설 용지에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숙박시설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숙박시설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숙박시설 유치의 경우 체인호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 재무적 투자자와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동시에 투자유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투자기업, 연기금, 펀드 등의 일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호텔 운영전문 기업을 유치하였다.

〈 숙박시설 유치 실적 〉

구분	사업자	투자국	사업내용	일자	투자규모 (백만불)	수요면적 (천㎡/천평)
MOU	앰배서더 호텔	한국	비즈니스 호텔	'09.08.13.	20	6.6 (2.0)
	코업피엠씨	한국,미국	레지던스 호텔	'10.01.18.	180	13.2(4.0)
	(주)H.T.C	한국	호 텔 업	'11. 7. 4.	20	5 (1.5)
	라마다동탄(주)	한국	호 텔 업	'13.05.21	30	1.6(0.5)
	㈜애플트리호텔	한국	호 텔 업	'13.05.21	12	3.3(1)

골프장의 경우 기업 정주공간 내 여가 기능을 도입하고자 투자유치를 실시하였다. 골프장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소개하였으며, 그 결과 홍콩자본의 재무적 투자자와 국내 골프장 운영업체와의 JV형태의 투자유치를 추진(65만평 토지매입과 시설 투자에 대한 LOI 접수)하였다. 그러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 용지 계획을 취소시키게 되어 LOI를 MOU 단계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용지의 급작스런 계획 취소로 인해 호텔 투자유치 역시 난항을 겪게 되었다.

〈 레져 휴양시설 실적 〉

구분	사업자	투자국	사업내용	일자	투자규모 (백만불)	수요면적 (천㎡/천평)
LOI	가림그룹	중국	관광레져시설	'09. 6. 9.	80	33.0(10)

상업시설의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인근 경기남부의 잠재 수요까지 감안하여 대규모 아울렛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송악지구는 충남지역에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서북부 지역으로서, 동시에 송악IC 인근이라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해외 아울렛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아울렛 형태의 상업시설 투자유치를 추진하였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재무적 투자자는 국내의 대형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하였으며, 전략적 투자자는 국내외 박람회와 국내 진출 해외기업 등을 대상으로 동시에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송악지구 아울렛 상업시설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이 축소된 이유, 투자유치 된 대부분의 제조 기업이 국내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골프장과 같이 여가체육 시설이 없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호텔, 골프장 등 서비스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체인호텔과 골프장을 무리 없이 투자협약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어렵게 유치한 엠배서더호텔, 레지던스호텔, (주)애플트리호텔, 그리고 오픈소스 등의 업체에서 MOU 체결한 후 개발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사용 시점에 대한 계속적인 독촉과 예상 토지가격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MOU를 체결한 투자자가 타 경제자유구역이나 기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의 원인이었고 투자유치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라. 항만 · 물류분야

WTO 체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EU, NAFTA와 같은 지역간 경제블럭화는 이미 기업의 경영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생산 및 아웃소싱 체계를 확산시킴으로서 생산기지의 탈 국내화가 촉진되고 있는 추세로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항만산업의 발전에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한편 친수 복합레저공간, 도시와의 연계 발전의 모티브, 부가가치 활동의 창출지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로 항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분야로 항만 물류 분야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당시 물류팀은 전문직을 포함 4명(구조조정 후 3명)이 근무하면서 용역수행,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공격적인 해외 투자 마켓팅(특히 중국중심)에 돌입하여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전략적인 항만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우선 2009년 7. 15 ~ 12. 14일까지 6,5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물류산업 투자유치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해 물류환경 및 역량분석과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단지의 연계방안 및 물류비즈니스 기본모델 및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였다.용역결과를 토대로 1차로 항만물류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2차로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로 부여해 보완 · 작성하고, 3차로 중앙대 방희석교수(경제), 아주대 최시형 교수(물류경영), 동서대 서수환 교수(국제물류) 등 물류전문가 교수진들의 검토를 받아 황해청 항만물류 투자유치 기본계획과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용역결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입지여건과 투자환경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자원 · 에너지 · 자본 · 시장 등 글로벌 경제중심이 아시아로 이동, 중국-일본- ASEAN으로 연결되는 환 황해권은 물류의 요충지로 수도권 및 중부권의 내수시장과 직접 연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 산업적으로 집적화된 현대 · 기아, 쌍용자동차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SDI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중부권의 거점항만을 두고 있는 상태이었고, 당시 33선석 규모의 당진 · 평택항이 위치, 연간 5천8백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앞으로 2020년에는 74선석 규모로 증설될 계획으로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었다. 이와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 항만 · 물류 투자유치 추진전략으로 주요업종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내 · 외 물류기업 중 황해구역 내 투자유치 적합 기업들을 주요 타깃기업으로 설정 하여 현대, 기아,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생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차세대 첨단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클러스터 입지를 유도하고 이들 업체들과 물류업체가 매칭되는 전략안을 마련하였다.

항만물류 주요 투자활동으로 2008년도에는 영국기업 개별상담, 중국 상해, 싱가포르 2008년 평택항 설명회 참석과 해외 투자상담 및 IR 추진 실적(2회), 6개업체 개별상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중국(산동성) 해외 투자상담 및 중국(상해, 북경, 천진) 공동 IR 추진과 해외 투자상담 및 IR 추진 실적(2회) 및 중국 20개업체와 투자유치 상담을 추진했으며, 2010년도는 중국(청도, 일조) 해외 투자상담 및 대만 공동 로드쇼 참가(2회 및 해외 투자상담 및 IR 추진 실적(2회)과 대만 17개업체, 중국 5개 업체에 투자유치 상담을 벌였다.

〈 YESFEZ LOI, MOU 실적 〉

(기준 : 2010. 5)

회사명	일 자	금 액	내 용	회사 개요
G1사	LOI접수('09.6.9) 신용조사의뢰 ('09. 9.28) 신용분석결과 ('09.12.23)	8,000만$	물류 및 관광분야	○ 대 표 : 장수규(張樹奎) ○ 설 립 : 1992 ○ 소재지 : 중국 산동성 ○ 계열사(5개) – 중공업, 관건(밴드), 건설, 무역, 조선
G2사	LOI접수('09.7.7) 신용조사 의뢰 ('09. 9.28) 신용분석 결과 ('09.10.30)	8,800만$	글로벌 홈패션 물류 유통단지 프로젝트 – 부지 : 33천㎡ – 건축 : 66천㎡	○ 대 표 : 김용완 ○ 설 립 : 1997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운영사업 – 수입가구(미국) 전문업체 ○ 운영매장 : 99개소 – 직영14, 대리점10, 지방취급점 75
W사	LOI접수('10.3.8) 신용조사 의뢰 ('10. 3.11)	1,000만$	물류센터	○ 대 표 : 왕명도 ○ 설 립 : 1993 ○ 소재지 : 중국 ○ 운영사업 – 국제물류, 창고, 운송, 선사대리점, 국제택배
C사	MOU체결('09.11.11) 신용조사 의뢰 ('09.10.26) 신용분석 결과 ('10.1.15)	3,000만$	유통센터	○ 대 표 : Tony Chae ○ 설 립 : 1996 ○ 소재지 : 미국 필라델피아 ○ 운영사업 – 농 · 축산물, 냉동식품 유통업체

또한 '08. 7월 개청 이후 지금까지 공동IR, 개별상담, 각종회의 등에 참석한 국내 · 외 투자기업 중 접촉해온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및 서한문 발송을 통한 접촉 및 향후 방문 및 초청면담 추진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주요

인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및 투자인센티브 등 지속적인 설명으로 투자유치 기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항만물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4월 8일 경제자유구역청 10층 회의실에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13개 항만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대만지역 공동 IR 실시와 국내외 투자유치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억원 규모의 코트라 외자유치 프로젝트상품화 지원사업을 신청해 추진하였다.

투자유치과정상 장애요인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항 대비 대형선박의 항로와 물동량 부족, 포항·광양에 비해 관련 산업의 집중화가 취약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유관업체의 투자 및 물동량 부족으로, 사업구역과 토지분양가 및 입주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투자업체로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투자유치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총투자유입액 중 추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고, 대한민국도 50%가 추가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결정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잠재투자자 방문 준비 및 사후관리 활동과 투자결정 후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 IT·융합분야

IT융합 부문의 투자유치는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의 밸류체인상에 있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업의 필요성 제기에 의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센터 유치 및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집중 검토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 및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전 공정에 소요되는 장비, 검사기기 전문제조기업을 비롯하여 디스플레이, LED 생산에 필요한 필름, 차세대 PCB, MOCVD, 서셉터, 리퀴드크리스탈, 봉지제, 리드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기업이 입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구매부서, 해외법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 일본, 미주, 유럽지역의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투자 가능 기업을 발굴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전력용 반도체 제조사인 SEMIKRON, IT공조기 전문회사인 RITTAL 첨단탄소소재 제조회사인 SGL과 진공단열제 제조회사인 va-Q-tec, 오스트리아의 Flexible PCB 회사인 AT&S사 및 일본의 히타치, 시네츠, SK일렉트로닉스, SECO 서진캠 등이 입주조건, 입주가능 시기 등을 문의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인 대경에너텍, 독일의 FINSTERWALDER, 대만의 LED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대부분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들로서, 이들이 입주가 이루어졌다면 향후 타 지구의 개발 및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원하는 시기에 부지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자, 각각 인천경제자유구역 또는 중국으로 입지를 선택하여 투자하였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센터유치 및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문제도 개발사업의 지연 및 해체에 가까웠던 투자유치본부의 축소 및 구조 조정으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개발사업 시행사가 지정되어 있었던 송악지구를 분할하여 단계적 개발로 전환하거나, 인주지구 일부라도 공공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조기개발지역에 이들 기업들을 유치했다면, 잔여지구의 개발 사업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제3장 민원행정 분야

1. 민원사무 인수

2008년 7월 22일 개청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충남지구 3개 시·군(아산시, 서산시, 당진군)으로부터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건축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민원사무 중 진행 중인 미결사무 1,063건을 인수 받았었다.

【 3개 시·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진행 중인 민원 】

분야 / 시·군	계	건축	환경	농업	산림
계	1,063	763	250	15	35
아 산 시	186	48	126	5	7
서 산 시	29	7	21	–	1
당 진 군	848	708	103	10	27

2. 민원사무 처리 행정시스템 구축

가. 행정전산망 구축

민원사무 인수와 함께 건축, 지적, 산림 등 각 분야 민원처리를 위하여 3개 시·군의 행정전산망 서버에 우리청의 단말기를 접속시켜 민원서류 접수 시 신속처리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민원사무처리 세칙제정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단순민원 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가 동시에 관계된 복합민원도 민원인 및 담당공무원 모두 사전에 예측 가능한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0월 20일 민원사무처리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다. 민원사무편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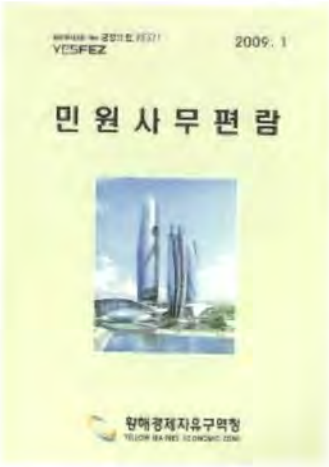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 · 허가 등 8개 분야 48종 민원사무 절차에 대하여 접수부터 처리 완료시 까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2009년 1월에 200부 제작 · 발간하여 관할구역 내 3개 시 · 군 3개 면 등 38개 기관에 배부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편람에는 민원사무 설명, 처리부서, 업무 흐름도, 신청서식,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등을 업무 소관별로 상세하게 수록하여 관련법령을 찾아보지 않고도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민원이송처리제 및 문자통보제 시행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 당진시에 위치하여 민원접수를 위해 아산, 서산 등 먼거리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개 시·군의 3개 면사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사무 접수창구」를 2008년 9월 26일부터 개설하여 민원인이 번거롭게 황해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 내 설치된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기관의 경우 민원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사송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송토록 하였다. 아울러 모든 민원사무가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시 그 결과를 즉시 핸드폰 문자를 이용하여 통보하는 「민원문자통보제」를 함께 운영 하였다.

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행정의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보다 단축하여 처리할 경우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선정·표창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2009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3명, 2012년 3명, 4년간 총 9명에게 표창을 주었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 】

년 도	민원 처리기간 단축				단축율 (%)	공무원 표 창
	민원접수	법령처리일	실 제 처리일수	단축일수		
계	2,101	14,851	6,739	8,112	53.9	9
2009년	844	6,575	3,050	3,525	53.6	1
2010년	416	3,395	1,443	1,952	57.5	2
2011년	543	3,440	1,566	1,874	54.5	3
2012년	227	1,127	521	606	53.8	3
2013년	71	314	159	155	50.0	

바.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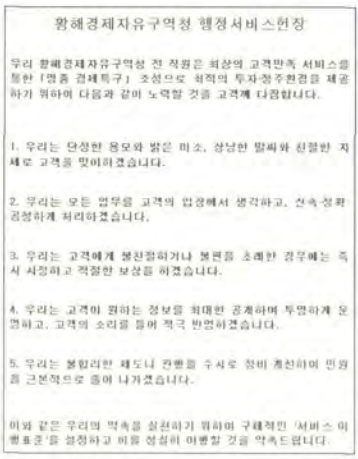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통한 「명품 경제특구」 조성으로 적극적 투자·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께 다짐합니다.

1. 우리는 단정한 용모와 밝은 미소, 상냥한 말씨와 친절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2. 우리는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우리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4.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고객의 소리를 듣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 우리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개선하여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2009년 5월 제정하여 홈페이지와 언론에 홍보하여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헌장의 중점 추진 과제는 ◆친절한 자세로 고객 맞이하기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고객의 소리 적극 반영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 조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 정비·개선하는 것 등 이다.

사. 지구내 읍·면장 간담회 개최



2008년 8월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군 담당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에 건의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물 등 주민생활 편의 시설 지원기준 등 「행위제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시·군, 읍·면에 통보 하였다.

아. 민원처리기관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



각종 민원사무 처리기관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의 종류 및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 홍보 팜플릿을 제작하여 구역 내 편입 토지소유자 및 유관기관, 각종 사업소 등 24,000곳에 우편을 발송 하였다.

3. 민원 행정 추진 실적

가. 추진 실적 개요

2008년 7월 22일 개청 후 2014년 8월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까지 접수된 민원이 1,839건 이었으며 송악지구 1,192건, 인주지구 570건, 지곡지구 77건에 대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민원 처리 실적 】

(단위 : 건)

년도 / 지구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839	136	602	320	463	228	62	28
송악지구	1,192	50	445	159	264	205	42	27
인주지구	570	75	139	135	177	23	20	1
지곡지구	77	11	18	26	22	–	–	–

※ 지곡지구 2011년 12월 8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나. 업무별 민원 처리 실적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충남지구는 총 1,8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업무별로는 건축 167건, 지적 1,179건, 환경 182건, 농지·산지 등 155건, 기타 156건 이었다. 지적업무의 건수로 보아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와 매매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 등으로 2012년 까지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였으나, 2013년~2014년에는 개발행위 제한 및 지구해제 우려 등으로 민원업무 처리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 업무별 처리 실적 】

(단위 : 건)

업무별 / 년도	계	건축	지적	환경	농지	산지	공장	개발	기타
계	1,839	167	1,179	182	20	52	52	31	156
2008년	136	19	65	18	2	8	8	12	4
2009년	602	45	384	70	3	29	13	13	45
2010년	320	31	170	42	5	12	20	6	34
2011년	463	46	336	39	6	2	8		26
2012년	228	18	179	5	3				23
2013년	62	4	31	4	1		3		19
2014년	28	4	14	4		1			5

다. 지구별 민원 처리실적

총 1,839건의 지구별 민원처리 건수는 송악지구 1,192건, 인주지구 570건, 지곡지구 77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업무비율은 송악64%, 인주31%, 지곡4%로 송악지구가 가장 높은 민원율을 보였다.

【 지구별 업무 처리 실적 】

(단위 : 건)

년도, 지구별 / 업무별		계	건축	지적	환경	농지	산지	공장	개발	기타
계	송 악	1,192	94	837	69	19	47	11	12	103
	인 주	570	64	290	109	1	2	41	16	47
	지 곡	77	9	52	4		3		3	6
2008년	송 악	50	6	22	9	2	6		3	2
	인 주	75	13	37	8		1	8	7	1
	지 곡	11		6	1		1		2	1

년도, 지구별 \ 업무별		계	건축	지적	환경	농지	산지	공장	개발	기타
2009년	송 악	445	35	309	34	2	28	7	5	25
	인 주	139	7	64	36	1		6	7	18
	지 곡	18	3	11			1		1	2
2010년	송 악	159	14	87	13	5	12		4	24
	인 주	135	15	63	26			20	2	9
	지 곡	26	2	20	3					1
2011년	송 악	264	19	218	5	6		2		14
	인 주	177	23	103	34		1	6		10
	지 곡	22	4	15			1			2
2012년	송 악	205	13	166	4	3				19
	인 주	23	5	13	1					4
	지 곡	–	–	–	–	–	–	–	–	
2013년	송 악	42	4	21		1		2		14
	인 주	20		10	4			1		5
	지 곡	–	–	–	–	–	–	–	–	–
2014년	송 악	27	3	14	4		1			5
	인 주	1	1							
	지 곡	–	–	–	–	–	–	–	–	–

4. 민원 행정의 성과 및 한계

가. 민원 행정 성과

민원사무 처리 기관 변경에 따른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토지소유자 및 기관에 팜플렛 제작 배포하고, 직원의 민원응대 요령과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선의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08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민원 1,839건을 분석해보면 2012년 까지 1,749건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초기에는 개발기대 심리 등으로 지적업무 건수가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지구해제 우려 등으로 민원업무 처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민원 행정 한계

– 민원 행위 제한

2008년 지정당시 건축허가는 76건으로, 항공촬영 사진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미 착공한 30건에 대하여는 개인 및 국가의 재산상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행위제한 안내"공문을 2008년 12월에 발송하였다. 건축주들은 설계비 등 손해를 보게 되어 항의하였고, 향후 개발이 되면 설계비 등에 대하여 손해보상이 있을 거라고 설득하여 민원을 진정시켰었다. 지정 이후 행위제한(건축 · 농지 · 산지 · 환경) 위반으로 인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63건으로 이중 과태료는 2014. 7월 기준 364,614천원이 부과되었으며, 65,666천원(18%)이 납부 되었다.

【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고충 사례 】

「사례 1」

T사는 인천의 철강공장 이전부지로 활용하고자, 2007년 5월에 당진군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2007년 6월에 송악읍 부곡리에 26,734㎡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 5월 지정되어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약 70억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2008년 9월과 2009년 10월에 환지요구와 공장부지로 보상을 요구 하였고, 황해청에서는 환지불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 후, 2011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과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황해청에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2011년 9월에는 황해청에 공장부지 제척요구와 피해에 대하여 실비 및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황해청에서는 제척 불가와 관련법에 따라 보상 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014년 2월에는 사업시행자 선정시한 연장 반대와 피해 보상실사팀 구성 후 보상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황해청에서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미제출 시 자동 해제됨을 회신하였다. 해제 후에도 T사는 행위제한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2」

P사는 송악읍 부곡리에 총15동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2005년 12월에 당진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007년 8월 "당진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예정지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 통보"와 2008년 2월 "산지전용 복구이행 통지"를 당진군으로부터 받았다. 그 후, P사는 2011년 12월에 주택신축 조성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황해청에 요구하였으나, 황해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업목적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P사는 주택을 건립하지 못하여 약 6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라 지목변경은 불가하였다.

다. 민원 행정 한계 해소 제언

국가는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에 대하여 제한을 가했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고발 등으로 주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충을 주게 되었으며, 부동산가격은 개발기대심리로 천정부지로 올랐었고, 개발비용 과다로 사업자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주민피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향후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 등을 가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거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세금을 "(가칭)주민숙원사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제 시에도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제언한다.

제4장 조직 및 조합회의 운영

1. 조직운영

가. 경자구역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황해청은 행정·개발 기능과 투자유치기능의 병행 추진을 위한 적정인력(129명/종합조정 및 관리 인력 5급이상 29명)으로 출범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개청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및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산정하여 조직개편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늦어져 임의 구조 조정하여 운영하였다.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2012. 4. 27. ~ 2014. 9. 21.) 】

○ 기 구 : 2본부/ 5과, 1관/ 15팀
○ 정 원 : 87명(일반직 77명, 개방·계약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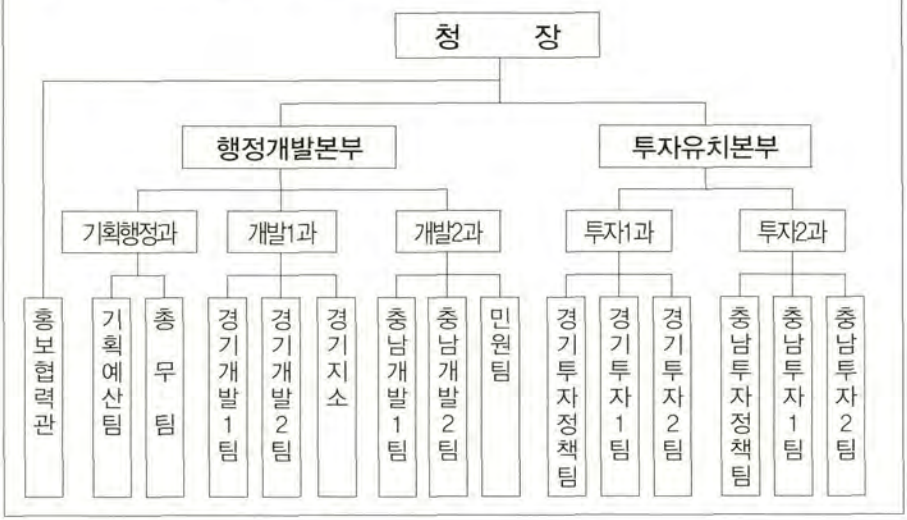

나. 안전행정부 정원 승인에 따른 조직개편

청은 개발기능과 투자유치기능의 추진을 위한 인력(129명)으로 출범하였으나 지구 축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자체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87명 △52) 승인요청 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정원 (65명 △64) 확정 통보(13.12.31)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 개청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도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양도의 정원협약시기에 맞추어 조직 및 정원을 개편하였다.

【 정원승인에 따른 조직도(2014. 9. 22. ~ 해산 시) 】

○ 기 구 : 2본부/ 5과, 1관/ 15팀
○ 정 원 : 65명(일반직 44 / 개방 · 계약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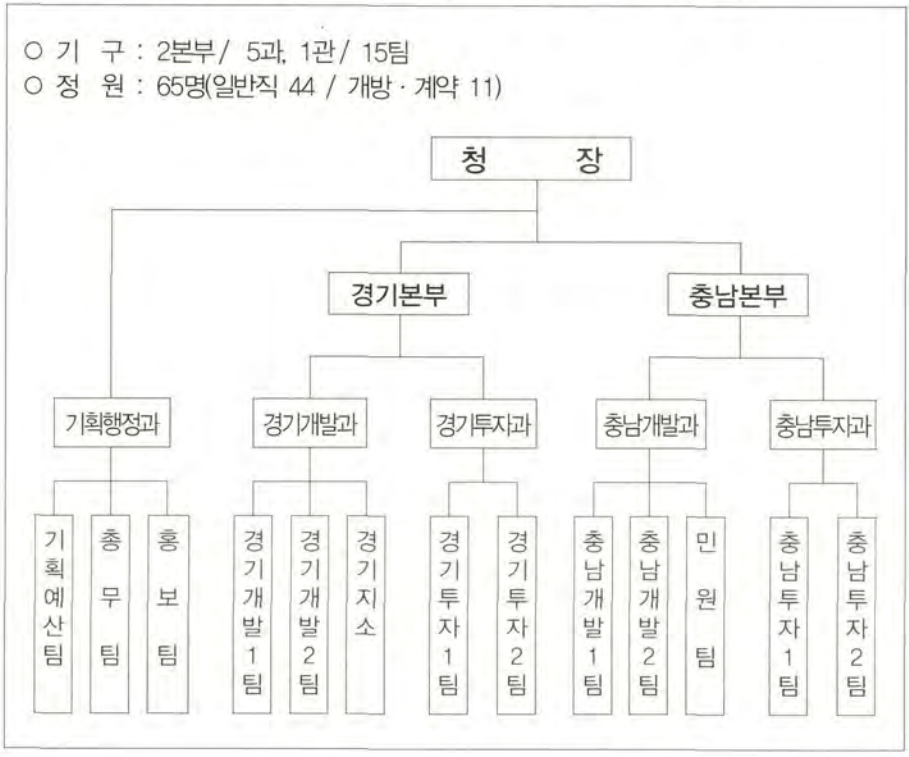

【 조직운영 추진연혁 】

일 자	내 용
2008. 7. 22.	○ 안행부 정원승인('08년, 129명) 범위내, 양도간 인력배분협약 – 3년 주기로 양 도 인력배분 재협약 '08년 행정개발본부장 : 충남 / 투자유치본부장(개방형) : 경기 '11년 행정개발본부장 : 경기 / 투자유치본부장(개방형) : 충남 '14년 행정개발본부장 : 충남 / 투자유치본부장(개방형) : 경기
2011. 8월~12월	○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 예측, 조직개편 검토
10월~12월	○ 사업량 감안, 조직운영방안 양 도 실무협의
12. 14.	○ 인력범위 산정을 위한 황해청 조직설계(안) 마련('11.12.14)
12. 27.	○ 양 도, 황해청 인력운영범위 확정 : 87명('11.12.27)
2012. 3. 7.	○ 황해청 기구정원 조정안, 양도 협의 통해 행안부에 승인요청('12.3.7)
4. 27.	○ 행안부 승인 지연에 따라 정원변동없이 기구축소개편('12.4.27)
7. 26.	○ 감사원, 황해청 92명 감축 등 경자청 정원조정 요구('12.7.26)
9. 13.	○ 경자청 기능 중점 기구정원조정안 양 도 제출 : 87명('12.9.13)
2013. 12월말	○ 안행부 정원 승인 ('13.12월말 승인) : 65명(경기 31, 충남 34)
2014. 9.12.	○ 안행부 정원승인에 따른 조직개편('14.9.12)

2. 재정운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충청남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여 반영하고, 2012년부터 당진시가 부담하고 있었던 임시청사 임차료를 충청남도에서 부담하여 운영하였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예산액	38,660,774	3,549,923	6,832,000	7,707,468	6,245,590	6,314,808	4,949,762	3,061,223
	집행액	21,318,851	2,692,009	5,037,815	5,046,053	2,883,487	2,583,609	2,165,010	910,868
예산액	보조금	18,520,838	391,343	1,372,000	2,707,468	2,745,590	4,482,356	4,217,310	2,604,771
	경기	9,709,290	1,579,290	2,730,000	2,500,000	1,750,000	800,000	250,000	100,000
	충남	10,430,646	1,579,290	2,730,000	2,500,000	1,750,000	1,032,452	482,452	356,452
집행액	경 기	10,966,138	1,407,441	2,845,175	2,550,719	1,461,190	1,136,848	1,038,491	526,274
	충 남	10,352,713	1,284,568	2,192,640	2,495,334	1,422,297	1,446,761	1,126,519	384,594

※ 보조금 :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전년도잉여금(14년 집행액은 6월 기준)

3. 조합회의 운영

가. 운영조합회의 임무 및 역할

조합회의의 주요임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규약 제8조(의결사항)에 따라 조합규약의 개정안,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조합규약의 개정절차는 양 道(경기도·충남도) 지휘부로 개정사항 사전 보고(필요시 관련 중앙부서 사전협의)를 하고 조합회의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양道에 조합규약 개정을 요구하면, 양 道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후 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양 도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였다.

【 조합규약의 기본구성 】

분 야	주 요 내 용
조합의 구성	○ 설립목적, 조합명칭, 조합의 구성원 ○ 조합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	○ 국가 위임사무, 지자체 위임 · 위탁 사무
조합관련 기구 (조합회의)	○ 조합회의 구성 · 운영, 위원의 임기, 선출방법 등 ○ 조합회의 심의 · 의결사항 ○ 조합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 조합회의 의결사항, 조합회의 개최방법 등
조합의 집행기관	○ 조합장 선임방법, 임기, 권한 등 ○ 사무기구, 직원 구성에 관한 규정
재무관련 사항	○ 조합운영의 경비부담 방법, 부담률 ○ 조합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와 방법 ○ 조합 세입 · 세출예산의 결산 ○ 조합 재산관리(재무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해산	○ 조합의 존속기간, 해산절차 및 방법 등
부 칙	○ 조합 규약의 시행시기 등

한편 조합회의는 규약 개정 외에도 조합 규정의 제 · 개정을 심의 · 의결함으로써 조합의 집행기관인 황해경제자유구청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1조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정기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황해경제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조합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황해청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심층적인 질의·답변을 통해 황해청의 주요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촘촘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적 기능과 정책제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조합회의 구성 및 변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구성은 조합규약 제6조에 따라 구성되었다. 경기도 및 충청남도의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실·국장 각 2명과 양 도의회 추천 도의원 각 2명,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5명, 경기도지사 추천 3명 및 충청남도 도지사 추천 2명(경제분야 전문가가 각 1명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지식경제부 추천 1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양 도·양 도의회·지식경제부의 추천 위원은 위촉직이며, 나머지 위원은 당연직이었다. 위촉직 조합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였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였다.

초대 의장 및 부의장은 2008년도 7월 1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1회 임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선출방법은 임시회의에 참석한 조합위원 중 최고 연장자인 이기철 위원(충청남도 도의원)이 임시회의 의장직을 맡았고, 이상욱 위원(서산시 부시장)의 추천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위원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초대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조합회의 규약 제7조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이기철 위원의 추천으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인 전진규 위원이 선출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양 도에서 윤번제로 그 직을 수행하며 의장의 임무는 조합회의를 대표하여 조합회의를 관장하였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의장 및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조합회의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은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여부는 다수결에 따랐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장과 청장은 같은 도에서 선임된 의원 및 공무원이 동시에 겸임할 수 없었다.

【 2014. 10. 6 기준 조합위원 현황 】

소 속	성 명	비 고	소 속	성 명	비 고
충남도의원	이기철	위촉직	평택 부시장	서강호	당연직
경기도의원	고인정	위촉직	경기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당연직
경기도의원	염동식	위촉직	충남 경제통상실장	이필영	당연직
평택대 교수	윤혜정	위촉직	충남 건설교통항만국장	이현우	당연직
경인발전연구원	노춘희	위촉직	아산시 부시장	강익재	당연직
선문대교수	김재원	위촉직	경자단 개발지원1팀장	홍진동	당연직
공주대 교수	최호규	위촉직	당진시 부시장	조이현	당연직
			경기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당연직

다. 조합회의 운영현황

1) 조합회의 회기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였다.

2) 조합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다만, 의결사항이 조합규약 개정사항일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조합회의가 심의·의결 할 안건이 조합원 중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에 관계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이외 안건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며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3) 조합회의 개회 및 의사일정

조합회의 규정 제8조 및 제 9조에 따라 조합회의 개회는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 시를 정하고 의장은 개회 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개회일 7일 전까지 배부하였다.

【 의안처리 흐름 】

① 개 회 식 (폐 식)
- ○ 사회자 : 기획행정과장
  -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의장 인사말씀) ⇒폐식

② 개 의 선 포

③ 의사보고
- ○ 보고자 : 기획행정과장
  - 안건제출현황 및 심사현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청장인사말씀

⑤ 의사일정 상정

⑥ 제안설명
- ○ 제안설명자 : 청장(의장 동의로 본부장 대리설명)

⑦ 질의 · 답변

보고(설명)안건	의결안건
○ 안건상정 ○ 보고(설명) ○ 질의 · 답변 ○ 질의종결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질의 · 답변 ○ 의결

⑧ 토 론(찬 · 반)

⑨ 표결 및 의결
- ○ 심사가 종료되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⑩ 산 회 선 포
-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함

4) 조합회의 운영현황

조합회의는 총 30회 개최하였으며, 정기회 4번과 임시회 26회를 개최하였고 국외 선진국 경제특구를 선진지 견학하였으며, 2008년 7월 18일 제1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9월 22일 제30회 "조합해산"으로 막을 내렸다. 조합회의 진행은 참석위원 수가 부족하여 개의 지연과 정족수 부족으로 운영 상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문가나 실국장의 참석률이 저조하였으며, 전문가는 대부분 교수진으로 학기 중에는 참석이 어려웠었고, 실국장은 당면 현안업무 처리와 관심부족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하였다.

참석률을 높이고자 조합회의 개최일정을 조기통보(3주 전)하였고, 참석률이 저조한 전문가 위원은 사임유도 후 참석이 용이한 인근지역의 전문가를 재위촉하였다. 또한 서면의결 제도 도입 및 개의 정족수 완화와 실국장은 소속 공무원 대리출석을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조합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 조합회의 사진 】



집행부 보고



조합회의 진행

【 조합회의 운영 현황 】

회 기 명	일 자	주 요 안 건
제1회 임시회	2008. 7. 18.	·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및 업무보고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규정 제정안
제2회 임시회	9. 26.	· 2009년 세입 세출 예산안 · 관용차량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청보 발행규정 일부 개정안 · 행정기구설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제3회 임시회	10. 27.	·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관한 건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
제4회 정기회	12. 23.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 ·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 심의 · 의결에 관한 건 · 포상규정 제정안 심의 · 의결에 관한 건
제5회 임시회	2009 2. 6.	·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 2009년도 연간회기운영안
제6회 임시회	3. 31.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행정기구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회 임시회	5. 28.	· 결산결과 검사보고 및 승인 규정안 등 일반의안 처리 ※국외벤치마킹의 건 협의
국외활동	6.10.~20.	· 선진국 경제특구지역
제8회 임시회	7. 22.	· 2009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및 규정 안 등 일반의안 처리
제9회 임시회	9. 29.	· '1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한 건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잠정)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규정안 등 일반의안 처리

회기명	일 자	주요 안건
제10회 임시회	10.26.~27.	· 행정사무감사 및 규정안 등 일반의안 처리
제11회 정기회	12. 22.	·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 규정안 등 일반의안 처리
제12회 임시회	2010 6. 29.	· 관용차량 관리규정 및 일부개정 규정안 등 5건
제13회 임시회	8. 31.	· 의장 · 부의장 선출의 건 · 2010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
제14회 정기회	9. 29.	·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15회 임시회	12. 22.	·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제16회 임시회	2011 3. 30.	·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제17회 임시회	4. 27.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18회 임시회	7. 20.	· 정원관련 규정 개정안 · 201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19회 정기회	9. 27.	·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안 심의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의
제20회 임시회	12. 23.	·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의 ·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1회 임시회	2012 4. 27.	· 조합회의 의장 보궐 선출 ·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 주요 현안사항 보고
제22회 임시회	7. 20.	· 201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회 기 명	일 자	주 요 안 건
제23회 임시회	9. 19.	· 제3대 조합회의 의장 · 부의장 선출 ·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안) 및 규정 제 · 개정(안)심의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4회 임시회	12. 21.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심의 · 2013년도 세입 · 세출예산 확정 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5회 임시회	2013 4. 25.	·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안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심의 · 지구별 추진상황 보고
제26회 임시회	7. 25.	·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지구별 추진상황 보고
제27회 임시회	9. 26.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8회 임시회	12. 24.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제29회 임시회	2014 4. 29.	·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지구별 추진상황 보고
제30회 임시회	9.22.	· 2013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조합해산(안)

제5장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1. 대내외 협력(개발분야)

가. 충청남도와 협력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분야별 사업설정과 개발을 구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충청남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은 그 어느 기관·단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다. 주요 현안사항에 직면하는 즉시 청장은 도지사를 방문해 설명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도 수시로 충남도를 방문해 현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충남지구의 사업자선정, 개발계획 변경 및 해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 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보고는 물론 의원들이 궁금해 하거나 의문을 갖는 현안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고, 도의회 회기 시 주요간부가 배석하여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등 대응에 최선을 다 하였다.

아울러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요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지역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제에 임박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현황과 마을별 건의사항을 꼼꼼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협력을 구하는 연석회의와 개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와 협력

경제자유구역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정보교환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간 업무보고, 동향보고 사항 등 주요 업무보고를 공유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조체계와 기반구축을 다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자체, 충남도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하였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수시로 현안사항 개선 및 건의를 요청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등 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을 선점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관심사 및 협력방안과 공동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08년 10월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창립회의를 가진 이래 2014년 6월 2일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순회하며 12번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는 매년 2회씩 경제자유구역청을 순차적으로 정해 개최하면서 사업지역 현장시찰 및 제도개선, 규제개혁 방안 협의는 물론 각 경자청의 수범사례를 청취하는 등 상호교류 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실무과장 · 팀장 · 실무자 등 경자청 별로 3명씩 참여시켜 경제자유구역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12회 청장협의회까지 총 122건의 제도 및 규제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이 중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330만㎡ 이상이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계적 개발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전면위임 ▲경제자유구역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연장 등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이 어려운 규정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많은 부분은 사업추진 시 반영시켜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하겠다.

2. 대내외 협력(투자유치분야)

가. 충남대 제2병원 유치관련

충남대병원은 2011년 3월 제2병원 설립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이전 가능여부를 의뢰해 왔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송악지구에 15,000여평을 조성원가(130만원/평)로 제공하고 2013년중 착공토록 충남대병원에 회신하였으며, 충남대병원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송악지구의 지리적 강점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특례 사항 및 국내의료기관 설립 후 협력외국의료기관 발굴 지원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수차례의 면담 후 2011년 7월 서울에서 충남대학교병원 등 8개 입주희망 기업과의 공동 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충남대병원에서는 조속한 제2병원 설립을 위해 송악지구 외에도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서산테크노벨리 등에 관심을 갖고 부지를 물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지원을 위한 타당성 심사를 위해 교과부와 유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예비타당성 심사 등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충남도로부터 충남대 제2병원 건립에 따른 지원협약서를 전달했다.

2011년 12월 예비타당성 심사가 보류되고, 2012년 6월 충남대 제2병원 건립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한 실무 T/F팀을 2012년 5월에 황해청 · 충남대병원 · 당진시 기업지원과 · 보건소 등 4개기관 8명으로 구성하였다. 5월 24일 T/F팀은 국회 및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황해청장 · 당진시장은 교과부 제1 · 2차관의 면담일정의 약속을 받아냈다. 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실무자들이 6월에는 충남대병원을, 7월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송악지구 현장을 방문했지만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건립계획을 주장하여 송악지구에 건립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2012년 9월 송악주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당진시의원은 충남대 제2병원 건립계획 변경을 중앙부처를 방문해 여러번 건의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 2012년 9월 송악주민들은 충남대총장과 면담하였으나, 충남대에서는 송악지구와 세종시의 발전 속도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병원존립 및 세종시 입주조건 등으로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고, 반면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한 반박 및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를 2차 방문하여 세종시보다 송악지구에 충남대병원 유치 정당성을 주장했었으나 관계부처에서는 충남대병원의 선택 결정권을 주어 결국 충남도와 황해청 및 당진시 관계기관이 입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충남대 제2병원의 송악지구 유치는 개발사업자 및 외투기업 및 국내잠재투자기업의 정주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당진 · 아산 · 서산 · 예산 등에서 열악한 의료혜택을 받는 주민들

에게도 꼭 필요했음에도 충남대병원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최종 둥지를 틀고 말았다.

나.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활동

황해청은 투자유치활동과 투자 관련주요사항을 자문받기 위해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한 15명의 투자유치 정책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해왔다.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정보 자문 및 공유,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대내외 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 황해청의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관련 주요사항 자문,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자 발굴관련, 외국인 투자가·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자문 및 각종 정보제공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이었다. 자문활동은 황해청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소집과 개별자문을 통해 투자유치 방향 및 전략 또는 산업분야별 투자동향을 수집하였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투자유치실무와 개발사업에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유관기관 전문가 그리고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 2014투자유치자문위원회 현황 〉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자문분야
김연식 (신규)	Kotra 투자유치실	· Kotra 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 컨 설 팅
설광일 (신규)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국제협력팀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국제협력팀장	투자유치 컨 설 팅
박기철 (신규)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 한중교육문화 연구소 소장	투자유치 컨 설 팅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자문분야
박경철 (신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대 졸업 ·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 시흥, 파주, 의왕시 자문의원 활동	물 류
이상훈 (신규)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시시피주립대(미) 농경제학 박사 ·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물 류
황재규 (연임)	루츠알레 고문	·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장 · 컬설팅업체 「루츠알레」 고문	투자유치 컨 설 팅
권상세 (연임)	디스플레이뱅크 (대표이사)	· 삼성전자 입사 · 국가R&D 예산 심사위원(기획재정부) · 한국 부품소재 투자기관 협의회 자문위원	IT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김평중 (연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연구조사본부장)	· 고려대 졸업 · 한국화학산업기술연구조합 사무국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보조사 위원회 위원	화학 · 바이오
유영렬 (연임)	Kotra외국기업고충처리팀(전문위원)	· 한국외국어대 졸업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 대전시 투자유치자문위원	투자유치 컨 설 팅
김형걸 (연임)	Goodwill Advisory (대표)	· 미 펜실베니아대 졸업 · IFEZ 법률팀장 · 법무법인 로고스 자문역	투자유치 컨 설 팅
정찬황 (연임)	자동차부품연구원 (정책기획실장)	· 영남대, 호서대 졸업 · 미래형 자동차사업단 과장 ·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단 실장	자동차
김 경 (연임)	CynergyCorporation (한국법인 사장)	· 연세대 졸업 · 라이나생명 한국지사 본부장 · (주)아이리치코리아 대표	의 료
최승용 (연임)	삼정 KPMG 관광지개발부문(이사)	· 고려대, 경기대 졸업 · (주)대우개발 프로젝트 팀장 · 충정회계법인 본부장	서비스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활동내역으로는 2010년 IKP서울사무소에서 「국제교육단지 조성전략 연구용역」 자문을 실시하여 Goodwill Advisory 대표 김형걸

위원은 교육수요를 입학동기, 비용편의, 학비수준, 학교수준, 학교강점 등으로 세분화하고 분석하여 교육시장 수요조사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미교육위원회 이종열 대표는 교육시장의 잠재수요 분석을 위해 공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외국인 수요에 맞는 시스템을 고집하면 해외대학 유치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과정의 성공요인을 탐색 국내시장과 해외시스템과의 전략적 포지셔닝 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한 바 있는 김형걸, 김춘선위원은 소규모 개발(1만평, 20층 정도)로 시범적 소규모(테크노파크 등) 건물을 건립해서, 국내기업을 先 입주시키면 외투기업도 들어올 가능성 여부와, 경기 부진으로 PF가 어려우므로 개발방식을 다양한 금융조달 방법을 강구해서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실입주자에게 임대방식으로 주어, 순차적으로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개발 초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앵커기업(삼성, LG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며, FDI의 70%는 신규투자가 아니라 증액(추가)투자이므로 증액투자에 비중을 갖고 유치활동의 전개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개발 및 투자유치분야를 자문하여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KOTRA 유영렬 위원은 지식산업(첨단, R&D산업 등) 건물을 구입해 임대, 입주시키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모색, 신규투자가 증액(추가) 투자보다 5배 정도 어려우므로, 이미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과 자주 접촉해서 증액투자에 비중을 갖고 유치활동 전개 투자유치 유관기관(Kotra 등)의 노하우를 전문위원을 통해 교육할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였다. 홍태의 위원은 정주환경 (교육 · 의료) 개선과 병행해서 투자유치 활동 및 중앙부처와 「실무교류회 구성」 재원확보(국비)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던 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2011년 송악 · 인주지구의 면적 축소 및 지곡지구의 지구지정 해제 계기로 유명무실해져 위원회 소집 및 자문에 대한 실적이 전무했다. 투자유치전문위원회의 역할은 투자유치자문 이외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투업체 및 국내업체,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교류 ·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끌어내기 위함임에도 우리는 그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

다. 투자유치매니저 활동

황해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와 관련된 자문, 잠재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홍보활동, 투자관련 동향 및 주요정보 제공, 투자 상담을 통한 투자실현, 중국 ·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기업의 외자유치 활동 시 통역 및 현지가이드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고자 투자유치 매니저를 두었다.

〈 투자유치매니저 내역 〉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및 학력	비 고
취 환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 중국 랑방시 주한대표부 대표 – 북경용경협여유발전유한공사 부사장 – 하얼빈시 사회과학원 객원연구원	'11.11.23 ~'13.11.22
류한원	㈜알바트로스 대표이사	– (주)알바트로스플러스 대표이사 – (사)대한익스트림스포츠협회 회장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교수	'11.7.22 ~'13.7.21
차혁진	㈜휴넷플러스 대표이사	– 스탠포드대 화학공학 박사 – (주)타코마테크놀러지 기술 및 사업화 총괄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	'11.9.22 ~'13.9.21
김용진	Techvil Research Limited 대표	– 동경외국어대 졸업 – 일본전문가협회 대표이사 – (사)한국능률협회 자문위원	'11.9.22 ~'13.9.21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및 학력	비 고
이영주	중국정경문화 연구원 이사장	- 중국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 포항제철 중국본부 수석대표 - 쌍방울 중국현지법인 대표	'12.11.23 ~'14.11.22
김량우	CJ대한통운 부장	- 동의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부익스프레스차장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	'13.7.19 ~'15.7.18

투자유치매니저의 활동은 해외 IR활동 시 현지 가이드, 현지통역, 외국투자자들 방문 시 황해청 유치전략 및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0년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일본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신일본전력社 노자키 · 마사아키(野崎雅明)와 협약식을 가졌고, 미국대학 유치관련으로 채용된 한미교육위원회 이종렬 대표는 뉴욕주립대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설립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매뉴얼을 제작해 신청서를 전달했다. 아시아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미주 K-12(미국외국교육기관) 유치관련 투자유치 매니저로 채용되어 현지 IR활동 및 대원외고 유치활동을 하였고, 인도닷컴의 김태균 실장은 인도 외국인학교 유치관련 투자유치매니저로 채용되어 인도현지에서 황해청의 여건 및 교육투자정책에 대해 인도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유지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듯 투자유치매니저는 전문분야에서 투자유치 전략을 위해 채용되었지만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통역이나 가이드의 역할 수행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그들의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 못한 점과 투자유치매니저를 리드하여 전반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지도할 관리자의 부족으로 활발한 활동을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투자유치매니저 활동내역 〉

매니저	주요내용	운영일자
취환	· YESFEZ 투자설명회 및 기업방문 –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중국현지가이드 및 통역지원	2012. 5. 22. ~ 5. 25.
취환	·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에 관심있는 중국기업의 포승지구 방문 – 중국방문단 가이드 및 통역지원	2012. 6. 29.
김용진	· 일본동경지역 IR : 개별기업 방문 상담 추진	2011. 11. 15 ~ 11. 18.
이종열	· 교육, 의료 유치관련(서울)	2010. 1. 13.
	· 미국 주립대 유치관련(서울)	2010. 5. 11.
	· 미국 주립대 유치관련(서울)	2010. 6. 11.
	· CSUSB 분교설립 사업계획 협의(서울)	2010. 8. 5.
	· 미국 주립대 유치관련(서울)	2010. 8. 31.
	· SUNY Fredonia 大 총장 일행 황해청 방문	2010. 9. 8.
	· '11년 투자매니저 운영관련(서울)	2010. 11. 23.
김영수	· 교육, 의료 유치관련(서울)	2010. 1. 3.
	· 캐나다 교육청 관련(서울)	2010. 2. 23.
	· 캐나다 공립학교 유치 관련(서울)	2010. 6. 17.
	· 캐나다 공립학교 유치 관련(서울)	2010. 7. 13.
	· 캐나다 공립학교 유치 관련(서울)	2010. 7. 30.
	· 캐나다 공립학교 유치정보 제공으로 K-12 유치를 위한 해외 IR 활동	2010. 9. 6. ~ 9.11.
	· 대원외고 유치 관련(서울)	2010. 11. 9.
	· '11년 투자매니저 운영관련(서울)	2010. 11. 23.
김태균	· '11년 투자매니저 운영관련(서울)	2010. 11. 23.
이종렬	· 캘리포니아 주립대 분교 유치상담	2009. 8. 28.
	· 외국대학 유치전략 PPT 및 지원제도 설명	2012. 9. 25.
	·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장 우리청 방문 외국대학 유치 전략 PPT 청취	2012. 10. 7.

매니저	주요내용	운영일자
	· 외국대학 유치 해외 IR활동	2009. 11. 8. ~ 11. 15.
김영수	· 최초접촉 및 국제학교 설립 유치 상담	2009. 6. 5.
	· 해외 유명학과와 조인트 형식 국제학교 설립계획 논의	2009. 6. 22.
	· 우리청 유치전략 PPT, 투자조건 및 지원내용 자료제공	2009. 7. 3.
김태균	· 최초접촉 및 학교 설립상담	2009. 2. 11.
	· 송악, 포승지구 현장투어	2009. 3. 5.
	· 우리청 유치의견 제시 및 자료전달	2009. 5. 14.
	· 외국교육기관 유치 해외 IR활동	2009. 11. 16. ~ 11. 20.

3. 홍보활동

가. YESFEZ 인지도 제고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은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정되었으나 2003년도 지정된 인천·부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5년 앞선 출범으로 인해 지속적인 홍보에 발맞추기 위해 황해청만의 특별한 홍보 전략의 수립으로 대외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대내적으로는 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상해 개발사업자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네트워크 구축,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중적 홍보병행, 맞춤형 국내·외 IR활동 전개 등 글로벌화 된 홍보를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영문약자 'YES(YEllow Sea)'를 응용한 디자인을 앞세워 "투자자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긍정의

땅"이라는 모토 아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와 관련 평택·당진항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구별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TV·라디오 등 방송 및 신문·잡지, 인터넷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와 언론인터뷰, 자체 소식지(청보)발간, 국제공항 와이드 및 정부중앙청사와 의왕T/G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영문저널 광고 등을 통하여 잠재투자자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 자체 홍보 실적 】

(단위 : 건)

구분 / 년도	계	매체내용별										
		보도자료	인터뷰	간담회	인터넷	공항와이드	TV	라디오	일·월간지	무료광고	언론보도	청보발행
계	4,473	59	91	33	132	50	542	1,425	118	41	197	16
2008년	404	11	23	4	4	4	3	1	36		313	5
2009년	1,731	23	28	11	58	12	114	808	34	10	630	3
2010년	852	15	7	6	4	4	176	364	5	5	264	2
2011년	600	4	11	6	46	4	62	237	17	12	197	4
2012년	420	5	13		10	10	183	4	17	8	168	2
2013년	227	1		2	10	12	1	2	9	6	184	
2014년	239		9	4		4	3	9			210	

나. 홍보현황

맨 먼저 KBS 2, MBC, SBS 등 일반 공중파와 TBS(서울), TBN(인천·대전) 교통방송에 협찬방송 및 캠페인 방송을 실시했으며, 국내 방송매체와 라디오 인터뷰도 수시로 진행하였고, 또한 조·중·동을 포함한 매일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중앙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지를 대상으로

경제신문들을 활용한 특집 기획기사 및 인터뷰와 주기적으로 홍보간담 브리핑도 실시하였다.

【 방송광고 】





【 경제신문 광고 】



황해청의 다양한 정보를 잠재적 투자가 및 대주민 중심으로 신속 ·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정기 간행물인 청보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직접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담아 국내 투자관련기관, 연구소,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등 3,000개소에 매년 배포하였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당진뉴스, 당진시대, e당진뉴스, 서해안신문 등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으로 황해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홍보자료(분기별 청보, 홍보전단지) 】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온라인 홍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연동 운영되고, 경제인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로 40만 기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정보 전문사인 코참비즈(기업정보 사이트) 와 네이버, 다음 등 배너 인터넷 광고를 입체적으로 추진하였다.

【 인터넷 광고 · 홍보 】

홍보시기	성격	홍보내용	홍보실적	홍보방법 및 매체
'08.12. 1 ~12. 31.	정보 제공 · 광고 홍보	환황해 최고의 경제특구 YESFEZ	인터넷 베너 광고 -초기화면 주당 500만회 노출	NAVER
'09.11. 1 ~11.28.		환황해 최고의 경제특구 YESFEZ	인터넷 베너 광고 -초기화면 주당 500만회 노출	DAUM
'09.11. 1 ~11.30		환황해 최고의 경제특구 YESFEZ	인터넷 베너 광고 -기업인 등 45만회원 타깃 노출	코참 비즈

【 다음 배너 광고 】

배너(게이트)



홈페이지



【 해외 인터넷 배너 광고 】









또한, 잠재투자자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는 와이드 칼라광고와 국내선 1층 대합실 및 수화물도착 대합실 2곳에 전광판광고 및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JAL기 등 기내 동영상홍보로 황해경제 자유구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갔다.

【 공항 칼라광고 】

홍보시기	성격	홍보내용	홍보실적	홍보방법 및 매체
'08.11.1 ~ 12. 31. '09. 1. 1 ~12.31	정보제공 · 광고홍보	say 'yes' to invesment and' yes' to competiti -veness YESFEZ	와이드 광고 - 국제선 탑승동 2개소 4개월	인천국제공항 와이드광고

【 인천국제공항 와이드 광고 】





【 김포국제공항 전광판 광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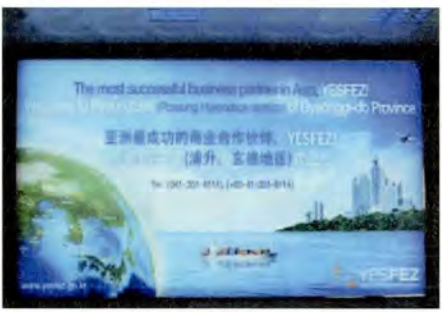

2011년 7월 1일 ~ 10월 31일(4개월)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3개역(을지로입구, 역삼, 선릉)과 3호선 2개역(고속터미널, 종로3가)등 5개소에 조명광고와 2011년 2월 1일 ~ 2011년 12월 31일(11개월)까지 강남 논현빌딩과 서초구 잠원동 정부중앙청사 및 의왕-과천 T/G 전광판에 당신으로 이어지는 선" 이라는 주제로 20초 분량 동영상과 "서해안 시대를 여는 긍정의 힘 YESFEZ, 황해경제자유구역" 전광판 홍보광고, KTX 객실 내 모니터 동영상 광고를 각각 실시하기도 했다.

【 서울 지하철역 조명 광고 】





【 논현빌딩 동영상 광고 】



【 T/G 전광판 광고 】



【 KTX 객실 내 동영상 광고 】





해외홍보를 위해 해외 유명 방송(CNN), 경제지(THE ECONOMIST) 광고 등 국 · 영 · 중 · 일 등 4개국어 홍보브로슈어 · 리플릿 15,000부와 홍보 동영상 1,500개를 제작과 "Meet Your Team in Asia" 이라는 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투자유치 홍보용 PT(국 · 영 · 중 · 일)와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및 R&D 분야의 유망 타깃기업 및 투자자 선정 후 세계유망 전시회나 박람회, 컨퍼런스 참가 등 적극적인 IR 활동 전개와 경기도 · 충남도 투자유치 부서 및 중앙부처(지경부) 공동 해외IR 홍보를 추진하였고, 이코노미스트 · 포춘-차이나 · EU상공회의소 투자안내지 등 해외투자와 관련된 유명 저널과 CNN, CNBC 등 방송매체, Forbes.Com 등의 경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 해외 유명 저널 홍보 】

홍보일정	홍보내용	홍보실적	홍보매체
'09. 3	주한유럽상의 메인디렉토리 홍보	80,000부 (국내3만, 해외5만)	주한유럽상의회원
'09. 10.19 ~ 11. 15	해외광고 CF 30'	유럽 · 미주-29회 아시아 · 호주-68회	CNN
'09. 10. 26, 11. 5	해외지면 광고	2회 발행	THE ECONOMIST
'09. 12	국내영자신문 광고	15만부	중앙데일리/IHT

【 해외 홍보브로슈어 · 리플릿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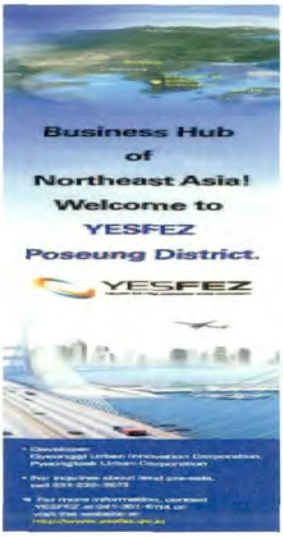

【 해외 잡지(Discovery, Jetstar) 지면광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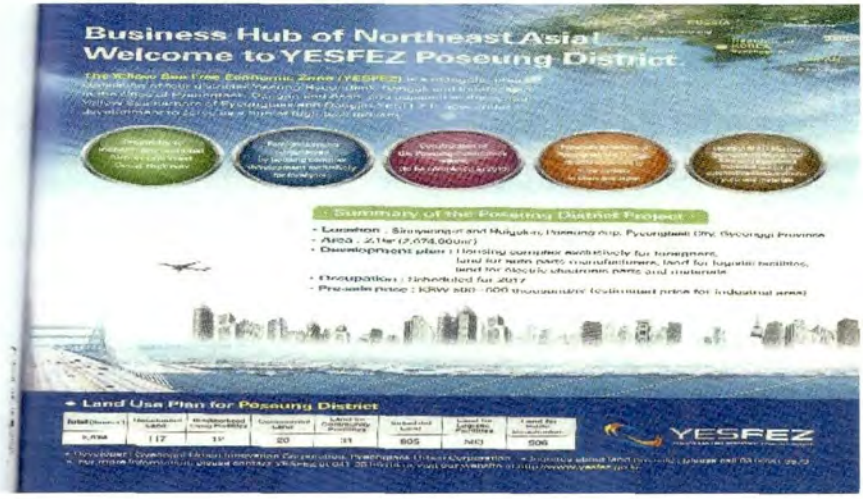

또한 홍보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11년 1월 1일 ~ 12월 15일까지 주요현안 보도자료 제공 및 업무관련 브리핑 횟수, 업무관련 기고건수 및 오보 등에 대한 대응건수, 제공자료에 대한 언론보도 건수 등 5개 평가항목을 정하여 단위사무에 따른 항목별로 각 팀별 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에는 60만원의 시상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보활동과 관련 국내에 지정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 간에 과열된 마케팅과 경쟁구도 속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한정된 예산과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구지정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국내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홍보 전략은 짧은 시간 안에 특정의 고객확보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방대한 브랜드 홍보보다는 투자유치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언론사별 홍보활동 내용 】

날 자	언론사	제 목
2008.12.10	연합뉴스	외자유치 설명회 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09.01.04	파이낸셜뉴스	경기침체 모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2009.01.12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청,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
2009.02.09	아시아경제	평택-아산에 호텔,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
2009.02.13	아시아경제	황해청, 투자유치전략 연구용역 토론회
2009.02.16	머니투데이	충남도, 투자유치 전문가 10명 선발키로
2009.02.17	아시아경제	황해경제구역청, 경제위기해법에 머리 맞대
2009.03.16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KOTRA와 투자유치 협약

날 자	언론사	제 목
2009.03.30	아시아경제	김성배 청장 "황해구역 성공열쇠는 투자유치"
2009.04.16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상하이서 투자유치설명회
2009.05.18	연합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 투자유치 절실
2009.06.11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청, 中업체가 8000만 달러 투자의향서
2009.06.29	파이낸셜뉴스	황해청 日 차 부품사서 1500만弗 투자의향서
2009.07.01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자유청, 1500만 달러 투자추가 발굴
2009.07.09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 가구유통업체와 8800만달러 LOI
2009.07.23	서울경제	2013년까지 80억弗 투자 유치할 것
2009.08.13	연합뉴스	황해경제청, 개청 후 첫 투자 MOU 체결
2009.09.13	한국경제신문	황해청, 호주 바이오업체 2000만弗 투자유치
2009.10.23	파이낸셜뉴스	황해청, 獨신재생에너지사와 2000만달러 투자MOU
2009.11.10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청, 캘리포니아주립대 분교유치 추진
2009.11.12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청, 미국 유통업체와 투자유치 MOU
2009.12.17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일본 투자유치 나선다
2009.12.24	아시아경제	외국투자유치에 '올인'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0.01.21	파이낸셜뉴스	황해청"日 에너지업체, 1천만달러 투자할것"
2010.02.25	한국경제신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 투자 MOU체결
2010.03.10	아시아경제	황해청, 중국 물류기업 1000만 달러 투자유치
2010.03.23	아시아경제	황해경제청,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 열어
2010.04.08	아시아경제	황해청, 대중국 수출기지화 발전 논의
2010.04.19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스라엘 E그룹과 1500만달러 LOI
2010.06.22	한국경제신문	황해청,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주립대 아트&디자인스쿨 유치 추진
2010.08.26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中물류업체와 500만 달러 LOI
2010.09.31	아시아경제	황해청, 1000만 달러 투자의향서 받아

날 자	언론사	제 목
2010.10.05	아시아경제	황해청, 자동차 부품산업 유치 팔 걷어
2010.11.14	아시아경제	獨서 부품소재 투자유치 민관합동 설명회
2010.12.09	한국경제신문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국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011.02.18	아시아경제	황해청, 투자유치자문회의 열고 올 계획 마련
2011.07.14	파이낸셜뉴스	황해청, 충남대병원 등 8곳과 3000억규모 투자 MOU
2012.02.16	머니투데이	황해경제자유구역 220억원 규모 투자유치
2012.03.28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中태양광 기업 투자유치
2013.05.21	머니투데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7개기업과 1284억 투자유치



제5부

해제 및 청산

제 1 장 지구해제

제 2 장 민원사무 인계인수

제 3 장 조합해산

제 4 장 청산절차 이행

제5부 해제 및 청산

제1장. 지구해제

1. 지구해제 결정 과정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국내외 경제와 지역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및 장기간 사업시행자 부재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고, 그 에 따라 투자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토지거래, 개발행위 등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는 실시계획 미수립지구에 대하여 경자구역 단위지구 조정 및 재검토 등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곡지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1년 6월 30일 지구 전면해제를 결정하였고, 송악 · 인주지구는 각각 수행한 '사업추진전략수립 용역'을 토대로 개발면적 축소를 결정하여 1차로 2011년 12월 8일 송악 · 인주지구 면적 축소 및 지곡지구 해제 고시 하였으며, 2차로 2013년 2월 13일 인주지구는 최종 면적축소 고시를 하였다.

이 후, 황해청에서는 송악 · 인주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끝내 사업시행자 선정은 실패하게 되었고, 2014년 8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해제 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 5일 자동 해제되었다.

2. 지구해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 140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2014.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황해경제자유구역 】

1.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충남 아산 · 당진시, 경기 평택시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448,108㎡
   - ○ 송악지구 : 6,016,650㎡ (전부해제)
   - ○ 인주지구 : 3,431,458㎡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8.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35-3313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 041-351-6241
     - 아산시 신도시지원과 : 041-540-2896
     - 당진시 기업지원과 : 041-350-4091

제2장 민원사무 인계인수

가. 근 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한 민원사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당진시 · 아산시 · 서산시에 인계 · 인수를 실시하였다.

나. 추진현황

1) 2011년 12월 8일자 인계 인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11년 12월 8일자로 인주 · 송악 지구 면적 축소와 지곡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민원사무 인계 · 인수를 실시하였다.

【 변 경 현 황 】

지구명	위 치	지정면적(㎡)		구조조정축소 조정면적
		기 정	변 경	
계	3개소→2개소	29,596,990	10,069,188	△19,527,802
송악지구(당진군)	당진군 송악읍 일원	13,029,280	6,016,650	△ 7,012,630
인주지구(아산시)	아산시 인주면 일원	13,025,160	4,052,538	△ 8,972,622
지곡지구(서산시)	서산시 지곡면 일원	3,542,550	–	△ 3,542,550

이에 따라, 인계인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1. 11. 30일자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처리 특례) 규정에 의한 27개 사무에 대하여 2008년 7월

이후부터 변경 고시일(2011.12.8.)까지 처리한 민원사무를 2011년 12월 8일자로 해당 시·군으로 인계하였다. 인계 대상은 시군에서 업무 인수받은 2008년 7월부터 변경 고시일 까지 처리한 민원업무로 총 1,206건(인주 197건, 지곡 35, 송악 974건)을 인계하였고, 2부씩 작성하여 황해청과 시·군에서 각 1부씩 보관하였다.

【 업무별 인계·인수 목록 】

(기준 : 2011. 12. 8.현재, 단위 : 건)

업 무 별	시별 이관 업무(건수)			
	계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계	1,206	974	197	35
개 발 업 무	47	27	19	1
농 지 업 무	55	46	8	1
산 지 업 무	49	41	6	2
건 축 업 무	842	761	60	21
환 경 업 무	213	99	104	10

2) 2014년 8월 5일자 인계 인수

2014년 8월 5일자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인계인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8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청일(2008년7월22일)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업무와 완결사무에 대하여 업무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처리 특례) 규정에 의한 27개 사무를 2014년 8월 5일 아산시와 당진시에 인계하였다. 인계 대상은 시·군에서 업무 인수받은 2008년 7월부터 지구해제 고시일까지 처리한 민원업무로 총 551건(인주 148건, 송악

403건)을 인계하였고 2부씩 작성하여 우리청과 시군에서 각 1부씩 보관하였다.

【 업무별 인계 · 인수 목록 】

(기준 : 2014. 8. 5.현재. 단위 : 건)

업 무 별	시별 이관 업무(건수)					
	계	당진시(송악지구)			아산시(인주지구)	
		소계	완료	진행	소계	완료
계	551	403	386	17	148	148
개 발 업 무	82	43	38	5	39	39
농 지 업 무	15	11	11		4	4
산 지 업 무	32	27	26	1	5	5
건 축 업 무	75	56	48	8	19	19
옥외 광고물	3	2	2		1	1
지 적 업 무	268	199	197	2	69	69
환 경 업 무	68	62	61	1	6	6
공 장 업 무	8	3	3		5	5

붙임 : 1. 당진 송악지구 사무인계 내역(2011. 12. 8. 기준)
2. 아산 인주지구 사무인계 내역(2011. 12. 8. 기준)
3. 서산 지곡지구 사무인계 내역(2011. 12. 8. 기준)
4. 당진 송악지구 사무인계 내역(2014. 8. 5. 기준)
5. 아산 인주지구 사무인계 내역(2014. 8. 5. 기준)

『붙 임 1』

송악지구 사무인계 내역(2011. 12. 8.기준)

□ 인계 내역

(송악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팀 명	인수건수 ('08.08.01)	처리건수 ('08.08.01~'11.12.8.)	인계건수	비고
계	815	159	974	
충남지구개발	17	10	27	
건축환경	798	149	947	

□ 세부 사무 목록

(송악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대 상 사 무	업무처리 상황(건수)	
	계	완료
계	974	974
개 발 업 무	27	27
농 지 업 무	46	46
산 지 업 무	41	41
건 축 업 무	761	761
환 경 업 무	99	99

□ 팀별 세부내역

(송악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팀별	단위사무명	인수 건수	처리 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충남지구 계획	개발행위	17	6	- 개발행위허가	파일 23권 (23건)	개발
	불법개발행위단속	-	4	- 불법개발행위 (형질변경)단속	파일 4권 (4건)	개발
건축환경	농지전용허가	18		- 농지전용허가	파일 4권 (18건)	농지
	농지전용협의	2	3	- 농지전용협의	파일 3권 (5건)	농지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7	8	- 농지타용도일시 사용허가	파일 11권 (15건)	농지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하		1	- 농지타용도일시 사용허가취하	파일 1권 (1건)	농지
	원상회복	1	2	-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파일 2권 (3건)	농지
	인 · 허가대장	3	1	- 농지전용허가대장	파일 2권 (4건)	농지
	산지전용협의	8		- 협의내역	파일 8권 (8건)	산지
	산지전용허가	20	2	- 허가내역	파일 22권 (22건)	산지
	산지전용신고	3		- 신고내역	파일 3권 (3건)	산지
	토석채취허가	2	2	- 허가내역	파일 19권 (4건)	산지
	불법행위단속		2	- 현황 및 고발	파일 3권 (2건)	산지
	입목벌채허가		1	- 허가내역	파일 1권 (1건)	산지
	기 타		1	- 토석채취수불부	파일 1권 (1건)	산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32	49	- 설치신고 등	파일 83권 (81건)	환경
	대기배출시설	2	2	- 설치 허가 · 신고 등	파일 5권 (4건)	환경

팀별	단위사무명	인수 건수	처리 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폐수배출시설	2	3	- 설치 허가 · 신고 등	파일 6권 (5건)	환경
	기타수질오염원		2	- 설치신고 등	파일 3권 (2건)	환경
	폐기물재활용	1		- 재활용 신고 등	파일 1권 (1건)	환경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2	1	- 설치신고 등	파일 3권 (3건)	환경
	비산먼지발생사업		3	- 설치신고 등	파일 3권 (3건)	환경
	건축허가	12		- 건축허가 등	파일 14권 (12건)	건축
	건축신고	23	1	- 건축신고 등	파일 24권 (24건)	건축
	용도변경		2	- 용도변경 등	파일 2권 (2건)	건축
	가설건축물	1	2	- 가설건축물축조 (연장) 등	파일 3권 (3건)	건축
	위반건축물	3	13	- 위반건축물 조치 등	파일 13권 (16건)	건축
	건축물대장		11	-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정정) 등	파일 4권 (11건)	건축
	옥외광고물	2	6	-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파일 6권 (8건)	건축
	행정심판		1	- 건축신고수리청구	파일 1권 (1건)	건축
	행정소송		8	- 계고처분 취소 등	파일 20권 (8건)	건축
	행정소송비용 회수		2		파일 2권 (2건)	건축
	건축물대장	654	14	- 건축물대장	(668건)	건축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		6	- 관리카드	(6건)	건축

『붙 임 2』

인주지구 사무인계 내역(2011. 12. 8.기준)

□ 인계 내역

(인주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팀 명	인수건수 ('08.08.01)	처리건수 ('08.08.01~11.12.8.)	인계건수	비고
계	117	80	197	
충남지구개발	12	7	19	
건축환경	105	73	178	

□ 세부 사무 목록

(인주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대 상 사 무	업무처리 상황(건수)	
	계	완료
계	197	197
개 발 업 무	19	19
농 지 업 무	8	8
산 지 업 무	6	6
건 축 업 무	60	60
환 경 업 무	104	104

□ 팀별 세부내역

(인주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팀별	단위사무명	인수 건수	처리 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충남지구 개발	개발행위	12	4	- 개발행위허가	파일 20권 (16건)	개발
	불법개발행위단속		3	- 불법개발행위 (형질변경)	파일 3권 (3권)	개발
건축환경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	파일 1권 (2건)	농지
	허가협의대장	1		- 허가협의대장	파일 1권 (1건)	농지
	원상회복		3	- 불법농지전용 원상 회복	파일 3권 (3건)	농지
	농지보전부담금		2	- 농지보전부담금환급	파일 1권 (2건)	농지
	산지 인 · 허가	6		- 산지전용협의	파일 12권 (6건)	산지
	개인하수처리시설	15	2	- 설치신고 등	파일 17권 (17건)	환경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설치신고	2	3	- 설치신고	파일 9권 (5건)	환경
	대기배출시설	7	7	- 설치허가 · 신고	파일 15권 (14건)	환경
	폐수배출시설	3	4	- 설치허가 · 신고	파일 8권 (7건)	환경
	소음 · 진동배출시설	11	8	- 설치허가 · 신고	파일 22권 (19건)	환경
	폐기물 관련시설	6	8	- 사업장폐기물 등	파일 17권 (14건)	환경
	관리대상기기	3	10	- 설치신고	파일 13권 (13건)	환경
	비산먼지발생사업	12		- 설치허가 · 신고	파일 12권 (12건)	환경

팀별	단위사무명	인수 건수	처리 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환경일반		3	– 환경분쟁,행정처분	파일 9권 (3건)	환경
	건축허가	13		– 건축허가	파일 14권 (13건)	건축
	건축신고	8	1	– 건축신고	파일 9권 (9건)	건축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파일 1권 (1건)	건축
	가설건축물	9	4	– 가설건축물축조(연장)	파일 13권 (13건)	건축
	위반건축물	1	7	– 위반건축물 조치 등	파일 8권 (8건)	건축
	건축물대장		7	–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정정) 등	파일 7권 (7건)	건축
	건축물부존재		2	– 건축물부존재발급	파일 2권 (2건)	건축
	옥외광고물	6	1	– 옥외광고물허가 (신고)	파일 5권 (7건)	건축

『 붙 임 3 』

지곡지구 사무인계 내역(2011. 12. 8.기준)

□ 인계 내역

(지곡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팀 명	인수건수 ('08.08.01)	처리건수 ('08.08.01~'11.12.8.)	인계건수	비고
계	13	22	35	
충남지구개발		1	1	
건축환경	13	21	34	

□ 세부 사무 목록

(지곡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대 상 사 무	업무처리 상황(건수)	
	계	완료
계	35	35
개 발 업 무	1	1
농 지 업 무	1	1
산 지 업 무	2	2
건 축 업 무	21	21
환 경 업 무	10	10

□ 팀별 세부내역

(지곡지구, 2011. 12. 8.기준, 단위 : 건)

팀별	단위사무명	인수 건수	처리 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충남지구 개발	개발행위		1	-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1건	파일 1권 (1건)	

팀별	단위사무명	인수 건수	처리 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농지전용협의		1	농지전용변경협의서류	파일 1권 (1건)	농지
	산지전용협의	1	1	산지전용협의 등	파일 3권 (2건)	산지
	대기배출시설	1		설치신고	파일 1권 (1건)	환경
	비산먼지발생사업	1	2	설치허가 · 신고 등	파일 3권 (3건)	환경
	폐수배출시설	1		설치허가 · 신고	파일 1권 (1건)	환경
	소음진동배출시설	1	1	설치허가 · 신고 등	파일 2권 (2건)	환경
	특정공사	1		설치신고	파일 1권 (1건)	환경
	사업장폐기물		1	배출자 신고	파일 1권 (1건)	환경
	개인하수처리시설		1	설치신고	파일 1권 (1건)	환경
건축환경	사업계획변경	1	2	변경승인	파일 15권 (3건)	건축
	입주자모집공고	1		승인	파일 1권 (1건)	건축
	감리보고서	1	2	접수	파일3권 (3건)	건축
	공사감리자지정		1	지정	파일1권 (1건)	건축
	건축관계자변경		2	변경처리	파일1권 (2건)	건축
	소방변경동의		1	소방변경동의	파일 4권 (1건)	건축
	착공		1	접수	파일 1권 (1건)	건축
	착공변경		1	접수	파일 1권 (1건)	건축
	건축허가	1		건축허가 등	파일 1권 (1건)	건축
	가설건축물	3	4	가설건축물축조(연장) 등	파일 7권 (7건)	건축

『붙 임 4』

송악지구 사무인계 내역(2014. 8. 5.기준)

□ 인계 내역

(송악지구, 2014. 8. 5.기준, 단위 : 건)

팀 명	인계건수
계	403
충남개발 1팀	43
민 원 팀	360

□ 세부 사무 목록

(송악지구, 2014. 8. 5.기준, 단위 : 건)

대 상 사 무	업무처리 상황(건수)		
	계	완료	진행
계	403	386	17
개 발 업 무	43	38	5
농 지 업 무	11	11	
산 지 업 무	27	26	1
건 축 업 무	56	48	8
옥외 광고물	2	2	
지 적 업 무	199	197	2
환 경 업 무	62	61	1
공 장 업 무	3	3	

□ 팀별 세부내역

(송악지구, 2014. 8. 5.기준, 단위 : 건)

팀별	단위사무명	인계건수	인계사항		비고
			내역	수량	
	계	403		403	
충남개발1팀	개발행위	17	-개발행위허가	17	개발
	불법개발행위단속	17	-불법개발행위(형질변경)단속	17	개발
	협의	9	-협의서류	9	개발
민원팀	농지전용허가	9	-농지전용허가등	9	농지
	원상회복	1	-불법농지전용원상회복	1	농지
	인 · 허가대장	1	-농지전용허가대장	1	농지
	산지전용협의	3	- 협의내역	3	산지
	산지전용허가	12	- 허가내역	12	산지
	산지전용행정심판	1	- 행정심판	1	산지
	산지전용신고	1	- 신고내역	1	산지
	토석채취허가	1	- 허가내역	1	산지
	불법행위단속	7	- 현황 및 고발 등	7	산지
	입목벌채허가	1	- 허가내역 등	1	산지
	기 타	1	- 협의서류	1	산지
	건축허가 · 신고	20	- 건축허가 · 신고 등	20	건축
	건축협의	1	- 건축협의	1	건축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등	1	건축
	가설건축물	5	- 가설건축물축조(연장) 등	5	건축
	위반건축물	16	- 위반건축물 조치 등	16	건축
	건축물대장	4	- 건축물대장표시변경(정정) 등	4	건축
	행정심판	1	- 건축신고수리청구등	1	건축

팀별	단 위 사 무 명	인계 건수	인 계 사 항		비고
			내 역	수량	
	행정소송	1	- 행정소송등	1	건축
	행정소송비용 회수	1	- 소송비용회수	1	건축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	1	- 관리카드	1	건축
	기타	5	- 행위제한안내	5	건축
	옥외광고물	2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2	옥외광고
	토지이동결의서	9	- 지적사무정리부등	9	지적
	지적측량결과도	151	- 지적측량검사정리부등	151	지적
	지적사무정리부	1	- 연도별관리대장	1	지적
	지적측량검사정리부	1	- 연도별관리대장	1	지적
	등록사항정정	1	- 등록사항정정	1	지적
	부동산실거래신고	27	- 부동산실거래신고	27	지적
	부동산검인	4	- 부동산검인	4	지적
	부동산거래해제확인서	1	- 부동산거래해제확인서	1	지적
	부동산중개업소관리	1	- 부동산중개업소관리	1	지적
	부동산실거래신고정밀조사	3	- 부동산실거래신고조사	3	지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54	- 설치신고등	54	환경
	폐수배출시설	4	- 설치 허가 · 신고 등	4	환경
	대기배출시설	4	- 설치 허가 · 신고 등	4	환경
	공장설립	3	- 공장설립	3	공장

『붙 임 5』

인주지구 사무인계 내역(2014. 8. 5.기준)

□ 인계 내역

(인주지구, 2014. 8. 5.기준, 단위 : 건)

팀 명	인계건수
계	148
충남개발 2팀	39
민 원 팀	109

□ 세부 사무 목록

(인주지구, 2014. 8. 5.기준, 단위 : 건)

대 상 사 무	업무처리 상황(건수)	
	계	완료
계	148	148
개 발 업 무	39	39
농 지 업 무	4	4
산 지 업 무	5	5
건 축 업 무	19	19
옥외 광고물	1	1
지 적 업 무	69	69
환 경 업 무	6	6
공 장 업 무	5	5

□ 팀별 세부내역

(인주지구, 2014. 8. 5.기준, 단위 : 건)

팀별	단 위 사 무 명	인계건수	인 계 사 항		비고
			내 역	수량	
	계	148		148	
충 남 개발2팀	개발행위	12	- 개발행위허가	12	개발
	불법개발행위단속	19	- 불법개발행위(형질변경)단속	19	개발
	협의	8	- 협의서류	8	개발
민원팀	농지전용허가	3	- 농지전용허가등	3	농지
	원상회복	1	- 불법농지전용원상회복	1	농지
	산지전용협의	2	- 협의내역	2	산지
	불법행위단속	1	- 현황 및 고발등	1	산지
	기 타	2	- 협의서류	2	산지
	건축허가 · 신고	3	- 건축허가 · 신고 등	3	건축
	건축협의	1	- 건축협의	1	건축
	가설건축물	4	- 가설건축물축조(연장) 등	4	건축
	위반건축물	2	- 위반건축물 조치 등	2	건축
	건축물대장	1	- 건축물대장표시변경(정정) 등	1	건축
	행정심판	1	- 건축신고수리청구	1	건축
	건축물대장	3	- 건축물대장	3	건축
	기타	4	- 기타	4	건축
	옥외광고물	1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1	옥외광고
	토지이동결의서	4	- 지적사무정리부	4	지적
	지적측량결과도	43	- 지적측량결과도	43	지적
	지적사무정리부	1	- 연도별관리대장	1	지적

팀별	단 위 사 무 명	인계 건수	인 계 사 항		비고
			내 역	수량	
	지적측량검사정리부	1	- 업무별관리대장	1	지적
	지적측량성과도발급	1	- 지적측량성과도	1	지 적
	지적측량수행계획서	1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1	지 적
	부동산실거래신고	11	- 부동산실거래신고	11	지 적
	부동산검인	4	- 부동산검인	4	지 적
	외국인토지취득신고	1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1	지 적
	부동산중개업소관리	1	- 부동산중개업소	1	지 적
	부동산실거래신고정밀조사	1	- 부동산실거래신고정밀조사	1	지 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1	- 설치신고 등	1	환 경
	폐수배출시설	4	- 설치 허가 · 신고 등	4	환 경
	대기배출시설	1	- 설치 허가 · 신고 등	1	환 경
	공장설립	5	- 공장설립	5	공 장

제3장 조합해산

조합은 2008년 7월 18일 당진 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제1회 조합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충남지역 송악·인주지구 지정해제로 충남지역 전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경기도·충청남도 간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립·운영을 위한 충청남도·경기도 협약('08.4.16), 지방자치법 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황해경제자유구역 「 '조합규약 규약 제18조' 조합의 해산」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22일 제30회 조합회의에서 조합해산을 의결하였다.

【 해산절차 – 약 3~4개월 소요(안행부 승인) 】

구 분	내 용	일 정
조합해산 결정	· 충남지역 지구해제 고시	'14.8.5.
조합해산 기본계획 수립	· 조합해산 기본계획 수립	'14.8.5.
조합해산 양도협의	· 양도 실무협의(재산,문서 이관 등 협의)	'14.8.6.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 조합해산 기본계획(안) 및 조합해산(안) 상정 · 황해청 관련규정 및 지침 등 46건 폐지 · 조합해산 관련 소요예산 편성	'14.9.22.
조합규약 폐지	· 양도 의회 의결 (경기도 의회 의결 '14.12.16.)	'14.10.13.
조합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이양	· 취득자산 처분 및 문서이관 등	'14.10.31.
출납폐쇄 및 예산 반납	· 국비 보조금 및 양도 부담금 집행잔액 반납	'14.11.~12.
조합해산 승인신청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안전행정부	
조합 해산(승인)	· 고유번호 해지신청(국세청), 공인폐기	

【 해산근거 】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18조(조합의 해산)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4장 청산절차 이행

가. 해산 TF팀 구성

조합해산 승인일까지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산 TF팀을 충남 19명, 경기 4명 총 23명으로 구성하였다. TF팀구성은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연속선상에 해산관련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하였고 해산팀과 민원팀으로 사무를 나누었다.

【 분장사무 】

구 분	조합해산 시 해야 할 일	비 고
해산팀	· 조합해산 기본계획 수립 및 해산 승인신청 · 조합해산 관련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반납 · 취득자산 처분 및 문서(전자 · 종이)이관, 용역계약 해제	
민원팀	· 충남지구 주민피해대책 및 소송관련 업무 · 지구해제에 따른 각종 사유재산권 피해 민원 대응 · MOU업체(21개사) 방문, 지구해제 안내 및 감사서한문 전달	

조합해산 기본방침에 대한 실무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구해제 다음날인 2014년 8월 6일 황해청 10층 회의실에서 양도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조합규약 폐지(안) 도의회 상정, 물품처리, 전자문서, 예산 · 회계 · 계약부분, 관사사용기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합규약 폐지(안) 도의회 상정을 충남도는 2014년 9월 25일~10월 14일에 경기도는 2014년 11월 16일~12월 15일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양도 균분하되, 경기도 출장소 필요물품을 고려하여 물품처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문서 및 사무는 사업지구별로 양도로 이관하되, 공통전자문서는 복사본 생성 후 양도에 각각 이관하기로 하였다. 예산 · 회계 · 계약부분은 조합해산에 따른 예산수요 파악 및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조합해산 승인일까지 집행 후 잔액은 균분액에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관사 채권 회수문제는 행정자치부 승인 일정 및 잔류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회수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행정자치부 실무 업무협의

황해청 조합해산 기본계획(안)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실무 업무 협의를 2014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에서 하였다. 주요협의 내용으로 조합해산은 조합회의 및 양도 의회 의결이 핵심으로 절차이행 준수, 조합해산 승인신청 시 물품처분, 문서이관, 국고보조금 및 양도 분담금 반납 등 선행조치, 행정자치부의 조합해산 승인검토기간은 1~2주 소요, 타 조합 해산신고서 신청사례 자문 등이었다.

라. 송악 · 인주지구 업무이관

송악 · 인주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 고시일까지 허가 · 신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당진시와 아산시 주무부서에 2014. 8. 5일 이관하였다. 이관 관련 2014년 7월 28일 황해청에서 당진 · 아산시 주무부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하였었다. 이관건수는 551건(아산 인주지구 148, 당진 송악지구 403)이며, 분야별로는 개발 82건, 농지 15건, 산지 32건, 건축 75건, 옥외광고물 3건, 지적 268건, 환경 68건, 공장 8건이었다.

마.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송악 · 인주 지구가 해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0호, 2014년 8월 5일)되어 각종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을 하기로 하였고, 불용품 처분

후 양도 균등배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불용품 매각은 『물품관리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처분단가 10만원 초과 및 물품 총액 500만원 초과 시 일반경쟁 입찰과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및 물품 총액 500만원 이하 시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하였고, 소요조회 후 1순위는 경기도 출장소 업무지속에 필요한 물품, 2순위는 충청남도 · 경기도(시 · 군포함)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하고 경기 · 충남도 의견조회 및 무상양여, 최종 잔여 물품은 폐기 처분하기로 하였다.

【 불용수량 : 2,592 개/대 】

품 목	물품수(점)	가액(천원)
차량,운반	23	467,499
전자,정보,통신	673	1,762,522
전기,시험,계측	39	31,539
소프트웨어	8	44,155
사무,교육,영상	1,829	455,386
기계설비	20	71,634

바. 문서이관

개청이후 청산 시까지 생산문서(종이문서 + 전자문서)에 대하여 경기지구는 출장소로 충남지구는 충남도로 2014. 12. 31. 까지 이관하도록 했다. 건수는 총 83,549건('08년 7,002건, '09년 15,829건, '10년 14,925건, '11년 12,881건, '12년 9,089건, '13년 15,508건, '14년 8,315건)이다.

사. 청사 임대차에 대한 조치

조합해산으로 현 청사(당진시 원당드림타워 5개층)가 2014년 10월 31일

계약해지 되어 경기팀은 평택마린센터로 2014년 10월 19일에 이사를 하였고 충남팀은 2014년 12월까지 3층만 재계약하여 사용하였다.

아. 예산 · 회계 · 계약 등 처리

조합해산 승인일까지는 2014년도 세입 ·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 · 회계 · 계약 등 정상집행하고 조합해산 승인일을 기준으로 정산 후 집행잔액 양도균분, 특수수요(사무실 이전 등) 예산집행은 해당 도 균분액에서 상계처리, 조합해산 승인요청전 국고보조금 및 양도 부담금 잔액 반납조치, 각 과에 교부한 일상경비 승인신청전 반납 및 승인시점까지 전액집행, 행정자치부의 조합해산 승인 시점에 맞춰 예산 집행 후 계약 해제하기로 하였다.

【 201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세입분야		세출분야	
계	4,286	계	4,286
이자 및 기타수입	105	경상이전비	2,191
양도분담금	569	인건비(연금부담)	309
순세계잉여금	2,967	예비비	1,141
국고보조금 및 잔액	645	국고보조금 및 잔액	645

자. 관사 운영 처리

황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황해청 자체관사 14개와 경기도 관사 5개 관사(위탁 관리)를 포함하여 총 16개소 였고, 이중 황해청 관사 14개중 경기도 7개, 충남관사는 7개였다. 경기관사 7개는 10월 말까지 채권회수 조치를 하고, 충남관사 7개는 12월 말까지 채권회수하기로 하였다.

【 관 사 현 황 】

(단위 : 백만원)

황해청		경기도	
개소수	전세금	개소수	전세금
14 - 경기도 7개 - 충남 7개)	965	5	300

차. 조합회의 개최 및 조합규약 폐지(안) 양도의회 상정

2014년 9월 22일 조합 해산(안) 심의 및 조합규정 폐지(안) 심의, 조합해산에 따른 예산수요 및 추경예산(안) 심의, 조합의 자산 및 권리·의무의 양도 승계·이관범위 확정, 양도의회 조합해산 동의(안) 상정 및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절차 이행, 조합해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합회의를 개최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등 40개 규정 및 6개 예규를 포함한 조합규약 폐지(안)을 경기도는 2014년 11월 16일~12월 15일, 충남도는 2014년 9월 25일~10월 14일 10월 회기에 상정하였다.

타. 조합해산 승인요청 및 조합 해산

조합해산 승인요청과 조합해산 시기는 모든 청산절차 이행 후인 2014년 12월에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로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양도 관련서류 취합하여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산승인 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해산 승인사항 산업부 및 양도 등 관계기관 통보와 고유번호 해지신청(국세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인 등 47건의 공인 폐기였다.



제6부

총 평

백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제6부 총 평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외적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을 시작으로 2007년 황해·대구경북·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시기 동북아지역은 대규모 투자와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주변국인 홍콩, 싱가포르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의 성공으로 세계 자본시장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의 동해안 개발과 외자유치 속도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에 맞추어 참여정부는 위기감과 세계적 변화추세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기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충남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교역의 이점이 있고, 세계 외국기업의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 지역을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되었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토 균형개발의 명분으로 오랜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충남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이라는 이유로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를 위한 촉매제로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지정된 충남의 경제자유구역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채 해제되었다. 특히, 충남이 가지고 있던 2개 지구가 동시에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제주도를 제외하고 충남만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가 되었다.

이제 비록 송악 · 인주 두 지구의 개발계획은 백지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 과정에서 그간 투입한 노력, 경험의 축적 등 개발과정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토지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일괄보상 주장 등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충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당시 지역개발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기 지정 경제자유구역보다 오히려 더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간의 과정에서 무엇을 탓하기보다는 눈물겨운 노력의 흔적들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향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 가감 없이 문제점 위주로 지구해제의 원인을 진단해 보고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과 경제전략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지구해제의 원인

지구해제의 원인으로는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 측면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인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한 세계경제 상황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대내적 측면으로는 국내 제도적인 측면, 제도의 운영측면 등이 있을 것이다.

먼저 대외적인 측면으로서 200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정보기술(IT) 버블의 붕괴로 고전하고 있는 시기였다.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1990년대에 IT경제의 붐에 힘입어 연 5~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과잉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IT 버블이 꺼지면서 2001년과 200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3%, 2.3%로 둔화됐다. 미국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000년 연 6.5%였던 기준금리를 2001년 연 2%, 2003년 6월 연 1%까지 낮췄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이 같은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는 통화 증가에 따른 주택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주식시장 과열 등의 거품이 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증거로 2007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결국 세계경제의 거품은 2008년 9월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꺼지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GM이 파산위기를 맞는 등 제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는 아일랜드, 동유럽, 두바이 등을 시작으로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외국인 투자가 주요 목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구해제의 대내적인 원인을 중앙정부 · 지자체 · 황해청 · 대주민 · 개발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첫째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성급히 경제자유구역을 출발시킨 준비부족, 즉 법령상의 뒷받침 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은 것도 이런 연유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몸담았던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국가의 지원이 산업단지보다 못 하다"는 것은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환경기초시설이나 진입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미흡한 것도 그 예이다. 그래서 많은 지구에서 기왕의 산업단지 지정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비지원은 산업단지로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예비 사업자들에게 우려를 준 것은 미흡한 지원기준마저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 사례도 부족했다는 점이다. 송악지구의 경우 여러 관심 있는 이들이 중앙의 지원규모를 가늠해보려 했으나 그 누구에게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셋째, 이윤의 사회 환원 또는 공적인 분야에의 재투자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수천 억 원 또는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고, 이익은 공익에 환원해야 된다면 정상적인 민간 사업자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자로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그 간 개발시대의 관행에 젖어 사업자 선정기준을 지나치게 높여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3. 8. 13. 관련법의 개정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었던 송악지구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국내에는 총 34개 기업만이 지원할 자격이 있었다. 그것도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권에서는 상위 10대 대기업에 한해 지급보증조건 하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기준이 마련되었던 점도 걸림돌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다섯째, 중앙 부처 간의 협조가 부족했던 점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이다. 넓은 구역이고 경제성을 고려하면 농지나 임야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의 실무자 몇몇의 의견에 번번이 막히다 보니 여러 기형적인 지구 형태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사업성이 나았던 석문지구가 당초 지정에서 전면 배제된 점과 변경된 인주지구의 이상한 구획은 이런 연유에서 초래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부의에 앞서 유사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앙부처간의 협조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름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작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었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시도에 맡겨놓고 간접적인 지원역할에 그친 대신에 중앙의 다른 부처들은 해당부서의 이해에만 충실했던 것이다.

②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실질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차원의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도의 인력 운영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인력운용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인력은 고사하고 시군에서 도 전입을 위한 보직경로로 이용하거나 문제있는 인력의 임시대피소, 승진자 보직경로로 이용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미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중복 지정된 경우가 많았고, 개발의 여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 새만금개발청으로 한발 더 나아간 "전북" · 특별법에 의행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이랄 수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다는 점은 시도간의 형평성이나 인력운용의 숨통을 트고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고 본다.

둘째, 시군은 결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지원에는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문제의 뿌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만을 조합원으로 둔 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군은 자신의 이익만 기다리는 꼴이었다. 사업성은 도외시한 채 우리 시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고집하여 사업성이 저하된 곳에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충남지구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은 높은 보상을 기대하여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송악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하던 해에 공시지가가 60%나 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에 이르러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61% 가량 상승된 반면 지정구역은 190% 상승이란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말았다. 사실 이 문제는 제2, 제3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결국 충남지구 전체의 해제를 불러온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파생된 문제 중 몇 가지만을 발생 순차적으로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만큼 토지소유주들은 높은 보상에 기대를 걸고 늘어난 재산세와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내해 나간다.

2) 당초 지정되었던 사업자(송악의 한화, 인주의 LH공사)는 사업성이 낮아지고 세계적 경기침체 문제가 겹치자 사업을 접고자 한다.

3) 이게 여의치 않자 회사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면서 손실 폭을 줄여보고자 당초 지정면적의 27%수준으로 축소를 제안하게 된다.

4) 보상을 기대했던 해제대상지 주민의 강력한 반대분위기 속에서 축소제안은 수용되지 못하고, 사업자는 진퇴양난에 처하고 해제 만 기다리게 된다.

5) 다른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검토를 시작하면 오래지않아 사업성 부족을 깨닫고 종래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을 희망하게 되나, 그때까지 고통을 감내해온 토지소유주·주민대책위의 반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다. 컨소시엄으로 개발을 희망했던 한 투자자는 참여건설사로부터 3,0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예견된다는 예측에 꿈을 접게 된다. 이런 정보들은 여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다른 지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황해청은 충남지구에 공적분야가 일부 참여하는 공공개발이나 전면해제를 건의하게 되나 이 역시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7) 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소유주들은 결국 국내업체의 설득·권유 보다는 외국 기업의 참여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8) 이게 여의치 않자 지역민들은 피해대책위를 마련 어떻게든 반대 급부를 얻어내고자 한다.

③ 황해청 차원에서 아쉬웠던 점이다.

첫째, 지나치게 이른 투자유치 전담조직의 신설이었다. 주민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개발 시기도 불확실한 농지에 외국인이 투자할 리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투자전문인력을 갖추어도 늦지 않는 일이었다. 투자유치 본부장 및 일부 계약직 공무원,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외활동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직접 해 본 경험이 부족한 데서 온 시행착오였다.

둘째, 최초의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였던 사업 축소를 과감하게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최초 사업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을 알아차리고 축소나 취소의 양자택일을 희망하고 있는 데도 청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낙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셋째, 송악지구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만큼 지정 지구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역의 변경이나 단계적 개발 등에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역시도 민원이라는 벽에 부딪쳐 적기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지가 상승의 벽을 두고서 헤쳐나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매각가능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보상가격을 역산하여 토지소유주들의 결단을 기대해 보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도 무조건 해제를 우선하자는 민원과 일몰시한에 몰려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④ 대주민 문제이다. 38번 국도변 일부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심은 당초부터 해제와 개발 요구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시기가 지나면서 즉시 해제를 원하는 소수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다수의 대결양상으로까지 치달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불러왔다. 사실 해제를 원하는 지역민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특정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예비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꺼리도록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의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이다.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둘러 금융권 차입을 추진하였거나 공장이나 토지개발 등을 위해 토지를 구입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는 바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피해를 받은 경우가 그러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제도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해도 심히 유감스럽고 매우 미안한 일이다.

⑤ 인주지구의 문제이다. 사실 인주지구는 간척지로 조성된 토지가 지정된 것이어서 토취장 마련과 수백 만 m^3규모의 토사반입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토취장 지구가 병행 지정되기는 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구조물부에는 16m 이상의 기초파일보강이 불가피하여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는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들과 반대하는 임대 경작인들의 이해가 뚜렷이 갈려 있기도 했다.

2. 시사점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해제원인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찾는 현재 개발방식은 용지매입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확인된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참여를 담보하고 사업 대상지 지정과 동시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 이래야만 지역의 선택에서부터 개발, 준공과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보다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만이라도 국가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고부담의 명확화와 지원규모의 확대이다. 여기에는 최소 일반산업단지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해당 시군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주체 간의 유기적인 지원도 절실해 보인다. 성공은 어려워도 한 부분의 그릇된 판단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는 쉽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의 해제를 불러온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여기서 불러온 시사점을 짚어 보았다.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가 해제되었다. 그 누가 미국의 새로운 금융파생 상품 하나가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그것도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패부담에서 벗어나 그 교훈 위에 새로운 경제산업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은 관 일방주도의 "선지정 · 후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수요 · 후지정"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의 땅에 선을 긋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식의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실행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에 대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및 산단개발 전략을 강구해야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면서 지역발전 사업들이 이뤄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본질적인 측면에서 입지조성 및 기업유치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저렴한 토지 저렴한 임금을 찾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주거환경과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저렴한 토지 저렴한 임금조건으로는 질 좋은 미래나 더 좋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세계 경기회복과 FDI 추진과정에서 경자구역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신규 경자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이번을 교훈 삼아 적극 대응할 것이다.





부 록

백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백서 부록 목차

YESFEZ

경기도 · 충청남도 협약사항 174

1.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175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82

3. 송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2

4.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

5.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고시 212

6.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주요 제도개선 사항 214

7.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지원기준 비교 218

8. 신문보도 주요 내용 221

9.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 운영 규정 230

10.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240

11.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245

12. 직원현황 255

CONTENTS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충청남도 협약사항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선진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실천한다.

1. 개발계획의 조기 확정을 위해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兩道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2. 初代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3.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는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에 입지한다. 이 경우, 임시청사 마련과 본 청사 부지는 청사가 입지할 지역에서 마련하며, 본 청사 건축 등 제반비용은 兩道가 분담한다.
4.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兩道가 긴밀히 협력하여 구성한다.
5. 兩道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한다.
6.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7월 1일 개청을 목표로 兩道에서 적극 노력한다.

2008년 1월 9일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김 문 수	이 완 구



1.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34 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 위치 : 경기 평택 · 화성시, 충남 아산 · 서산시, 당진군 일원
○ 면적 : 5개지구 총 5,505만㎡ (경기 2,545, 충남 2,9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수도권 – 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 구축
– 개발효과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유(Win–Win 전략)
–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 성과 실현이 가능한 선제투자의 최적지
- 서해안 여타지역(새만금, 서남권)으로 개발효과 확산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 · 차별적 기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3. 황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경기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외국)기업

* 개발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한 개발지구 및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 : 2008~2025년(총 18년)
- 1단계(2008~2013년), 2단계(2014~2019년), 3단계(2020~2025년)

○ 재원조달방법
-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기본 인프라, 지구조성 등 총 7조 4,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국고, 지자체, 민 · 외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 ·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을 선정 · 시행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합계						
		면적(㎡)	구성비(%)	송악지구	인주지구	지곡지구	포승지구	향남지구
합계		55,051,223		13,029,280	13,025,160	3,542,550	20,148,251	5,305,982
계		52,631,272	100.0	12,090,650	13,025,160	3,542,550	18,666,930	5,305,982
주택건설용지	소계	6,552,134	12.4	2,184,200	1,855,650	–	2,008,178	504,106
	공동주택용지	5,073,179	9.6	1,522,250	1,228,010	–	1,872,641	450,278
	단독주택용지	353,550	0.7	139,370	177,600	–	36,580	–
	블럭형주택용지	1,125,405	2.1	522,580	450,040	–	98,957	53,828
산업유통시설용지	소계	13,021,848	24.7	3,093,820	2,217,550	1,696,570	4,050,632	1,963,276
	자동차부품	5,977,270	11.4	1,537,360	870,330	1,696,570	1,873,010	–
	전자정보	3,914,606	7.4	442,590	1,031,590	–	1,549,201	891,225
	바이오	892,447	1.7	–	–	–	–	892,447
	R&D	1,329,300	2.5	573,880	145,400	–	509,834	100,186
	유통시설용지	590,915	1.1	222,680	170,230	–	118,587	79,418
	부가가치 물류용지	317,310	0.6	317,310	–	–	–	–
상업업무시설용지	소계	2,734,369	5.2	897,700	676,660	36,190	1,039,366	84,453
	상업시설용지	1,369,646	2.6	450,350	343,240	36,190	455,413	84,453
	업무시설용지	1,114,619	2.1	349,070	264,410	–	501,139	–
	주상복합용지	250,104	0.5	98,280	69,010	–	82,814	–
관광시설용지	소계	3,730,416	7.1	–	2,166,100	–	1,564,316	–
	골프장	2,166,100	4.1	–	2,166,100	–	–	–
	숙박	221,221	0.4	–	–	–	221,221	–
	여가휴양	1,343,095	2.6	–	–	–	1,343,095	–

구 분		합계						
		면적(㎡)	구성비(%)	송악지구	인주지구	자곡지구	포승지구	향남지구
공공시설용지	소계	26,592,505	50.6	5,914,930	6,109,200	1,809,790	10,004,438	2,754,147
	공공시설	150,027	0.3	66,840	13,570	–	56,397	13,220
	지원시설	534,837	1.0	91,680	124,610	76,050	189,210	53,287
	의료시설	38,608	0.1	14,650	4,480	–	19,478	–
	교육시설	831,580	1.6	274,530	188,760	–	322,480	45,810
	복지시설	44,342	0.1	16,140	14,570	–	10,662	2,970
	문화시설	61,591	0.1	15,310	17,000	–	22,050	7,231
	종교시설	12,590	0.1	12,590	–	–	–	–
	환경기초시설	639,890	1.2	88,890	96,890	74,730	285,360	94,020
	공원	10,139,419	19.3	2,145,630	1,957,080	752,900	4,140,745	1,143,064
	수변공원	95,950	0.1	–	95,950	–	–	–
	체육공원	265,019	0.5	106,310	94,110	–	26,600	37,999
	녹지	5,079,996	9.6	1,221,410	1,778,100	486,510	1,025,047	568,929
	광장	103,917	0.2	48,810	23,830	–	13,477	17,800
	하천	189,223	0.4	–	101,370	–	31,924	55,929
	주차장	562,452	1.1	136,630	153,480	51,930	187,173	33,239
	보행자도로	153,343	0.3	24,190	59,450	–	63,104	6,599
	도로	7,689,721	14.6	1,651,320	1,385,950	367,670	3,610,731	674,050
유보지		2,419,951	–	938,630	–	–	1,481,321	–

○ 주요 기반시설계획

■ 도로망 확충

· 국도 4개노선(32호선, 34호선, 38호선, 39호선) 확장(81.2km)

– 1단계(2013년) 확충 : 45.6km, – 3단계(2025년) 확충 : 35.6km



· 국가지원도 및 각 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19.1km)
  – 1단계(2013년) 확충 : 6.1km, 3단계(2025년) 확충 : 13.0km

■ 철도망 확충
· 동서산업선(천안~안흥) 건설(98.4km)
· 장항선 복선전철화(온양~군산) 건설(126.6km)
· 평택~포승간 철도 건설(27.0km)

구 분	사 업 명	구 간	연장(km)	비 고
고속국도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신설	당진~천안~영주~울진	269.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철도	동서산업선(단선)	천안~안흥	98.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장항선 복선전철화	온양~군산	126.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평택~포승간 철도	평택~안중~포승	27.0	비전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결도로 (연육교)	신평면~내항간 연육교 건설	신평면 매산리~내항 서부두간	4.2	당진군 도시기본계획 (2011~2016년) (2007년 타당성조사 실시)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인 구 : 231,948인
○ 가 구 : 85,904호(단독 : 1,044호, 블록 2,803, 공동 : 82,057호)

구 분	세대(호)				인구(인)			
	소계	단독	블럭	공동	소계	단독	블럭	공동
합 계	85,904	1,044	2,803	82,057	231,948	2,812	7,573	221,563
송악지구	26,174	697	1,948	23,529	70,670	1,880	5,260	63,530
인주지구	15,746	209	450	15,087	42,520	560	1,220	40,740
지곡지구	–	–	–	–	–	–	–	–
포승지구	35,889	138	250	35,501	96,902	372	675	95,855
향남지구	8,095	–	155	7,940	21,856	–	418	21,438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외투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 저가형 임대산업단지(전체 산업용지의 10%이상 공급)
- 포승 · 향남지구를 외투기업 특화 산업단지로 추진(공급규모 : 4.8㎢)

※ 유치분야 : IT(차세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차세대자동차, BT분야의 제조업체 및 R&D연구소, 제3자물류기업, 지식서비스기업(국제무역, 금융, 컨설팅, 컨벤션), 외국대학 · 대학원, 외국의료기관, 관광(골프장, 호텔 등)

■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첨단기술분야 외국R&D연구소에 대해 무상 임대단지제공
- 지방세 감면기간 및 범위확대

■ 투자유치 전담조직 확대 및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강화

-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 ·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외투기업 사후관리, 기업별 전담PM운영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주거시설

- 외국인 체류 형태, 기간 등에 따른 주거시설(첨단형 주상복합, 전원형 단독주택 등) 조성

■ 교육시설

- 외국인학교(지구별 4개교)를 외국인 주거시설에 인접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유도

■ 의료시설

- 포승지구(종합병원)와 송악지구 등(전문병원)에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



■ 위락시설

– 포승지구에 카지노 · 호텔, 인주지구에 골프장(27홀), 송산그린시티 · 태안기업도시와 연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031-249-4569), 평택시 지역경제과(031-659-5283), 화성시 기획감사담당관실(031-369-2031),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042-606-5740),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351),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3162) 당진군 지역발전전략기획단(041-350-3776)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2.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255호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0. 12.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변경사유

'08. 5월, 지정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에 진척이 없어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2011. 11. 24일 경제자유 구역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본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주요 내용(총괄)

(1) 경제자유구역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변경 없음)

○ 위치 (변경) : 충남(당진군 송악읍, 아산시 인주면, 서산시 지곡면 일원), 경기(평택시 포승읍 · 현덕면, 화성시 향남읍 일원)
→ 충남(당진군 송악읍, 아산시 인주면 일원), 경기(평택시 포승읍 · 현덕면 일원)

○ 지정면적 : (기정) 55,051,223㎡ → (변경) 15,820,655㎡
(39,230,568㎡ 해제)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송악지구(당진군)	당진군 송악읍 일원	13,029,280	6,016,650	△ 7,012,630
인주지구(아산시)	아산시 인주면 일원	13,025,160	4,052,538	△ 8,972,622
지곡지구(서산시)	서산시 지곡면 일원	3,542,550	-	△ 3,542,550
포승지구(평택시)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일원	20,148,251	5,751,467	△ 14,396,784
향남지구(화성시)	화성시 향남읍 일원	5,305,982	-	△ 5,305,982
계 (기정 : 5개지구 → 변경 : 3개지구)		55,051,223	15,820,655	△39,230,568

※ 추가 편입이 필요한 면적 323,735㎡(포승 227,296㎡(한중산단), 인주 96,439㎡(구역계 조정))는 향후 잔여지역 개발계획 변경 시 반영 예정

(2) 구조조정(해제)사유

○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장기화 해소 및 개발수요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황해경자구역 구조조정 필요

(3)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남	송악지구	2008~2025(3단계 구분 개발)	2008~2020	
	인주지구	2008~2025(〃)	2008~2020	
	지곡지구	2008~2025(〃)	–	전면해제
경기	포승지구	2008~2019(2단계 구분 개발)	2008~2020	
	향남지구	2008~2025(3단계 구분 개발)	–	전면해제

(5)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예정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예정

(7)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지구명	사 업 비(억원)		구성비 (%)	증 감	
	기정	변경			
조성비용	69,204	61,174	94.1	△ 8,030	지곡, 향남지구 해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반영
인프라구축비용	5,254	3,861	5.9	△1,393	
계	74,458	65,035	100	△ 9,423	

※ 송악 · 인주 · 포승지구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예정)

나. 재원조달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	증 감	사 유
	기정	변경			
중앙정부	475	–	–	△ 475	지곡, 향남 지구 해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반영
지방자치단체	4,779	3,861	5.9	△ 918	
사업시행자	69,204	61,174	94.1	△ 8,030	
계	74,458	65,035	100.0	△ 9,423	

※ 송악 · 인주 · 포승지구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예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종합)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증 감	사 유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13,021,848	2,670,732	16.9	△ 10,351,116	– 3개 지구 일부해제 – 2개 지구 전면해제
관광시설용지	3,730,416	610,902	3.9	△ 3,119,514	
주택건설용지	6,552,134	2,529,820	16.0	△ 4,022,314	
상업업무용지	2,734,369	1,073,322	6.8	△ 1,661,047	
공공시설용지	26,592,505	7,833,918	49.5	△ 18,758,587	
기타용지	2,419,951	1,101,961	6.9	△ 1,317,990	
계	55,051,223	15,820,655	100.0	△39,230,568	

* 주요 기반시설계획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시 반영예정

(9)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계획은 향후 변경예정

2. 단위지구별 주요 변경내용

1 송악지구

(1) 면적 : 당초(1,303만㎡), 변경(602만㎡) 【감 701만㎡】

○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개발지연에 따른 면적조정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08년~'25년), 변경('08년~ '20년)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13,029,280	6,016,650	△7,012,630		
계		12,090,650	6,016,650	△6,074,000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184,200	1,847,950	△336,250	18.1	30.7
	공동주택용지	1,522,250	1,522,250	-	12.6	25.3
	단독주택용지	139,370	139,370	-	1.2	2.3
	블럭형주택용지	522,580	186,330	△336,250	4.3	3.1
산업유통시설용지	소 계	3,093,820	276,180	△2,817,640	25.6	4.6
	자동차부품	1,537,360	-	△1,537,360	12.7	-
	전자정보	442,590	-	△442,590	3.7	-
	R & D	573,880	-	△573,880	4.7	-
	유통시설용지	222,680	-	△222,680	1.9	-
	부가가치물류시설용지	317,310	276,180	△41,130	2.6	4.6
상업업무시설용지	소 계	897,700	803,450	△94,250	7.4	13.4
	상업시설용지	450,350	356,100	△94,250	3.7	5.9
	업무시설용지	349,070	349,070	-	2.9	5.8
	주상복합용지	98,280	98,280	-	0.8	1.6
공공시설용지	소 계	5,914,930	3,089,070	△2,825,860	48.9	51.3
	공공시설	66,840	66,840	-	0.6	1.1
	지원시설	91,680	-	△91,680	0.8	-
	의료시설	14,650	14,650	-	0.1	0.2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공공시설용지	교육시설	274,530	150,710	△123,820	2.3	2.5
	복지시설	16,140	16,140	-	0.1	0.3
	문화시설	15,310	15,310	-	0.1	0.3
	종교시설	12,590	12,590	-	0.1	0.2
	환경기초시설	88,890	-	△88,890	0.7	-
	공 원	2,145,630	880,960	△1,264,670	17.7	14.6
	체육공원	106,310	106,310	-	0.9	1.8
	녹 지	1,221,410	786,860	△434,550	10.1	13.1
	광 장	48,810	48,810	-	0.4	0.8
	주 차 장	136,630	52,660	△83,970	1.1	0.9
	보행자도로	24,190	24,190	-	0.2	0.4
	도 로	1,651,320	913,040	△738,280	13.7	15.2
기타용지	유 보 지	938,630	-	△938,630	-	-

○ 향후 세부 개발계획안 수립 시 변경(예정)

(4) 기타 : 재원조달방안,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등 세부 개발계획은 추후 변경예정

2 인주지구

(1) 면적 : 당초 1,302만㎡, 변경 405만㎡ 【감 897만㎡(271만평)】

※ 추가편입이 필요한 면적 96,439㎡(구역계 조정)는 향후 개발계획 변경시 반영 예정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08년~'25년), 변경('08년~ '20년)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		13,025,160	4,052,538	△8,972,622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855,650	–	△1,855,650	14.1	–
	공동주택용지	1,228,010	–	△1,228,010	9.4	–
	단독주택용지	177,600	–	△177,600	1.4	–
	블럭형주택용지	450,040	–	△450,040	3.3	–
산업유통시설용지	소 계	2,217,550	1,469,913	△747,637	17.1	36.3
	자동차부품	870,330	621,379	△248,951	6.7	15.3
	전자정보	1,031,590	680,329	△351,261	7.9	16.8
	R & D	145,400	–	△145,400	1.1	–
	유통시설용지	170,230	168,205	△2,025	1.4	4.2
상업업무시설용지	소 계	676,660	44,960	△631,700	5.2	1.1
	상업시설용지	343,240	44,960	△298,280	2.6	1.1
	업무시설용지	264,410	–	△264,410	2.0	–
	주상복합용지	69,010	–	△69,010	0.6	–
관광시설	소 계	2,166,100	610,902	△1,555,198	16.6	15.1
	골 프 장	2,166,100	610,902	△1,555,198	16.6	15.1
공공시설용지	소 계	6,109,200	1,926,763	△4,182,437	46.9	47.5
	공공시설	13,570	–	△13,570	0.1	–
	지원시설	124,610	100,294	△24,316	1.0	2.5
	의료시설	4,480	–	△4,480	0.0	–
	교육시설	188,760	–	△188,760	1.4	–
	복지시설	14,570	–	△14,570	0.1	–
	문화시설	17,000	–	△17,000	0.1	–
	환경기초시설	96,890	48,944	△47,946	0.8	1.2
	공 원	1,957,080	536,393	△1,420,687	15.0	13.2
	체육공원	94,110	–	△94,110	0.7	–
	수변공원	95,950	–	△95,950	0.7	–
	녹 지	1,778,100	819,884	△958,216	13.7	20.2
	광 장	23,830	–	△23,830	0.2	–
	하 천	101,370	–	△101,370	0.8	–
	주 차 장	153,480	49,755	△103,725	1.2	1.2
	보행자도로	59,450	–	△59,450	0.5	–
	도 로	1,385,950	371,493	△1,014,457	10.6	9.2

(4) 기타 :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등 구조조정에 따른 개발계획은 향후 변경예정

3 포승지구(경기도)

(1) 면적 : 당초(2,014만㎡, 변경(575만㎡) 【감 1,439만㎡(435만평)】

※ 추가편입이 필요한 면적 227,296㎡(한중산단)는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반영 예정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08년~'25년), 변경('08년~ '20년)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		20,148,251	5,751,467	△14,396,784		
계		18,666,930	4,649,506	△14,017,424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008,178	681,870	△1,326,308	1 0.7	14.6
	공동주택용지	1,872,641	641,150	△1,231,491	10.0	13.8
	단독주택용지	36,580	10,610	△25,970	0.2	0.2
	블럭형주택용지	98,957	30,110	△68,847	0.5	0.6
산업유통시설용지	소 계	4,050,632	924,639	△3,125,993	21.7	19.9
	자동차부품	1,873,010	339,256	△1,533,754	10.0	7.3
	전자정보	1,549,201	350,907	△1,198,294	8.3	7.6
	R & D	509,834	234,476	△275,358	2.7	5.0
	유통시설용지	118,587	–	△118,587	0.7	–
상업업무시설용지	소 계	1,039,366	224,912	△814,454	5.6	4.8
	상업시설용지	455,413	116,152	△339,261	2.4	2.5
	업무시설용지	501,139	108,760	△392,379	2.7	2.3
	주상복합용지	82,814	–	△82,814	0.5	–
관광시설용지	소 계	1,564,316	–	△1,564,316	8.4	–
	숙 박	221,221	–	△221,221	1.2	–
	여가휴양	1,343,095	–	△1,343,095	7.2	–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004,438	2,818,085	△7,186,353	53.6	60.7
		공공시설	56,397	22,775	△33,622	0.3	0.5
		지원시설	189,210	53,125	△136,085	1.0	1.2
		의료시설	19,478	–	△19,478	0.1	–
		교육시설	322,480	61,338	△261,142	1.7	1.3
		복지시설	10,662	–	△10,662	0.1	–
		문화시설	22,050	–	△22,050	0.1	–
		환경기초시설	285,360	242,250	△43,110	1.5	5.2
		공 원	4,140,745	1,067,022	△3,073,723	22.2	23.0
		체육공원	26,600	5,775	△20,825	0.2	0.1
		녹 지	1,025,047	294,659	△730,388	5.5	6.4
		광 장	13,477	13,477	–	0.1	0.3
		하 천	31,924	–	△31,924	0.2	–
		주 차 장	187,173	27,287	△159,886	1.0	0.6
		보행자도로	63,104	6,809	△56,295	0.3	0.1
		도 로	3,610,731	1,023,568	△2,587,163	19.3	22.0
기타용지		유 보 지	1,481,321	1,101,961	△379,360	–	–

(4) 기타 :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등 구조조정에 따른 개발계획은 향후 변경예정

4 **지곡지구 :** 지구(전체) 해제

5 **향남지구 :** 지구(전체) 해제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다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

4. 행정사항 (향후 후속조치)

○ 면적조정에 따른 잔여지구(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 변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함

○ 포승지구, 인주지구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세부적인 개발계획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 조건)

5. 관련도서의 열람

○ 관련서류 및 도면,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041-351-6211), 경기도청 경제정책과(031-8008-4597), 충청남도 일자리정책과(042-251-2695)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3. 송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6호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 · 포승 ·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내실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에 따른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 (지식경제부 고시 2011-255)에 맞춰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 · 포승 · 현덕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변경사유

지난해 '11. 12. 8일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 (면적 71.3% 축소)에 맞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 함으로써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개발을 촉진코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지구별)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 · 포승 ·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송악지구

1)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 ○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일원, 6,016,65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없음 ((주)당진TP)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수용 및 사용방식」 원칙)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총괄)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기 정	14,647	–	14	14,633
변 경	18,993	1,200	320	17,473

※ 기정 : '08.5.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임

나.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구성

(단위:억원)

구 분	계	조성비용	인프라구축비용	비고
기 정	14,647	14,633	14	
변 경	18,993	17,473	1,520	

※ 기정 : '08.5.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비고
계	18,993	40	7,898	5,797	4,541	717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송악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6,016,650	6,016,650	–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847,950	1,110,859	△737,091	30.7	18.5
	공동주택용지	1,522,250	649,515	△872,735	25.3	10.8
	단독주택용지	139,370	189,976	50,606	2.3	3.2
	블럭형주택용지	186,330		△186,330	3.1	–
	근린생활시설	–	271,368	271,368	–	4.5
산업유통시설용지	소 계	276,180	2,262,409	1,986,229	4.6	37.6
	철강화학	–	1,027,697	1,027,697	–	17.1
	기계장비	–	576,277	576,277	–	9.6
	R & D	–	303,158	303,158	–	5.0
	유통시설용지	–	53,865	53,865	–	0.9
	부가가치물류시설용지	276,180	301,412	25,232	4.6	5.0
상업업무시설용지	소 계	803,450	242,573	△560,877	13.4	4.0
	상업시설용지	356,100	110,803	△245,297	5.9	1.8
	업무시설용지	349,070	52,447	△296,623	5.8	0.9
	주상복합용지	98,280	79,323	△18,957	1.6	1.3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공공시설용지	소 계	3,089,070	2,400,809	△688,261	51.3	39.9
	공공시설	66,840	40,269	△26,571	1.1	0.7
	의료시설	14,650	66,903	52,253	0.2	1.1
	대학용지		32,286	32,286		0.5
	교육시설	150,710	118,184	△32,526	2.5	2.0
	복지시설	16,140	11,743	△4,397	0.3	0.2
	문화시설	15,310	29,157	13,847	0.3	0.5
	종교시설	12,590	14,351	1,761	0.2	0.2
	환경기초시설	-	81,401	81,401	-	1.4
	공 원	880,960	439,063	△441,897	14.6	7.3
	체육공원	106,310	96,335	△9,975	1.8	1.6
	수변공원	-	19,613	19,613		0.3
	녹 지	786,860	425,920	△360,940	13.1	7.1
	광 장	48,810	-	△48,810	0.8	-
	주 차 장	52,660	35,801	△16,859	0.9	0.6
	보행자도로	24,190	18,732	△5,458	0.4	0.3
	도 로	913,040	971,051	58,011	15.2	16.1
기타용지	유 보 지	-		-	-	-

※ 기정 : '11.12.8일 구조조정시 승인된 내용임.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인구수용계획

구 분	개발면적 (천㎡)		주택면적(천㎡)		수용인구 (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송악지구	6,017	6,017	1,848	839	70,670	28,224

※ 기정 : '11.12.8일 구조조정시 승인된 내용임.

○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분	수용인구 및 세대수 (세대,인)								주택면적 (천㎡)				인구밀도 (인/ha)			
	계		단독		블럭		공동		계	단독	블럭	공동	평균	단독	블럭	공동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송악지구	10,453	28,224	949	2,553	–	–	9,504	25,661	839	190	–	649	336	135	–	395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교통처리계획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8	56	42,355	47,621	914,375	905,177	
대로	소계		7	8	21,538	15,893	611,885	432,920	
	1류	35	–	1	–	2,525	–	88,375	
	2류	30	4	1	14,687	2,069	440,610	62,070	
	3류	25	3	6	6,851	11,299	171,275	282,475	
중로	소계		24	24	18,524	22,307	279,560	392,723	
	1류	20	1	9	340	12,592	6,800	251,840	
	2류	15	23	12	18,184	8,101	272,760	121,515	
	3류	12	–	3	–	1,614	–	19,368	
소로	소계		7	24	2,293	9,421	22,930	79,534	
	1류	10	7	9	2,293	2,083	22,930	20,830	
	2류	8	–	15	–	7,338	–	58,704	

※ 기정 : '08.5.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임.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지 구 명		합 계		철강화학		기계장비		R&D	
		면적 (천㎡)	구성비 (%)	면적 (천㎡)	구성비 (%)	면적 (천㎡)	구성비 (%)	면적 (천㎡)	구성비 (%)
송악지구	기정	–	–	–	–	–	–	–	–
	변경	1,907	100	1,028	53.9	576	30.2	303	15.9

※ 기정 : '11.12.8일 구조조정 시 승인된 내용임.

11)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의료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의료시설(개소)	비고
송악지구	기정	70,670	1	내외국인 종합병원 1개소
	변경	28,224	1	충남대 제2병원(500병상)

※ 주 : 병상당 대지면적은 32㎡임

○ 학교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학
송악지구	기정	70,670	7	3	2	1	1
	변경	28,224	4	2	1	1	1

○ 복지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개소	면적(㎡)	비 고
송악지구	기정	70,670	1	16,140	
	변경	28,224	1	11,743	

※ 기정 : '08.5.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임.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폐기물처리계획

– 기 정

구 분	폐기물 처리량(ton/일)							비 고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송악지구	1,361.31		103.57		1,188.05		69.69	
재활용	996.39	60.0%	62.14	75.0%	891.04	62.0%	43.21	
소각	131.98	23.0%	23.82	–	96.31	17.0%	11.85	
매립	232.94	17.0%	17.61	–	200.70	21.0%	14.63	

※ 기정 : '08.5.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임.

– 변 경

구 분	폐기물 처리량(ton/일)							비 고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송악지구	660.93		42.58		226.97		391.38	
재활용	438.43	60.0%	25.55	75.0%	170.23	62.0%	242.66	
소각	92.61	23.0%	9.79	–	16.28	17.0%	66.53	
매립	129.89	17.0%	7.24	–	40.46	21.0%	82.19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 세부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도지사의 요구 시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을 재투자

(단위: 천㎡)

구 분	면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도지사
송악지구	6,017	「개발이익의 환수에관한 법률」 제8조~12조 준용	충청남도지사

16) 문화시설 · 공원 · 녹지계획 : 변경

○ 문화시설

구 분		문화시설(개소)	면 적	비고
송악지구	기정	1	15,310	
	변경	1	29,157	

○ 공원 · 녹지계획

구 분		개발면적 (㎡)	공원 · 녹지면적					구성비 (%)
			소계	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녹지	
송악지구	기정	6,016,650	1,774,130	880,960	–	106,310	786,860	29.4
	변경	6,016,650	980,931	439,063	19,613	96,335	425,920	16.3

※ 기정 : '11.12.8일 구조조정시 승인된 내용임.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구 분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비고
송악지구	기정	-	
	변경	도지정문화재 2개소(심훈생가, 송규섭가옥), 상록초등학교	

19) 용수 · 에너지 · 교통 ·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량 및 오수량 산정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산정 】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 계 (㎥/일)	산업용지 (㎡)	원단위 (㎥/천㎡/일)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기정	70,670	26,148	64,625	7,110	195,324	5,860	39,118	3,093,820	14.05	43,468
변경	28,224	8,328	24,479	2,693	88,235	2,647	13,668	2,262,409	14.05	31,787

【 계획오수량 산정 】

구 분	용수공급량(㎥/일)		오수발생량(㎥/일)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생 활 오 수	공 업 폐 수	계획일 평균오수	지 하 수 량	일최대 오수량
기정	39,117	43,468	35,205	17,783	52,988	5,299	58,287
변경	13,668	31,787	12,299	13,004	25,303	2,530	27,834

※ 기정 : '08.5.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임.



나. 상수공급계획(변경)

○ 상수도공급계획 변경도면 생략

※ 변경계획 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에서 열람가능

다. 하수처리계획(변경)

○ 오수 · 우수처리계획 변경도면 생략

※ 변경계획 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에서 열람가능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방재계획 : 변경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 : 해당없음

23)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기간시설 계획에 대한 경제성 검토 (2012. 5월 용역 착수)

2. 포승지구(삭제)

3. 현덕지구(삭제)

4.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34호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지식경제부 고시 2011-255)에 맞춰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변경사유

2011. 12. 8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축소 · 조정된 구역에 맞춰 인주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개발을 촉진코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일원
   - ○ 면 적 : (기정) 4,052,538㎡ → (변경) 3,431,458㎡ (감 621,08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변경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시까지)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수용 및 사용방식」 원칙)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기 정	13,395	-	1,838	11,557
변 경	7,024	600	600	5,824

※ 기정사업비는 2008. 5.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임.

나.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계	조성비용	인프라구축비용	비 고
기 정	13,395	11,557	1,838	
변 경	7,024	5,824	1,200	

※ 기정사업비는 2008. 5.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비 고
계	7,024	300	2,500	1,174	700	2,350	

7)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2011.12.8 고시)	변 경	증 감	구성비(%)
합 계		4,052,538	3,431,458	△621,080	10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	273,226	273,226	7.96
	공동 주택	-	48,834	48,834	1.42
	단독 주택	-	169,019	169,019	4.93
	블럭형주택	-	17,121	17,121	0.50
	건강복지타운	-	38,252	38,252	1.11
산업물류시설용지	소 계	1,469,913	1,937,950	468,037	56.47
	자동차생산	-	1,083,380	1,083,380	31.57
	자동차부품	621,379	496,508	△124,871	14.47
	전자 정보	680,329	-	△680,329	-
	R & D	-	229,311	229,311	6.68
	물류 · 유통시설	168,205	128,751	△39,454	3.75
상업시설용지	소 계	44,960	57,381	12,421	1.67
	상업시설	44,960	12,622	△32,338	0.37
	업무시설	-	-	-	-
	주상복합	-	-	-	-
	근린생활시설	-	44,759	44,759	1.30
관광용지	소 계	610,902	40,877	△570,025	1.19
	골 프 장	610,902	-	△610,902	-
	관광휴양시설	-	40,877	40,877	1.19



구 분		기 정 (2011.12.8 고시)	변 경	증 감	구성비(%)
공공시설용지	소 계	1,926,763	1,081,405	△845,358	31.53
	공공시설	–	3,960	3,960	0.11
	지원시설	100,294	–	△100,294	–
	의료시설	–	–	–	–
	교육시설	–	–	–	–
	복지시설	–	3,297	3,297	0.10
	문화시설	–	5,103	5,103	0.15
	환경기초시설	48,944	25,940	△23,004	0.76
	공 원	536,393	272,967	△263,426	7.96
	녹 지	819,884	232,609	△587,275	6.78
	공공공지	–	4,968	4,968	0.14
	배 수 지	–	2,439	2,439	0.07
	유 수 지	–	13,674	13,674	0.40
	광 장	–	–	–	–
	하 천	–	–	–	–
	변 전 소	–	13,580	13,580	0.40
	주 차 장	49,755	25,026	△24,729	0.73
	도 로	371,493	477,842	106,349	13.93
유 보 지		–	40,619	40,619	1.18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인구수용계획

개발면적 (㎢)		주택면적(㎢)		수용인구 (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053	3.431	–	0.273	–	4,020

○ 주거시설 조성계획

수용인구 및 세대수 (세대,인)										주 택 면 적 (㎢)				
합 계		공 동		단 독		블 럭		건강복지		합계	공동	단독	블럭	건강복지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1,748	4,020	1,149	2,643	449	1,032	34	78	116	267	0.273	0.049	0.169	0.017	0.038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분	류별	폭원 (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3	121	14,556	29,234	343,875	528,442	
대로	소 계		12	5	10,551	5,449	263,775	161,610	
	1류	35	–	1	–	922	–	32,165	
	2류	30	–	3	–	3,461	–	102,870	
	3류	25	12	1	10,551	1,066	263,775	26,575	
중로	소 계		11	27	4,005	12,573	80,100	234,410	
	1류	20	11	13	4,005	7,751	80,100	190,916	
	2류	15	–	10	–	3,807	–	31,470	
	3류	12	–	4	–	1,015	–	12,024	
소로	소 계		–	88	–	9,012	–	81,822	
	1류	10	–	32	–	4,687	–	44,280	
	2류	8	–	35	–	3,604	–	26,624	
	3류	6	–	21	–	721	–	10,918	
진입 도로	기타	23	–	1	–	2,200	–	50,600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구 분	합 계		자동차생산/부품		전자정보		R&D		물 류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기정	1.470	100	0.622	42.3	0.680	46.3	-	-	0.168	11.4
변경	1.938	100	1.580	81.5	-	-	0.229	11.8	0.129	6.7

11)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의료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의료시설(개소)	비 고
기정	-	-	
변경	4,020	-	아산시 등 인근지역 활용

○ 학교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학
기정	-	-	-	-	-	-
변경	4,020	-	-	-	-	-

※ 인근 초등 · 중학교로 분산 수용 계획

○ 복지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	-	-	
변경	4,020	1	3,297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 처리 계획 (ton/일)							비 고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		지정폐기물		
기정	소 계	923.74		89.66		745.96		88.12	
	재활용	667.90	60.0%	53.80	75.0%	559.47	62.0%	54.63	
	소각	101.45	23.0%	20.62	–	65.85	17.0%	14.98	
	매립	154.39	17.0%	15.24	–	120.64	21.0%	18.51	
변경	소계	838.54		23.69		791.76		23.09	
	재활용	622.35	60.0%	14.21	75.0%	593.82	62.0%	14.32	
	소각	62.70	23.0%	5.45	–	53.33	17.0%	3.92	
	매립	153.49	17.0%	4.03	–	144.61	21.0%	4.85	

※ 기정사업비는 2008. 5.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내용임.

○ 환경시설 설치계획

구 분	수용인구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	1	48,944	
변 경	4,020	1	25,940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전체 주거 공급 세대수의 1% 수준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실시계획에 반영)

○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보지 반영 : 40,619㎡

○ 전원형 단독주택지 등을 확보 입주수요 감안 공급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관할 도지사와 협의된 범위에서 재투자(개발이익의 25~50% 범위 내)

– 개발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터 제12조 준용

○ 사용용도

–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 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15) 문화시설 · 공원 · 녹지계획 : 변경

○ 문화시설

구 분	문화시설(개소)	면 적(㎡)	비고
기 정	–	–	
변 경	1	5,103	

○ 공원 · 녹지계획

구 분	개발면적 (㎡)	공원 · 녹지면적(㎡)					구성비 (%)
		소계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기정	4,052,538	1,356,277	536,393	819,884	–	–	33.5
변경	3,431,458	524,218	272,967	232,609	4,968	13,674	15.3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수립 시 세부계획 반영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8) 상·하수도 계획 : 변경

○ 상수도 계획

– 생활용수

합 계 (㎥/일)	상주인구		상근인구	
	인구(인)	용수량(㎥/일)	인구(인)	용수량(㎥/일)
3,748	4,020	1,648	20,997	2,100

– 공업용수

산업용지		
면 적(㎡)	원단위(㎥/천㎡/일)	용수량(㎥/일)
1,579,888	3.59	5,672

○ 하수도 계획

오수발생량(㎥/일)		
합 계	생활오수	공장폐수
6,267	3,339	2,928

19) 정보·통신 계획 : 변경 없음

20)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 간선도로의 전력 및 통신시설은 지하매립을 원칙

○ 지하매설물의 지중화 계획은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수립, 세부사항은 실시계획 시 수립 반영

21) 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 열공급계획

합 계 (Gcal / 년)	생산시설 (Gcal / 년)	기타시설 (Gcal / 년)
652,363	522,936	129,427

○ 전력공급계획(최대전력부하)

합 계 (KW)	생산시설 (KW)	기타시설 (KW)
109,232	86,281	22,951

22) 방재계획 : 변경 없음

2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 : 붙임1 참조

24)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41-351-625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 140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2014.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황해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충남 아산·당진시, 경기 평택시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448,108㎡
   - ○ 송악지구 : 6,016,650㎡ (전부해제)
   - ○ 인주지구 : 3,431,458㎡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 최초 지정일 : 2008. 5. 6(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2014.8.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35-3313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 041-351-6241
     - 아산시 신도시지원과 : 041-540-2896
     - 당진시 기업지원과 : 041-350-4091

6.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주요 제도개선 사항

범 주	주요안건	세부내용
개발 및 교육, 의료 기관 등 규제완화	환경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2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및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경제자유구역법」에 의제토록 하여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건축비 제한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생활여건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바 개발사업과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배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등 완화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설립주체 자격요건 완화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위임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구역청장에게 전면 위임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를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인, 국내법인까지 확대,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권한 개선	실질적인 임용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경자구역 지정이전 추진중인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이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지구가 타법에 의해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공원·녹지율 기준제 도입 등	공원·녹지율 기준제를 도입하여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용도지역 변경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및 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지관리 주체를 시장·군수로 변경하며, 개발예정지에 대한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권한을 경제청장으로 위임
	준공 개발구역 관리권한 자치단체 위임	개발사업으로 완료한 도로·공원·공유수면 등의 유지 관리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범 주	주요안건	세부내용
개발 및 교육, 의료 기관 등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신중 검토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원 확대
	의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 변경,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가 요건 · 절차 등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	경자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개발계획변경(총괄)시 중복절차 생략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입지정책심의와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별도로 이행하므로(총괄)개발계획 변경시 관련 절차 생략
	산업시설 용지 공급가격 기준 완화	경자구역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사업시행자 발굴이 어려우므로 유사법령인 「산입법」에 따라 공급토록 시행령 개정
	경미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일원화	경미한 개발계획변경 승인권과 실시계획(변경) 승인권을 경자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경미한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기준 완화	외국인 및 외투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법인까지 확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조성원가가 과도하게 높은 외투지역의 경우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 완화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산입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경자법시행령을 개정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기준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계약상대자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법인 추가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범 주	주요안건	세부내용
개발 및 교육, 의료 기관 등 규제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330만㎡이상이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계적 개발 허용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콘도 1실당 분양인원 적격기준(5명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업종 확대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앞당기고, 관광 · 레저 및 휴양 등 배후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업종 확대
인센티브 재정지원 확 대	조세 감면 취 · 등록세 면제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세감면과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취 · 등록세 면제로 역차별문제 해소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도개선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산업지원 서비스업, 다국적 기업본부, 비즈니스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업종을 추가하고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외에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용지 국비지원 확대	외국인 전용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부지매매 및 장기임대 허용
	선수금 제도의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상 선수분양이 가능한 공공시행자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추가하고,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외국인 단지형 임대단지 선지정 및 매입비 국비 지원확대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이 미 충족 되어도 경자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임대단지를 선 지정하고, 외국인 임대단지는 100% 국비로 매입하여 지자체 부담 경감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감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감면
	외국인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시 입주수요 요건을 '30% 이상'으로



범 주	주요안건	세부내용
인센티브 재정지원 확 대	임대단지 선지정 및 매입비 국비지원 확대	완화하고, 임대단지 조성시 토지매입 국비매칭비율 상향 조정
	조세특례 대상업종 추가	조세감면대상사업(1천만불 이상 투자)에 항공장비수리업(MRO) 추가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공정한 투자유치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산정 기준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개선
부담금 감 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장기개발사업이며 복합개발방식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을 경우 부지 분양가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별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감면기한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택지조성 제외)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구역청 효율화	경제자유구역 추진 소송사례집 발간	제기일자, 원고, 주요내용, 경과, 판결문요지, 소송수행자 등을 담은 소송사례집 발간 활용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명확한 장기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제도 개선	매년 실시되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를 격년제로 변경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7.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지원기준 비교

1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경제자유구역</th><th>산 업 단 지</th></tr>
<tr><td>토 지</td><td>조성토지 임 대</td><td>· 50년간 임대
(경자구역 개발지침 제25조)</td><td>· 1,000천㎡ 이상시 산업용지의 2%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17조)
· 외자투자지역 지정시 좌동(도지사)</td></tr>
<tr><td>보조금 지 원</td><td>시 설 보 조 금</td><td>· 외부연결 지방도 이상 50%(100%)
· 구역내 간선도로 50%(100%)
· 철도 · 항만 50%(100%)
· 공원 · 녹지 50%(100%)
· 공동구 · 상하수도 50%(100%)
· 폐기물처리시설 50%(100%)
※ 단, 국비확보 시 지원가능
( )내서 : 경자위 심의시 적용(장관)
(경자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td><td>· 구역내 간선도로 및 녹지 50%
· 용수공급시설 50%
· 이주대책사업비 50%
· 농공단지조성(기반시설 등) 50%
· 하수도, 문화재조사 50%(100%)
· 폐수종말처리시설 50%(100%)
※ 단, 국비확보 시 지원가능
( )내서 : 산업단지 심의시 적용(도지사)
(산입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td></tr>
<tr><td rowspan="10">각 종 부담금</td><td>개 발 부 담 금</td><td colspan="2">국가 및 지자체 : 100%면제
공공기관 조합 : 50%
민간기업 개발사업시 : 용도별 일부면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td><td colspan="2">면 제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td></tr>
<tr><td rowspan="3">농지보전 부 담 금</td><td>농업진흥지역 안</td><td>농업진흥지역 밖</td><td>농업진흥지역 안</td><td>농업진흥지역 밖</td></tr>
<tr><td>–</td><td>50% 감면</td><td>–</td><td>100% 감면</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td></tr>
<tr><td rowspan="3">대체산림 자 원 조 성 비</td><td>보전산지</td><td>준보전산지</td><td>보전산지</td><td>준보전산지</td></tr>
<tr><td>50% 감면</td><td>50% 감면</td><td>–</td><td>100% 감면</td></tr>
<tr><td colspan="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5)</td><td colspan="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5)</td></tr>
<tr><td>대체초지 조 성 비</td><td colspan="2">면 제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의8 별표3)</td><td colspan="2">면 제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의8 별표3)</td></tr>
<tr><td>공유수면 점사용료</td><td colspan="2">면 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td><td colspan="2">면 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td></tr>
</table>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침으로 기반시설 중 도로에 한해 국비 지원



2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산 업 단 지
조세지원	관 세	·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외자투자지역 지정시 좌동
	소 득 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자투자지역 지정시 좌동
	법 인 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자투자지역 지정시 좌동
	취 득 세 재 산 세	· 3년간 100%, 이후 2년 50% – 지자체가 15년 범위 내 조례로 기간 및 비율 상향 조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4. 12. 31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보조금지원	입 지 보 조 금	–	정상 임대료와 인하된 임대료 차액, 정상 분양가와 인하된 분양가 차액의 50%범위內 토지비 지원 (충남 외투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투 자 보 조 금	· 건축비, 장비비, 기반시설설치비 50억원 초과 시 설비금액의 2%(2억원 범위內) (충남 외투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건축비, 장비비, 기반시설설치비 50억원 초과 시 설비금액의 2%(2억원 범위內)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 조 금	· 상시고용20명 초과시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 (충남 외투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상시고용20명 초과시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지원

3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산 업 단 지
수 도 권 이전기업	입 지 보 조 금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미지원 · 중소기업 15% (충남외투촉진조례 제20조)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미지원 · 중소기업 15%
	투 자 보 조 금	· 대기업 3%,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7% (충남외투촉진조례 제20조)	· 대기업 3%,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7%
	취 득 세 재 산 세	–	'14. 12. 31까지(산업단지 입주기업 모두 해당)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신 증 설 기업지원	투 자 보 조 금	· 대기업 : 미지원 ·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충남 외투촉진 조례 21조의2)	· 대기업 : 미지원 ·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市道이전 대규모 · 신규투자 기 업	입 지 보 조 금	·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50%이내 (충남 외투촉진 조례 제21조)	·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50%이내
	투 자 보 조 금	·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 금액의 10%이내 (충남 외투촉진 조례 제21조)	·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 금액의 10%이내

8. 신문보도 주요 내용

❑ 외자유치 설명회 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08년 12월 10일 연합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 주최로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자유치 설명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 평택-아산에 호텔,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

[2009년 02월 09일 아시아경제신문]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레저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지경부 지원사업 선정 -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일대에 호텔과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개발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레이크사이드 관광레저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 1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156만4300㎡)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지구(216만6100㎡) 일대에 레저관광시설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포승지구엔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갖춘 호텔과 쇼핑몰 등 여가 및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인주지구엔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생긴다.

황해경제청은 오는 6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개발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전략 및 인센티브 차별화 방안 등을 찾아 투자상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청 관계자는 "용역수행 기간에 코트라(KOTRA)에서 투자유치전담관을 지정, 용역수행 및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외자유치의 조기성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황해경제구역청, KOTRA와 투자유치 협약

[2009년 03월 16일 아시아경제신문]

– 전담팀 파견, 홍보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관련정보교류 등 협력 –

황해경제자유구역청(YESFEZ)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투자유치에 나선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16일 세계적 불황이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높아 KOTRA와 투자유치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해외투자유치에 따른 ▲전담팀 파견 ▲홍보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관련정보교류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것들로 돼 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적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KOTRA와의 보다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공동인식으로 평가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망 잠재 투자자 발굴과 정교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 된다"면서 "KOTRA는 통상은 물론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해외망을 갖추고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협약 배경을 설명하고 "투자자 중심의 홍보마케팅을 통해 개발사업 및 부지조성 시기와 연계한 투자자 발굴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KOTRA는 해외 70여 나라에 95개 KBC(Korea Business Center)를 통해 국내기업의 통상지원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부터 국가투자유치전담기구로 'Invest Korea'를 확대 설치해 핵심 프로젝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중이다.

❑ 황해경제청, 개청 후 첫 투자 MOU 체결

[2009년 08월 13일 연합뉴스]

– 송악지구에 2000만달러 엠배서더 호텔 투자유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내에 미화 2000만 달러를 투자, 호텔을 건축·운영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한기 앰배서더 호텔그룹 (주)서한사 대표, 민종기 당진군수 및 정승진 당진테크노폴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앰배서더 호텔그룹은 세계에 3983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호텔체인인 프랑스의 Accor호텔그룹과 합작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전문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9개의 호텔과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앰배서더호텔그룹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3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운영, 송악지구 입주 외국인 등에게 숙박편의 제공 및 쉼터 역할은 물론 연간 약 143억원의 부가가치와 15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황해청, 獨신재생에너지사와 2000만달러 투자MOU

[2009년 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부터 해외첨단제조업체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투자유치단(단장 김성배 청장)이 현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F사와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독일

F사는 국내 D사와 합작형태로 투자할 예정이며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바이오가스 연구개발(R&D)센터 및 설비 제조공장을 오는 2013년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에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단은 이번 독일 방문기간 동안 5개 도시를 돌며 E사(바이오플랜트),S사(반도체), M사(태양광) 등 잠재투자기업들과 개별방문상담을 벌였으며, 뉘렌베르크에서는 인근 기업 10여 개사를 초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투자여건 설명회도 개최했다.

투자유치단은 또 투자유치활동과 별도로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도시프라이부르크시와 친환경적 도시개발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 활동성과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의 가서명과 맞물려 유럽기업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관심을 유발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황해경제청, 캘리포니아주립대 분교유치 추진

[2009년 11월 10일 아시아경제신문]

– 김성배 청장, 미국 현지서 Albert K. Karnig 총장과 양해각서 체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약칭 황해경제청)이 국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분교유치를 추진 중이다. 김성배 황해경제청장은 9일(LA 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립대 샌 버나디노(San Bernardino)캠퍼스(CSUSB) 알버트 카니그(Karnig) 총장과 분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김 청장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 버나디노 분교유치를 계기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MOU이후 꾸준한 실무접촉을 통해 CSUSB 분교유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SUSB는 프린스톤 리뷰가 선정한 미국 최우수종합대학교로서 US News &World Report 2007서부대학 61위, 비즈니스스쿨의 Enterpreneurship 프로그램이 전국 4위인 대학이다. CSUSB는 23개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캠퍼스 중 하나로 5개 단과대, 46개 학사학위과정, 130개 세부전공, 26개 석사학위과정,



1개 박사과정에 1만7066명의 재학생들이 있다.
18개 국, 70여 대학과 활발한 교류 중인 명문 주립대다. 우리나라는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덕성여대가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 투자 MOU 체결

[2010년 02월 25일 한국경제신문]

– 송악지구에 1억8000만 달러 호텔 투자유치, 향후 투자활성화 시금석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송악지구에 1억8000만 달러 호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인화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근웅 코업피엠씨(주) 대표 및 신현수 당진테크노폴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내에 1억8000만 달러 투자, 비즈니스 및 레지던스 호텔을 건축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1억8000만달러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국 F사 등에서 유치한 약 4000만 달러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투자기업인 코업피엠씨는 국내에 12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을 개발 및 운영 중에 있는 전문기업이다. 코업피엠씨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6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 운영하게 되면 송악지구 입주 외국인 등에게 숙박 편의 제공 및 쉼터 역할은 물론, 연간 약 3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5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인화 충청남도지사권한대행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투자를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며 "호텔건립에 따른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송악지구를 상업 · 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로서 개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국내외 IR활동 및 맞춤형 타겟마케팅활동을 통해 총 13건의 LOI 및 MOU를 접수 및 체결해 5억68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 황해청, 중국 물류기업 1000만 달러 투자유치

[2010년 03월 10일 아시아경제신문]

– W사, 앞으로 물동량 따라 투자액 늘릴 계획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중국에서 물류분야 투자유치를 벌인 결과 W사로부터 1000만 달러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W사는 중국에서 ▲국제물류 ▲ 창고 ▲운송 ▲선사대리점 ▲국제택배 및 컨설팅 등을 하는 업체다. W사는 올해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방문, 항만과 내륙연계 등을 고려한 물류 터를 찾을 계획이다. 또 앞으로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한·중의 물동량에 따라 투자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중국의 G사와도 투자양해각서를 주고받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업무를 시작한 뒤 세계 14개 회사로부터 5억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주립대 아트&디자인스쿨 유치 추진 [2010년 06월 22일 한국경제신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성배 청장은 21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주립대(SJSU) 존 휘트모어(Jon Whitmore) 총장과 분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SJSU는 115년 역사와 전통의 명문 주립대로 실리콘 밸리내 8000여개 기업들과 인턴십 및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내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이다.

또 SJSU가 있는 산호세시에는 인텔 구글 애플 등 주요 IT기업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하고, 이 대학은 잘 발달된 장학금 제도와 저렴한



학비 등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황해청에 분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SJSU의 Art &Design School내 Animation, New Media Art 학과 등은 최근 PIXAR(픽사) 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 랭킹 2위에 드는 최상위 학교다.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 이번 SJSU와의 MOU 체결은 지난해 CSUSB와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김 청장은 "SJSU와 분교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미국 일정을 마치고 24일 일본을 방문, 주요 부품소재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獨서 부품소재 투자유치 민관합동 설명회

[2010년 11월 14일 아시아경제신문]

지식경제부는 부산 ,충남 등 지자체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 투자유칙기관,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서 200여 독일 투자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유치사절단은 베를린에서는 금속, 전자,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뮌헨에서는 기계, 자동차 부품기업 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중심의 투자설명에서 탈피해 독일에서 바라본 한국투자환경, 글로벌 대기업의 구매정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법률, 세제 및 관세 변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투자환경 발표는 독일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독상공의소 유르겐 뵐러 소장이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에 대해 소개한다. 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구매정책 설명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독일기업간 매칭을 통한 투자협력 확대를 촉진한다. 한-EU FTA체결에 따른 법률, 세제, 관세제도 변화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선진 독일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투자설명회와 연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투자유치가 유망한 EU지역의 10여개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한국투자에 관심을 보인 EU기업을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한국투자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황해청, 충남대병원 등 8곳과 3000억규모 투자MOU

[2011년 07월 04일 파이낸셜뉴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기업인 ㈜동부익스프레스, ㈜대우로지스틱스, 비아이디씨㈜, 선진통운㈜, ㈜유성티앤에스, ㈜한진, 호텔투자 기업인 ㈜H.T.C 등 8개 기업과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및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양해각서에 따라 국내 종합병원 순위 10위권인 충남대학교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제 2병원을 송악지구에 건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 지역인 당진, 서산시 및 아산시와 예산군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병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송악지구를 기존 송산 및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개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면서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송악지구 조기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7개기업과 1284억 투자유치

[2013년 05월 21일 머니투데이]

개발사업자 선정과 투자유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일 첨단제조유통 및 글로벌 체인호텔 등 7개 기업과 1284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잇달아 체결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기업은 지능형 LED, 벽관,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유통, 플라스틱 연결관 제조 등 독보적인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특히 협약대상에는 라마다동탄과 애플트리 등 글로벌 체인호텔 브랜드도 포함돼 있다. 황해구역청은 이번 MOU체결로 그동안 비즈니스 숙박시설 낙후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투자의향을 보인 이들 기업은 ▲주변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 향후 토지가치 증대가 예상되며 ▲대중국 수출 인프라 여건이 잘 갖춰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투자의 최적지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투자여건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신·증설이 어려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투자유치도 예상된다.

황해자유구역청은 성공적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9.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본 운영 규정

[소관부서 : 기획행정과]

제정 2008. 7. 18.
개정 2009. 4. 6. 규정 제 9호
2009. 6. 3. 규정 제17호
2009. 9. 28. 규정 제26호
2011. 7. 22. 규정 제39호
2012. 5. 1. 규정 제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관업무) 구역청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사무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국가 및 도 위임 사무
2. 경제자유구역 개발 · 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 포함)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5. 외국인 생활 여건의 개선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4조(관할구역) 구역청의 관할구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 송악지구, 인주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소관업무의 수행조직과 집행절차 등

제5조(조직 및 기구) ① 구역청의 조직 및 기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역청 조직 및 기구표는 별표 2와 같다.

③ 직제상 보조 ·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행정개발본부 : 기획 · 조직 · 인사 · 예산 등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본부 :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④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기구를 정원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운영) ① 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역청 정원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청장은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직종 · 직렬 · 직급별 정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근거자료를 붙여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정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T/F팀의 구성 · 운영) ① 청장은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규조직과 별도로 한시기구(T/F팀)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조직은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구성 ·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배경, 주요사업, 존속기간, 소요인원, 차출부서, 사무실 확보,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 관련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략조정회의 운영) ① 청장은 관할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조정회의는 청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위임전결) ① 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하급 기관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결 처리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전년도 성과, 사업목표, 추진일정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장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당면 주요 현안사업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사업목표 설정) 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구역청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부서장에게 사업목표를 설정·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평가) ① 청장은 구역 내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목표가 포함된 구역청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부서별 종합평가와 사업별 평가로 구분한다.

③ 청장은 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따라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평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청장이 결정하며, 조합회의는 부진사업 및 우수사업 등과 관련하여 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인사관리 및 우수인력 확보

제13조(인사권 범위) ① 청장은 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구역청 내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추천권
3. 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구역청으로의 파견 발령 전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4. 구역청 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 설정권
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 요청권
6. 그 밖에 법규 등에서 위임된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공무원의 추천) 청장은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 산하 공무원 중 외국어 및 투자유치, 행정처리, 개발사업 등 해당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파견기간의 연장) 청장은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역청에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대상)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성과관리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평정한다.

③ 성과관리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7조(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요소) 5급이하 일반직 ·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18조(평정방법) ① 근무성적 평정은 파견기관 소속별 직원에 대해 따로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파견기관의 인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직위 보직자가 된다.

③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의 의견과 고객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실적 가점 부여) 청장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근무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구역청 근무자 중 정원의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청장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 경력가점 부여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의하여 구역청에서 근무한 자 중 청장이 추천한 정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적가점 부여

제20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

②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 ① 근무성적 또는 성과관리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등) ① 청장은 법 제27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자격 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정하여 양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청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계약직 모집 공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장 복무 및 감사

제23조(공무원)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상용인력의 복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감사)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감사는 관련 법령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예산편성 및 회계운영 등) 구역청의 예산의 편성과 운영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재정지원) 청장은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구역청 운영 및 기반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29조(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물품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물품 관리 규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민원사무처리

제30조(민원상담 및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① 청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민원인이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구역청을 방문할 경우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스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하고, 세부운영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청장은 해당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후견인은 청장을 대신하여 관련부서를 통괄하여 신속히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의 최종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청장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민원처리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환경의 개선) ① 청장은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영어를 중심으로 각종 민원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민원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및 구역청 전반에 관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형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의 정보통신망을 확충·보강하여야 한다.

제7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관리

제33조(개발목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관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기본목표로 한다.

제34조(개발계획의 지위)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5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청장은 지역균형개발의 파급효과, 외국인의 투자유치, 필요한 부지확보 등에 유리하고 개발목적에 상반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을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 변경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제36조(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 개발변경 신청을 포함한 구역청의 관할구역 내 각종 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7조(SOC 건설) ① 청장은 투자 협상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SOC 건설 관련 조건을 신속히 중앙정부 및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청장은 국고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투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장 투자유치

제38조(투자유치의 방향) 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경제 중심도시 실현과 생산의 거점 육성을 투자유치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지구별 투자유치 주력산업은 별표 1과 같다.

제39조(투자유치 목표) ① 항만물류, 첨단산업, 관광·레저 등 지식정보 고부가가치 연관산업과 선도산업 등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유치하여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도모를 투자유치 기본목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장은 매년 국내·외 자본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투자유치 정책자문기구) ① 청장은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투자유치 정책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 정책자문기구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투자유치에 전문성을 갖춘 15명 이내의 위원이나 전문가 단체로 구성·운영한다.

제41조(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① 청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3에 의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공헌한 공무원(개방, 계약직 포함) 및 일반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고문회계사 등) ① 청장은 투자유치 의향기업의 경영·재무구조 검토 등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와 고문변호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투자유치 계획 및 시행) ① 청장은 당해연도 개시 이전에 투자유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안배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진작하여야 한다.

② 투자유치 활동계획서에는 접촉대상과 최종목적, 활동시점을 명확히 하여



마케팅 차원의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투자유치활동의 분석) ① 청장은 투자유치 활동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투자유치 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투자유치 활동실적은 반기단위, 연단위로 관리하며 대외홍보를 위하여 개별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홍보) ① 청장은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수립과 홍보를 위하여 민간 투자 및 마케팅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정의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② 민간 투자 및 마케팅 전문가의 자문료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기본 운영 규정의 변경) 이 기본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운영세칙)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10.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소관부서 : 기획행정과]

제정 2008. 6. 10.
개정 2012. 3.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조합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관내에 두고, 경기도 관내에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이 조합은 황해경제자유구역안의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 내 경기도 · 충청남도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경기도지사 · 충청남도지사의 직접 수행사무 〈개정 2012.3.16〉
2. 경제자유구역 개발 · 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를 포함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5. 외국인 생활 여건의 개선
6. 그 밖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기도 7명, 충청남도 8명, 지식경제부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3.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담당 실·국장 각 2명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각 2명
4. 황해경제자유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3명 〈개정 2012.3.16〉
5. 그 밖에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4명(경제분야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2.3.16〉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⑥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예에 따른다.

⑦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4.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5.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6.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7.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등)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경기도·충청남도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임명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예산 · 회계 등)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 · 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장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5월31일)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조합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조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 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11.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소관부서 : 기획행정과]

제정 2008. 7. 18.
개정 2010. 9. 7. 규정 제30호
2011. 1. 11. 규정 제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6조제1항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명되면 업무관할 주관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로 정한다.

제4조(회의소집〈개정 2011.1.11〉) ①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조합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중 양 도의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담당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의 과장급 직위 이상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신설 2011. 1. 11〕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5조(의장 · 부의장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표결 등의 방법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보궐선출하며, 보궐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0. 9. 7〉

④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도에서 선임된 의원 및 공무원이 동시에 담임할 수 없다.

제6조(의장직무의 대행) 의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장 · 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다수결로 표결한다.

제3장 조합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8조(개회) 조합회의는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9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회 · 정회 · 휴회 · 폐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개회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10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절 의사일정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개회일 7일 전까지 배부한다.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위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2조(의안의 제출 · 발의) 조합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청장 또는 위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3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정 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4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한다.

제15조(의안 ·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조합회의에서 의제가 된 청장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번안동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의 번안을 발의할 경우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7조(안건심의) ①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제18조(회부 및 의견청취) ① 의장은 안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제안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회부할 수 있다.

② 조합회의는 의안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의안의 정리) 조합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기획행정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이송)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1조(발언의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원은 허가를 받은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

제23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4조(발언회수 및 시간제한) ① 의장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언회수 및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토론 의사표시) 의사일정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발언해야 한다.

제26조(의장의 발언참가) 의장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위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2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변경 금지) 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로 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위원 중에서 몇 사람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 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35조(회의록 작성) 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중지 ·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제반보고사항
7.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사
10.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보충서

13.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3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부의장과 기획행정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기획행정과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차기회의일 전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3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 및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배부하고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절 서 기

제39조(서기의 요청)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장에게 몇 사람의 서기 요원을 요청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41조(예산안 심의) 조합회의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청장 또는 행정개발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친다.

제4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3조(예산안 의결) 예산안은 각 부문별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4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산안 중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결산의 심사) 조합회의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친다.

제5장 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46조(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조합 본회의는 그 의결로 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청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제47조(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위원이 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즉시 이를 청장에게 보낸다.

② 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조합회의에 알려야 한다.

제48조(청장 등의 발언) 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질 서

제49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조합회의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제50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1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일반인 및 단체가 방청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한다.

제52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회의가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단상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4조(녹음 ·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현황

근무부서	직위/부서	직급	성명	근무기간
청장	청장	지방전임계약직 1호	김성배	2008. 7.17. ~ 2011. 7.10.
	청장	지방관리관	박한규	2011. 7.11. ~ 2014. 7.10.
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개방형3호	허상무	2011. 7.22. ~ 2013. 7.21.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정효영	2013. 8.23. ~ 2013.12.31.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정병희	2014. 1. 1. ~ 2014.12.31.
행정개발본부장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명주식	2008. 7. 9. ~ 2009. 7. 1.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양현	2009. 7. 2. ~ 2010. 6.30.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채호규	2011. 1.12. ~ 2011. 7. 1.
기획행정과	기획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이동구	2010. 7.22. ~ 2012. 2.15.
	기획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정원춘	2012. 2.15. ~ 2014. 1. 1.
	기획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송석권	2014. 1. 1. ~ 2014.12.31.
개발2과	개발2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우	2008. 7. 9. ~ 2009. 7. 1.
	개발2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안병직	2009. 7. 2. ~ 2010. 7.21.
	개발2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천무	2010. 7.22. ~ 2012. 7.31.
	개발2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오건환	2013. 1. 2. ~ 2014.12.31.
투자정책과	투자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유득원	2008. 7. 9. ~ 2009. 7. 1.
	투자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상영	2009. 7. 2. ~ 2010. 7.21.
투자2과	투자2과장	지방서기관	김광태	2013. 1. 2. ~ 2014. 1. 1.
	투자2과장	지방전임계약직(4호)	윤치호	2008.10.28. ~ 2011.12.13.
홍보협력관실	공 보 관	지방행정사무관	유병덕	2008. 7.17. ~ 2011. 2.28.
홍보협력관실	홍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기룡	2013. 7.24. ~ 2014.12.31.
홍보협력관실	홍보협력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전대훈	2008. 7.17. ~ 2010. 7.21.
홍보협력관실	홍보협력관실	기능8(기계)	류중수	2010. 1.13. ~ 2014. 1.14.
홍보협력관실	홍보협력관실	지방기능8급(기계)	김민수	2008. 7.17. ~ 2010. 1.12.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만덕	2008. 7.17. ~ 2010. 7.21.
기획행정과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유상	2010. 1.13. ~ 2012. 1.16.
기획행정과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종인	2011. 1.14. ~ 2012. 7.10.
기획행정과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만희	2011. 4.15. ~ 2013. 7.24.
기획행정과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군노	2011. 7.14. ~ 2014. 1.14.
기획행정과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옥용	2013. 7.24. ~ 2014. 10.16.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	김종수	2008. 7.17. ~ 2010. 7.2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	이상의	2008. 7.17. ~ 2010. 7.21.

근무부서	직위/부서	직급	성명	근무기간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주사	윤진섭	2008. 7.17. ~ 2011. 1.12.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주사	조성권	2008. 7.17. ~ 2012. 7.3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	손영진	2010. 7.22. ~ 2011. 7.3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	이한규	2010. 7.22. ~ 2012. 4.21.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주사	명노청	2011. 1.13. ~ 2012. 1.12.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주사	김환석	2011. 7.14. ~ 2013. 7.24.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	김종흠	2012. 1.16. ~ 2014.12.31.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주사	이종철	2012. 3.28. ~ 2014. 1.14.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전산주사	한경아	2011. 7.14. ~ 2012. 7.17.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전산주사	류준규	2012. 7.17. ~ 2014.12.3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2008. 7.17. ~ 2011. 7.13.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통신주사보	이진곤	2008. 7.17. ~ 2010. 7.2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보	조덕희	2010. 1.13. ~ 2013. 7.24.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보	최병백	2011. 1.13. ~ 2013. 7.24.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주사보	최영규	2011. 7.14. ~ 2012. 7.16.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보	원정아	2012. 1.16. ~ 2013. 1.14.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호	2013. 7.24. ~ 2014.12.31.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방송통신주사보	김형환	2010. 7.22. ~ 2013. 1.2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방송통신주사보	곽성민	2013. 1.21. ~ 2014. 1.14.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서기	하규호	2008. 7.17. ~ 2010. 1.12.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서기	이호종	2008. 7.17. ~ 2011. 1.12.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서기	김규태	2010. 1.13. ~ 2012. 1.16.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서기	치회정	2013. 1.21. ~ 2014. 3.16.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행정서기	김동명	2013. 1.21. ~ 2014. 7.30.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행정서기	최준락	2013. 7.24. ~ 2014. 1.14.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기능10급(교환)	이미희	2010. 7.22. ~ 2014.12.3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기능6급(운전)	정홍덕	2008. 7.17. ~ 2008.12.2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기능7(운전)	이기현	2013. 6.17. ~ 2014.12.31.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기능7급(교환)	차영희	2008. 7.17. ~ 2009. 7. 1.
기획행정과	기획예산팀	지방기능7급(교환)	송인애	2009. 9.21. ~ 2010. 7.21.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기능7급(운전)	방하균	2008. 7.17. ~ 2012. 1.16.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기능7급(운전)	조희구	2008.12.22. ~ 2013. 6. 7.
기획행정과	총무팀	지방기능8(운전)	이종직	2012. 1.16. ~ 2014. 7.30.
개발1과	개발시설팀장	지방시설사무관(토목)	김종우	2008. 7.17. ~ 2009. 7. 1.
개발1과	민원행정팀장	지방시설사무관(지적)	김홍기	2008. 7.17. ~ 2010. 6.29.
개발1과	민원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서귀용	2011.10.31. ~ 2012.10.30.



근무부서	직위/부서	직급	성명	근무기간
개발1과	민원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명수	2012. 1.16. ~ 2013. 7.24.
개발1과	개발시설팀	지방시설주사(토목)	이승철	2008. 7.17. ~ 2010. 7.21.
개발1과	개발시설팀	지방녹지주사	이태윤	2008. 7.17. ~ 2009. 7. 1.
개발1과	개발시설팀	지방녹지주사	이진수	2009. 7. 2. ~ 2010. 8. 9.
개발1과	도시개발팀	지방공업주사	김선봉	2008. 9.26. ~ 2011. 1.12.
개발1과	민원행정팀	지방보건주사	신종순	2011. 7.14. ~ 2012. 7.17.
개발1과	민원행정팀	지방시설주사보	최훈규	2011. 1.13. ~ 2013. 7.24.
개발1과	민원행정팀	지방녹지주사보	김기용	2010. 1.13. ~ 2011. 7.14.
개발1과	민원행정팀	지방농업주사보	송요권	2008. 7.17. ~ 2009. 1. 6.
개발1과	민원행정팀	지방농업주사보	신장철	2009. 1. 7. ~ 2010. 1.12.
개발1과	민원행정팀	지방시설주사보(자적)	김춘호	2008. 7.17. ~ 2011. 1.12.
개발1과	건축환경팀	지방환경주사보	여동구	2008. 7.17. ~ 2011. 1.12.
개발1과	개발시설팀	지방녹지서기	강번재	2008. 7.17. ~ 2010. 1.12.
개발1과	건축환경팀	지방시설서기(건축)	신태순	2008.12. 2. ~ 2011. 2.28.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토목)	이긍익	2008. 7.17. ~ 2008.12.31.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토목)	정규재	2009. 1. 7. ~ 2011. 1.12.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토목)	홍성춘	2009. 7. 2. ~ 2010. 7.21.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학군	2011. 1.13. ~ 2012. 3.27.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광배	2011. 1.13. ~ 2012. 7. 1.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성겸	2011. 1.13. ~ 2011. 7.14.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승만	2012. 3.28. ~ 2013. 7.24.
개발2과	충남개발1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백영현	2012. 7.10. ~ 2014. 1.14.
개발2과	충남개발2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원중	2013. 7.24. ~ 2014. 1.31.
개발2과	충남개발1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용성	2014. 1.15. ~ 2014. 5.30.
개발2과	충남개발1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허회언	2014. 7.30. ~ 2014.10.16.
개발2과	충남개발2팀장	지방시설사무관(토목)	최춘용	2014. 2. 1. ~ 2014.10.16.
개발2과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철	2014. 7.30. ~ 2014.12.31.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시설주사	김두기	2008. 7.17. ~ 2011. 7.14.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토목)	김병용	2008. 7.17. ~ 2010. 7.21.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토목)	문흥로	2008. 7.17. ~ 2011. 1.12.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시설주사	노윤철	2008. 7.17. ~ 2012. 1.16.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시설주사	이창복	2010. 7.22. ~ 2012.10. 4.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	김희수	2010. 7.22. ~ 2012. 1.16.
개발2과	민원행정팀	지방녹지주사	김동식	2010. 8.10. ~ 2011. 7.14.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	이영구	2011. 1.13. ~ 2013. 7.24.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공업주사	옥치옥	2011. 1.13. ~ 2013. 1.21.

근무부서	직위/부서	직급	성명	근무기간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시설주사	박경덕	2011. 7.14. ~ 2013. 1.21.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시설주사	서우현	2012. 1.16. ~ 2013. 1.21.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	조은성	2012. 1.16. ~ 2014. 1.14.
개발2과	민원팀	지방행정주사	이건주	2012. 7.17. ~ 2013. 2.17.
개발2과	민원팀	지방시설주사	배운상	2013. 1.21. ~ 2014. 7.30.
개발2과	충남개발2팀	지방공업주사	남승홍	2013. 1.21. ~ 2014. 1.14.
개발2과	충남개발2팀	지방시설주사	연찬흠	2013. 1.21. ~ 2014. 7.30.
개발2과	충남개발1팀	지방시설주사	김정흠	2013. 7.24. ~ 2014.12. 1.
개발2과	충남개발2팀	지방시설주사	조용백	2014. 7.30. ~ 2014.12.31.
개발2과	민원팀	지방시설주사	나윤주	2014. 7.30. ~ 2014.12.31.
개발2과	민원행정팀	지방시설주사보	이재석	2008. 9.26. ~ 2014.12.31.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농업주사보	오주연	2010. 1.13. ~ 2012. 7. 1.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시설주사보	신명수	2010. 3.12. ~ 2011. 7.14.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시설주사보	김용택	2010. 7.22. ~ 2012. 7.17.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보	강기석	2010. 7.22. ~ 2013. 7.24.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시설주사보	안동수	2011. 1.13. ~ 2012. 7.17.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보	이양구	2011. 7.14. ~ 2013. 1.21.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녹지주사보	이주택	2011. 7.14. ~ 2013. 7.24.
개발2과	충남개발1팀	지방시설주사보	정경문	2013. 7.24. ~ 2014.12.31.
개발2과	충남개발2팀	지방시설주사보	김연태	2013. 7.24. ~ 2014.12.31.
개발2과	민원팀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아	2013. 9.13. ~ 2014. 7.30.
개발2과	민원팀	지방녹지주사보	김기연	2014. 2.12. ~ 2014.12.31.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공업주사보	최헌규	2008. 7.17. ~ 2011. 7.13.
개발2과	충남지구계획팀	지방공업주사보	노곤래	2011. 7.14. ~ 2012. 7.16.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서기	강현수	2010. 3.12. ~ 2011. 7.14.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서기	박민규	2011. 7.14. ~ 2013. 7.24.
개발2과	충남개발1팀	지방시설서기	이경원	2012. 7.17. ~ 2014. 7.30.
개발2과	민원팀	지방녹지서기	박가슬	2013. 7.24. ~ 2014. 2.12.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시설주사보(건축)	류미순	2008. 7.17. ~ 2011. 1.12.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보(토목)	이은철	2008. 7.17. ~ 2010. 1.12.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보(토목)	김갈현	2008. 7.17. ~ 2010. 7.22.
개발2과	충남지구개발팀	지방시설주사보(토목)	김해중	2008. 7.17. ~ 2011. 7.31.
개발2과	건축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송영호	2011. 7.14. ~ 2013. 1.21.
개발2과	민원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유재호	2013. 1.21. ~ 2014. 7.30.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환경주사	공상현	2008. 7.17. ~ 2011. 1.12.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환경주사	정찬희	2011. 1.13. ~ 2011. 7.14.



근무부서	직위/부서	직급	성명	근무기간
개발2과	건축환경팀	지방환경주사보	이동규	2011. 1.13. ~ 2012. 1.16.
개발2과	충남자구개발팀	지방시설서기(토목)	전병길	2008. 7.17. ~ 2010. 7.21.
개발2과	민원팀	지방환경서기	정광일	2013. 4.23. ~ 2014. 1.14.
투자기획과	투자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명동	2008. 7.17. ~ 2011. 7.31.
투자기획과	유치홍보팀장	지방전임계약직(가급)	손기화	2009. 5. 1. ~ 2011. 4.30.
투자기획과	투자기획팀	지방행정주사	성만제	2008. 7.17. ~ 2010. 7.21.
투자기획과	유치홍보팀	지방전임계약직(나급)	김세훈	2009. 7.20. ~ 2011. 8. 1.
투자기획과	투자환경팀	지방전임계약직(나급)	정재삼	2009.12. 1. ~ 2013. 7.19.
투자기획과	투자환경팀	지방시설주사보	오근영	2010. 1.13. ~ 2011. 7.14.
투자기획과	유치홍보팀	지방전임계약직(다급)	황은영	2009. 5.15. ~ 2011. 5.15.
투자정책과	투자기획팀	지방행정주사	정일권	2008. 7.17. ~ 2011. 2.28.
투자정책과	투자환경팀	지방시설주사보(토목)	윤여웅	2008. 7.17. ~ 2010. 3.11.
투자1과	전략사업팀장	지방전임계약직(가급)	이경숙	2008.12. 1. ~ 2011.12.23.
투자1과	전략사업팀	지방행정주사	김승제	2008. 7.17. ~ 2009. 7. 1.
투자1과	신성장팀	지방행정주사	신현섭	2009. 7. 2. ~ 2011. 1.12.
투자1과	it융합팀	지방행정주사	한용구	2011. 1.13. ~ 2012. 1.16.
투자1과	IT융합팀	지방전임계약직(나급)	유경식	2009. 5. 1. ~ 2013.10.23.
투자1과	첨단산업팀	지방행정주사보	조원정	2008. 7.17. ~ 2010. 1.12.
투자1과	전략사업팀	지방행정주사보	이정훈	2010. 1.13. ~ 2011. 7.13.
투자1과	전략사업팀	지방행정주사보	주소영	2010. 7.22. ~ 2013. 1.21.
투자1과	충남투자1팀	지방전임계약직(라급)	안정연	2009. 5. 1. ~ 2014. 4.20.
투자2과	항만물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용	2008. 7.17. ~ 2010. 1.12.
투자2과	서비스산업팀장	지방전임계약직(가급)	박상철	2008.12. 1. ~ 2012. 1. 1.
투자2과	충남투자2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상기	2012. 1.16. ~ 2014. 7.30.
투자2과	충남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영전	2013. 1.21. ~ 2014.12.31.
투자2과	교육의료팀	지방행정주사	황관식	2011. 1.13. ~ 2012. 7.17.
투자2과	항만물류	지방행정주사	오의택	2011.10.31. ~ 2012. 7. 1.
투자2과	충남투자정책팀	지방행정주사	이채구	2013. 7.24. ~ 2014. 7.23.
투자2과	충남투자정책팀	지방전산주사	백관현	2014. 1.14. ~ 2014. 7.29.
투자2과	항만물류팀	지방행정주사보	한보현	2008. 7.17. ~ 2010. 1.12.
투자2과	충남투자1팀	지방전임계약직(나급)	한승훈	2009. 5. 1. ~ 2014. 4.30.
투자2과	교육의료팀	지방전임계약직(다급)	정성일	2009. 7.20. ~ 2011. 7. 8.
투자2과	충남투자정책팀	지방행정서기	김선영	2013. 1.21. ~ 2014. 3.16.
투자2과	충남투자2팀	지방농업서기	박재혁	2012. 8. 7. ~ 2014.12.31.
투자2과	항만물류팀	지방전임계약직(라급)	강진미	2009. 5. 1. ~ 2011. 4.30.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백서

▷ 발행일 2014. 12. .

▷ 발행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140 원당드림타워 3F
TEL. (041) 351-6261
www.yesfez.go.kr



황해경제자유구역청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